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3000-000270-01

www.mogef.go.kr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13. 8.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요약 	1
I.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23
1. 제도 개요	23
가. 개념 및 목적	23
나. 법적 근거	24
다. 대상 정책 및 적용 기관	24
라. 추진 경과	25
2. 운영 및 지원 체계	25
가. 운영 체계 개요	25
나. 세부 운영 체계	26
다.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현황	29
라.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기능	30
3. 추진 결과 개요	32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 결과	32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적	37
II.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43
1. 중앙행정기관	45
가. 과제 추진 결과	45
나. 검토의견 통보 결과	47
다. 개선의견 수용률	53
라. 반영결과 수용 내용	55
2. 광역자치단체	58
가. 과제 추진 결과	58
나. 검토의견 통보 결과	59
다. 개선의견 수용률	63
라. 반영결과 수용 내용	64

3. 기초자치단체	66
가. 과제 추진 결과	66
나. 검토의견 통보 결과	67
다. 개선의견 수용률	70
라. 반영결과 수용 내용	72
4. 시·도 교육청	74
가. 과제 추진 결과	74
나. 검토의견 통보 결과	75
다. 개선의견 수용률	77
라. 반영결과 수용 내용	78
5. 대상 정책별 정책 개선 사례	80
가. 법령	80
나. 계획	100
다. 사업	105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129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32
가. 개요	132
나. 정책 개선 및 추진 계획	132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135
가. 개요	135
나. 정책 개선 및 추진 계획	135
3.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138
가. 개요	138
나. 정책 개선 및 추진 계획	138
4.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	140
가. 개요	140
나. 정책 개선 및 추진 계획	140

Ⅳ. 성과와 과제	145
1. 총평	147
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147
나.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149
다.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151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154
2. 성과	155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155
나. 검토의견 통보절차 도입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책무성 강화	158
다. 분석평가 대상정책 확장 : 사업 중심에서 법령, 계획, 사업으로	159
라. 법령·계획·사업의 성 인지적 개선 증대	160
마.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확대를 통한 제도 이해 및 분석평가 역량 강화	164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체계 구축	167
3. 과제	169
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관리직 공무원 교육 강화	169
나.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 책임관의 역량 강화	170
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내실화	170
라.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역량 강화	171
■ 부 록	173
〈부록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175
〈부록 2〉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84
〈부록 3〉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185
〈부록 4〉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양식	187
〈부록 5〉 법령·계획·사업 정책개선 사례	207

표 목 차

〈표 1〉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 결과(중앙)	5
〈표 2〉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 결과(지자체)	6
〈표 I-1〉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	28
〈표 I-2〉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현황	29
〈표 I-3〉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중앙)	33
〈표 I-4〉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지자체)	34
〈표 I-5〉	사업분야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36
〈표 I-6〉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유형별 실적	37
〈표 I-7〉	성별영향분석평가 직급별 교육실적	38
〈표 I-8〉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별 교육 실적	38
〈표 II-1〉	중앙행정기관별 과제 추진 결과	46
〈표 II-2〉	중앙행정기관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법령)	48
〈표 II-3〉	중앙행정기관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계획)	50
〈표 II-4〉	중앙행정기관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사업)	52
〈표 II-5〉	중앙행정기관별 개선의견 수용률	54
〈표 II-6〉	중앙행정기관 반영결과 수용 내용(법령)	56
〈표 II-7〉	중앙행정기관 '개선의견' 통보에 따른 반영 결과 내용(계획)	57
〈표 II-8〉	중앙행정기관 개선의견 반영결과 수용 내용(사업)	57
〈표 II-9〉	광역자치단체별 과제 추진 결과	58
〈표 II-10〉	광역자치단체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법령)	60
〈표 II-11〉	광역자치단체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계획)	61
〈표 II-12〉	광역자치단체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사업)	62
〈표 II-13〉	광역자치단체별 개선의견 수용률	63
〈표 II-14〉	광역자치단체 반영결과 수용 내용(법령)	64
〈표 II-15〉	광역자치단체 '개선의견' 통보에 따른 반영 결과 내용(계획)	65
〈표 II-16〉	광역자치단체 개선의견 반영결과 수용 내용(사업)	65

〈표 II-17〉 기초자치단체별 과제 추진 결과	67
〈표 II-18〉 기초자치단체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법령)	68
〈표 II-19〉 기초자치단체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계획)	69
〈표 II-20〉 기초자치단체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사업)	70
〈표 II-21〉 기초자치단체별 개선의견 수용률	71
〈표 II-22〉 기초자치단체 반영결과 수용 내용(법령)	72
〈표 II-23〉 기초자치단체 '개선의견' 통보에 따른 반영 결과 내용(계획)	72
〈표 II-24〉 기초자치단체 개선의견 반영결과 수용 내용(사업)	73
〈표 II-25〉 시·도 교육청별 과제 추진 결과	75
〈표 II-26〉 시·도 교육청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법령)	76
〈표 II-27〉 시·도 교육청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사업)	77
〈표 II-28〉 시·도 교육청별 개선의견 수용률	78
〈표 II-29〉 시·도 교육청 반영결과 수용 내용(법령)	79
〈표 II-30〉 시·도 교육청 개선의견 반영결과 수용 내용(사업)	79
〈표 II-31〉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의 성평등 이행 주요 정책 개선 현황	118
〈표 IV-1〉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 현황	156
〈표 IV-2〉 법령 제·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실시 의무화 규정 사례	158
〈표 IV-3〉 2012년 기관유형별 과제 추진 결과	160
〈표 IV-4〉 개선의견 수용률 현황	161
〈표 IV-5〉 평가수행기관의 정책개선 우수사례 추천현황	161
〈표 IV-6〉 정책개선 대표사례 예시(법령)	162
〈표 IV-7〉 정책개선 대표사례 예시(계획)	163
〈표 IV-8〉 정책개선 대표사례 예시(사업)	163
〈표 IV-9〉 직급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적(여성가족부 주관 위탁교육)	166
〈부록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175
〈부록 -2〉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84
〈부록 -3〉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185
〈부록 -4〉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양식	187
〈부록 -5〉 법령·계획·사업 정책개선 사례	207

그림 목 차

[그림 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4
[그림 I-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26
[그림 I-2]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변화 추이	32
[그림 I-3]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변화 추이(사업)	35
[그림 I-4]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분야별 추진현황	36
[그림 II-1] 성별에 따른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도(경기도 화성시)	102
[그림 II-2]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공원조경 설치 예시	104
[그림 II-3] 차도와 인도를 비추는 가로등 디자인 예시	04
[그림 IV-1]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적(여성가족부 주관 위탁교육)	166



요 약

I.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3
II.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5
III.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8
IV. 성과와 과제	10



요 약



I.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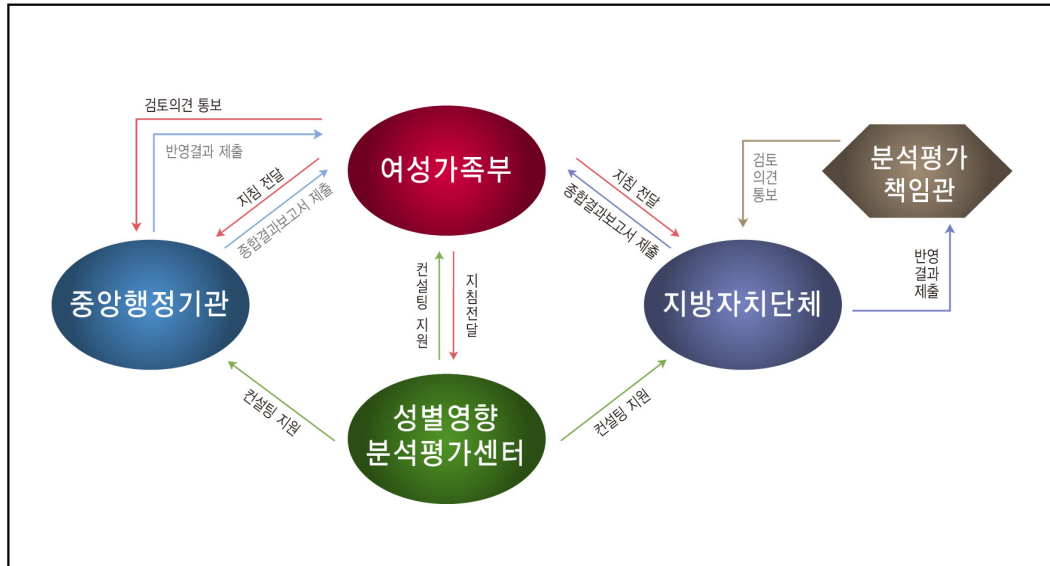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1년에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근거로 하며,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분석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성별 격차가 크고 다수 부처에 관련되거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수혜 대상의 범위가 넓어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적용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부·처·청, 위원회,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이다.

2. 운영 및 지원 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크게 여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이며, 지원기관으로서 중앙 및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있다. 추진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제도 운영의 세부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① 각 기관의 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분석평가서 작성·제출(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②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책임관의 분석평가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통보, ③ 검토의견서에서 '개선 의견'을 받은 각 기관(또는 부서)은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④ 각 기관의 기관담당부서는 분석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⑤ 여성가족부는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및 각 기관이 수행한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세부 운영 체계는 본문 <표 I-1>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16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시도별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중앙센터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지역 센터 총괄 관리 및 지원, 컨설팅 방향 설정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국내외 모범

사례 발굴 및 홍보 전략 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지원,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지역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자료 발간, 지역 단위 포럼 등의 개최를 통한 지역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II.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1. 추진 결과 개요

먼저 2012년도에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해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1,270개였다. 그 중 법령이 1,099개, 계획 27개, 사업 144개로 양적으로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분석평가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 중 여성가족부는 104건에 대해 개선의견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한 수용률을 대상정책별로 보면, 법령이 89.4%, 계획은 100%, 사업은 92.7%였다

표 1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 결과(중앙)

(단위: 개, %)

구 분	대상 기관수	총계	개선의견	개선의견 수용률(%a)	원안동의	기타b)	
계	42	1,270	104	91.3	1,104	62	
중앙행정기관	법령	35	1,099	47	89.4	991	61
	계획	13	27	2	100.0	24	1
	사업	36	144	55	92.7	89	0

주 1 : a)는 개선의견 수용률(%)=(수용+일부수용)/ 개선의견 ×100

주 2 : b)는 분석평가 제외 또는 중단된 경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012년에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해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총 13,522개로, 그 중 법령이 7,365개, 계획 61개, 사업 6,096개였다.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결과를 보면,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과제가 3,215개(23.8%), 원안동의 7,198개(53.2%), 기타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중단된 과제가 1,848개(13.7%), 개선의견인지 원안동의인지를 알 수 없는 과제가 1,261개(9.3%)로 파악되었다. 개선의견 통보에 대한 수용률은 전체적으로 68.1%였으며, 이를 기관유형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54.6%, 기초자치단체 71.4%, 시·도 교육청 29.2%로 나타났다.

표 2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 결과(지자체)

(단위: 개, %)

구 분	대상 기관수	총계	개선의견	개선의견	원안동의	기타b)	알 수 없음c)	
				수용률(%a)				
전체	260	13,522	3,215	68.1	7,198	1,848	1,261	
광역 자치 단체	계	17	1,845	571	54.6	1,011	164	99
	법령	17	873	160	52.5	550	161	2
	계획	8	23	7	85.7	15	1	0
	사업	16	949	404	55.0	446	2	97
기초 자치 단체	계	227	11,358	2,620	71.4	6,008	1,574	1,156
	법령	222	6,234	730	47.0	3,765	1,473	266
	계획	26	37	13	84.6	8	9	7
	사업	227	5,087	1,877	80.8	2,235	92	883
시·도 교육청	계	16	319	24	29.2	179	110	6
	법령	16	258	10	30.0	139	103	6
	계획	1	1	0	-	0	1	0
	사업	9	60	14	28.6	40	6	0

주 1 : a)는 개선의견 수용률(%)=(수용+일부수용)/개선의견 ×100

주 2 : b)는 분석평가 제외 또는 중단된 경우

주 3 : c)는 원안동의인지 개선의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교육실적을 보면, 총 42,916명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유형별로는 위탁교육 1,831명, 자체교육 38,553명, 찾아가는 교육 2,532명으로 자체 교육의 참여 실적이 가장 높았다.

2. 대상 정책별 정책 개선 사례

① 법령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사례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정책에 있어 성인지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례(『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함으로써 계획수립 단계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성인지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사례(『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등이 있다. 또한 남녀차별적인 구법의 잔재를 정비하지 못한 제·개정 법령에 대해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시정·개선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출가녀’ 개념 및 합리적 근거 없이 결혼한 여자에 대한 구분 취급, 친인척 범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던 조항을 성평등한 조항으로 개선한 사례(『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보건복지부), 호주제도의 폐지 및 호적법 폐지로 법에서 폐지된 ‘본적’ 개념을 사용한 법령조문을 ‘등록기준지’로 수정 개선한 사례(『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등이 있다.

② 계획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 사례를 보면, 여성의 보행안전을 위해 주요 도로 및 도시 공간에 범죄 예방 설계를 적용하고 아파트단지 안전 지대화 방안을 교통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영유아 동반자가 이동에 어려움을 갖는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약자용 좌석에 임산부 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자도 포함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석’을 지정·운영하도록 개선된 『양주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성별분리통계 분석을 통해 환승시설

설치 시 여성과 남성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 및 요구의 차이가 반영되도록 개선한 『화성시 지방 대중교통계획』, 공원 조성 시 여성 및 가족친화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체육 시설 추진 시에는 여성과 노약자 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을 반영토록 개선한 『대전광역시 제4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여성운전자 채용 및 근무환경 지원 업체에 대한 우대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환경이 개선되도록 한 『경기도 화성시 지방 대중교통계획』 등을 들 수 있다.

③ 사업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선 사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한 “성과평가체계 개편”(국세청), 『의용소방대 설치 표준 조례(안)』개정 시 남녀차별적 업무 분장을 개선하고 여성 하의 규정을 ‘치마 또는 바지’로 수정하여 반영토록 한 “전담의용소방대 확대운영 사업”(소방방재청),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양성평등 추진성과 및 노력도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성과급 지급률 및 기관 대표경영성과 연봉인상률을 결정토록 한 “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 이행성과 평가”(서울특별시), 여성친화적인 경기장 건설을 위해 입찰안내서 상에 여성친화적 설계를 명시하고 설계·시공단계부터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하도록 개선한 “광주야구경기장 건립공사”(광주광역시), 여성 대상 우울증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운영 예산을 증액토록 한 “정신보건센터운영(우울증 예방사업)”(경기도 시흥시), 여자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여 사업 연계 스포츠시설 분야를 다양화해서 남녀 청소년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도록 개선한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경상북도 문경시) 등을 들 수 있다.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 정책·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개선안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 권고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개선 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2012년 ‘법령’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정책’,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 등 4건에 대해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각각의 개선과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회복지·노동·경제·교육·환경 등 주요정책 분야의 현행 법령전문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14개 법령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입법추진 시 개선과제를 반영토록 요청하고, 기관별 반영계획을 점검하였다.

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기획재정부) 등 8개 조세, 경제법령에서 특수 관계인의 범위 설정 시 부계와 모계 혈족을 차등적으로 규정한 것을 동일하게 개정하도록 하고 ② 「사립학교법」(교육부)은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사유 중 아동 입양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을 요청하였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여성 농어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① 농어촌 여성의 낮은 교육훈련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농촌진흥청)에 금년부터 ‘여성교육생 할당제’를 도입·시범 운영하고, ② 농지담보 노후연금(농식품부)의 수령방식을 개선하여 농지연금 수령 계좌를 가입자 동의시 배우자 계좌로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지침을 개선하도록 하고, ③ 아울러 취약농가에 대한 인력지원(농식품부)을 강화하기 위해 가사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등 인력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3.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해 필요한 법령, 지침 등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정책 전반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①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국토부)에 있어서는 ‘기반 시설 설치 및 보행동선계획’ 수립 시 ‘아동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②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지침』(국토부)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도록 개선요청하고, ③ 『여성발전기본법』(여성가족부)상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4.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

일상생활에서 성별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불편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거 환경, 돌봄 여건, 이동 여건 등의 분야에서 각각 무인택배보관함, 마을품앗이 센터, 안심버스 쉼터 등 20개 생활체감형개선과제가 도출되었다.

IV. 성과와 과제

1. 총평

①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2012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행으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최초로 이루어진 의미 있는 해이다.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이 추진된 법령안 8,464개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졌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원안동의’는 5,445개(64.3%), ‘개선의견’은 947개(11.2%)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제시된 개선의견 947개 중 중앙행정기관은 89.4%, 지방자치단체는 47.8%를 법령안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결과 반영된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성별구분조항에 관한 것이 11.5%, 성별특성반영에 관한 것이 62.3%를 차지했다.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성별 특성반영 항목(62.3%)이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성별특성반영과 관련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균형 및 성별분리통계의 작성에 관한 것들이다.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에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성별분리통계 작성은 성인지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성인지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2012년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반영하여 성평등한 입법안을 만들어낸 원년이였다.

②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행에 따라 2012년에 처음 이루어졌다. 2012년에 수립한 88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13개 중앙행정기관이 27개 계획, 8개 광역자치단체가 23개 계획, 26개 기초자치단체가 37개 계획, 1개 시·도 교육청이 1개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검토의견 통보 결과를 보면, 88개 계획 중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통보한 계획은 47개(53.4%), 개선의견을 통보한 계획은 22개(25.0%)였다. 성별 연관성이 낮아 체크리스트 단계에서 제외되거나 중도에 계획 수립이 중단된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통보하지 않았다.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해당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성인지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중점과제를 해당 분야의 성별 요구를 수용한 과제로 개선하거나 성별 요구를 반영한 신규 과제를 제안하여 계획 추진이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헌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 상 개선의견은 첫째, 계획이 제안한 전략 과제 및 세부 정책 중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키거나 여성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개선, 둘째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신규 과제 제안 등이 주를 이루었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의견의 제안과 수용은 대상 계획 분야의 성별 요구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선 사례의 축적을 통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원자력, 황사, 석면, 유전자 변형생물체 관련 계획은 성별로 다른 신체적 여건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성인지적 연구의 부족으로 관련 계획에 대한 검토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한 계획 수립 기관의 수용률이 높다는 점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활성화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③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해 총 6,240개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이 144개(2.3%), 광역자치단체가 949개(15.2%), 기초자치단체는 5,087개(81.5%), 시·도 교육청은 60개(1.0%)를 추진하여, 기초자치단체가 80%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사업 6,240건에 대한 검토의견은 ‘원안동의’ 2,808건(45.0%), ‘개선의견’ 2,350건(37.7%)이 통보되었다. 성차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각 기관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수혜의 성평등성, 주요 의사 결정 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성평등 교육 실시 등 각 사업의 내용에 맞춰 적절한 사업 개선안을 제시한 경우 원안동의가 통보되었다. 한편 통보된 개선의견 2,350개 과제 중에서 1,794개(76.3%)를 수용하였다. 주요 반영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정책수행방식의 개선(46.6%)이며, 다음으로는 성별통계 생산·활용(16.9%)이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사례를 보면 ① 여성참여자의 요구사항 반영, ② 자격 요건에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 변경 및 관련 규정 개선, ③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확산, ④ 여성과 남성의 성별 차이를 고려한 작업 환경 개선, ⑤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교육 운영방식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검토의견 통보서 상의 개선의견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개선의 내용을 업무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기관 담당 공무원이 함께 검토하면서 개선사항을 보완할 뿐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정책개선에 대해 더 많은 권한과 책임성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④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012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4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총 42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원년에 수행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적절한 첫째, 사회 복지·경제·교육 등 주요 분야의 법령 전문(全文)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법령 정비 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분석평가하여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상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2012년 39개 도시로 확산된 여성친화도시의 관련법령 및 지침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운영기반 구축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여성의 요구가 높은 안전 분야 등에서 20대 생활체감형 개선과제를 발굴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2. 성과

①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원년을 맞아 변화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2년부터 2013년 5월 말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 6개 기관, 기초자치단체 11개 기관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롭게 변화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한 것은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분석평가 결과반영 강화, 공무원 교육 강화, 시민 참여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법령 심의·의결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11조(법령안의 심사) 제1항을 개정(2012.10. 4)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요청 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사항을 첨부하도록 명시하였다.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와 자치구도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였다.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심사과정에서 사전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령안의 성 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② 검토의견 통보절차 도입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책무성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에서부터 정책개선 결과 반영에 이르기까지 분석평가의 추진 절차를 지침을 통해 명료화하고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절차를 도입했다는 것은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검토의견 통보 절차 도입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유는 i) 분석평가서를 작성한 공무원에게 자신이 작성한 분석평가서가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ii) 만약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분석평가서가 충실하게 분석되지 않았거나 정책개선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정책개선 의견을 통보해서 이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검토의견 통보 책임을 기관 내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책임과 권한 및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자체 추진 역량을 키우면서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③ 분석평가 대상 정책 확장 : 사업 중심에서 법령, 계획, 사업으로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그 동안 사업 중심의 분석평가에서 머물러 있다가 2012년에는 법령, 계획, 사업으로 대상정책이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분석평가는 290개 기관이 참여하여 8,464개를 추진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것은 법령 제·개정안이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리고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계획 88개에 대해서도 분석평가가 이루어졌다. 계획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좀 더 긴 안목으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것인 만큼 국민의 삶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데, 이러한 계획수립 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계획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이 어떠한지를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성차별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매년 양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2012년에는 총 6,240개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2011년 대비 과제 수가 약 2배나 증가하였다.

④ 법령·계획·사업의 성 인지적 개선 증대

2012년도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확대실시로 성 인지적인 정책개선 효과가 증대되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분석보고서를 통해 정책 개선사례를 법령 92개, 계획 7개, 사업 345개, 총 444개 제출하였다. 2012년에 처음 실시된 법령, 계획에 이르기까지 각 대상 정책별로 정책개선사례가 추천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정책개선 효과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법령 개선의 경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교육과학기술부), 「경찰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경찰청)처럼 정책결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에 대해 성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에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은 성인지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임에 따라 성별분리통계 생산을 법령 등에 명시한 것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다.

계획에 대한 정책개선 사례는 주로 계획안이 제안한 전략 과제 및 세부 정책과제 중에서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키거나 여성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를 개선하도록 하거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신규 과제를 추가로 제안한 사례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기도 화성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제2차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정책개선 사례로는 해당사업에 여성참여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사례, 근거법령의 사업 참여 자격 요건에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을 개선한 사례, 소속기관의 일·가정 양립 확산 사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개선한 사례,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교육 운영방식을 개선한 사례 등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국립공원지킴이 사업(환경부), 전담의용소방대확대 사업(소방방재청), 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 이행성과 평가(서울특별시), 광주야구경기장 건립공사(광주광역시) 개선사례 등이다.

⑤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확대를 통한 제도 이해 및 분석평가 역량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석 평가 주체인 공무원의 제도 이해와 분석평가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공무원이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다. 특히 2012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첫 해였으므로, 새롭게 변화된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 해이기도 하였다.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면, i) 분석평가 대상 정책 확대에 따라 교육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고, ii)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별로 교육 대상을 구분,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iii) 공무원의 교육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교육, 자체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보다 더 중요한 성과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시행 및 그에 따른 분석평가 제도의 변화 내용을 공무원들에게 인지시키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이다. 반면, 5급 이상 공무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⑥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는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16개 지역 센터를 지정·운영하였다. 또한 각 센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전문인력 1명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센터 지정 지역과 미지정 지역 간에는 분석평가 추진 정도에 있어 상당한 편차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지체에 센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고,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으로써 전국적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3. 과제

①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관리직 공무원 교육 강화

중앙행정기관의 교육실적을 보면, 위탁교육은 37개 기관 공무원 277명이, 찾아가는 교육은 8개 기관 공무원 35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교육실적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광역자치단체는 위탁교육의 경우 16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총 134명이 참여하였다.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총 8,459명을 교육하였다. 찾아가는 교육은 3개 기관 공무원 532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위탁교육 1,265명, 자체교육 30,094명, 찾아가는 교육 1,424명이 참여하였다. 이처럼 자체교육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소극적인데 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업무합동평가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 교육 실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성을 보이거나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2년도 직급별 교육실적을 보면, 주로 6급 이하 공무원에 집중되어 있다. 2012년

위탁교육 실적을 보면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 287명, 6급 이하 공무원 1,427명이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참여를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②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책임관의 역량 강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경험을 통해 검토의견 통보는 정책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는 중앙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분석평가서에 대해 검토 후 모두 검토의견을 통보했지만,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책임관의 경우 법령, 계획, 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때에 충실하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책임관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나아가 분석평가책임관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검토의견 통보 절차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석평가책임관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내실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에 관한 성별 현황, 성별 만족도, 성별 요구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 매우 중요한 평가 유형이다. 따라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본래의 목적을 살리고 정책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제도개선 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각 부처의 주요정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12년에 4개 과제에 불과한 대상과제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대상과제 발굴·선정 단계부터 분석평가 추진 과정, 정책개선 반영까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개선 과제가 해당기관의 관련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④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기관 역량 강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 및 16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지역 센터들 간의 연계 강화 및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지역 센터들은 지정·운영 기간의 차이가 있으며, 인력구성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앙 센터가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지역센터들의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센터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총괄적 관리 지원을 하는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센터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컨설팅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특히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 관련 예산 및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23
2. 운영 및 지원 체계	25
3. 추진 결과 개요	32



I.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가. 개념 및 목적

2012년은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에 있어서 큰 전환점의 해였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획기적으로 강화된 해이기 때문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을 위해 마련한 최초의 법적근거는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서였다. 동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를 신설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2004년 시범 분석을 거쳐 2005년부터 2011년까지는 동 법에 근거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 동안에는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그 의미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 평등한 정책이 개발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도구”라고 정의하였다.

‘성별영향평가’라는 개념은 2011년 9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2012년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여기서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둘째,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며 셋째,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나. 법적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1년도에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과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추진 근거를 두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주요 조항

- 분석평가 대상(제5조)
- 분석평가의 시기(제7조)
-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제9조)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제10조)
- 정책개선 권고(제11조)
-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제12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3조)
-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제14조)
- 분석평가 교육 및 자문(제15조 및 제16조)
-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제17조 및 제18조)

다. 대상 정책 및 적용 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정책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이 해당된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성별 격차가 크고 다수 부처에 관련되거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수혜 대상의 범위가 넓어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정책을 선정한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적용 대상기관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 위원회 등과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이 해당된다.

라.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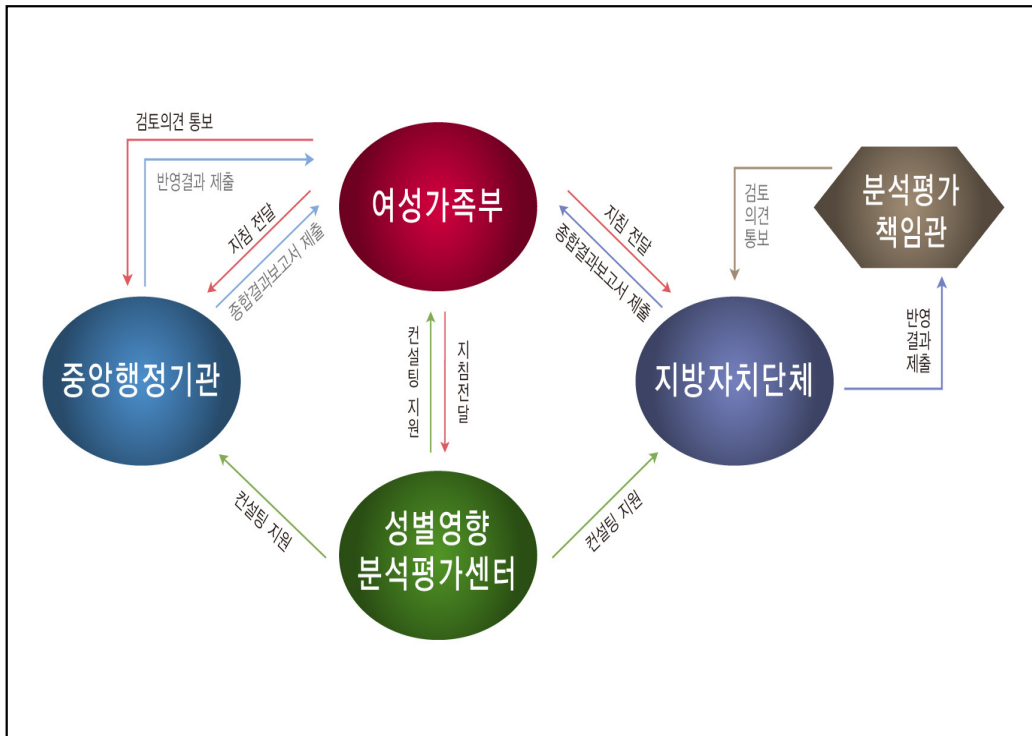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조항 마련('02)
 - 9개 기관(10개 과제)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04)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05)
 - 53개 기관(85개 과제)
- 기초자치단체('06), 시·도 교육청('07)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및 시행('12.3.16)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확대(사업 ⇒ 법령, 계획, 사업)
 -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12.10/법제처)
 - ※ 법령안 심사 요청 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첨부하도록 규정

2. 운영 및 지원 체계

가. 운영 체계 개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기관이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첫째, 여성가족부가 우리나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매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을 수립하여 각 분석평가 수행기관에 제공하며,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분석평가서에 대해 검토의견을 통보하고 반영결과 제출서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석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전국 16개 시도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제·개정안,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중앙 및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각 기관에는 여성가족부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관리하는 기관담당부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이하 분석평가 책임관)을 지정하여, 수행 책임을 갖도록 하였다.



[그림 1-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체계

나. 세부 운영 체계

제도 운영의 세부 절차는 크게 다섯 가지 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 각 기관은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사업에 대해서

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한다.

둘째,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책임관은 분석평가서를 검토하여 각 기관(또는 부서)에 검토의견서를 통보한다. 검토의견서는 분석평가서에 대해서 ‘원안동의’, 또는 개선의견을 통보한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정책개선을 권고한다.

셋째, 검토의견서에서 ‘개선의견’을 받은 각 기관(또는 분석평가 부서)은 정책개선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또는 향후 반영계획)를 적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서를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제출한다.

넷째, 각 기관은 익년도(2013년) 2월말에 2012년의 분석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종합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한다.

다섯째, 여성가족부는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에 제출한다. 여성가족부 및 각 기관이 수행한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세부 운영체계는 <표 I-1> 과 같다.

표 I-1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체계

평가대상		각 기관	여성가족부
법령	제·개정 법령안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안 및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기관 협의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30일 이내 분석평가 검토·협의 분석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개정 자치법규안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부처의 제·개정 법령안에 준하여 자체 운영 분석평가 검토·협의를 기관별 분석평가책임관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수행이 곤란한 법규안은 여성가족부에 검토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평가책임관 요청사항 지원 분석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중장기 계획 (중앙부처·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계획 수립안 및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특정평가 추진시 계획 수립 전까지 분석평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자료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목표, 전략·중점과제에 대한 분석평가 검토·협의(분석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시 중점과제별 세부계획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사업	주요 정책·사업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법령, 예산, 정책 등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평가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검토의견 통보 분석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세출예산 사업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크리스트와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법령, 예산, 정책 등에 반영 분석평가 검토·협의를 기관별 분석평가책임관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평가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검토의견 통보 분석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정성별영향 분석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은 기관별 분석평가에서 제외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정책개선 권고 및 반영결과 점검
분석평가결과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분석평가결과 종합·제출 (익년도 2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

다.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현황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12년 12월 기준,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1개소와 16개 지역별로 1개소씩 총 17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표 I-2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현황

('12. 12 기준)

연번	구분	지역	기관명	지정일
1	중앙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 5.10 지정
2	지역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0.11. 5 지정
3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08.10.20 지정
4		대구	대구여성가족재단	'12. 6.25 지정
5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12. 3.20 지정
6		광주	광주여성재단	'11. 9. 5 지정
7		대전	대전발전연구원	'12. 3.20 지정
8		울산	울산발전연구원	'12. 5.21 지정
9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08. 5.10 지정
10		강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09. 6. 1 지정
11		충북	충북여성발전센터	'12. 9. 7 지정
12		충남	충남여성정책개발원	'08. 5.10 지정
13		전북	전북발전연구원	'12. 5.21 지정
14		전남	전남여성플라자	'10.11. 5 지정
15		경북	경북여성정책개발원	'10. 1.15 지정
16		경남	경남발전연구원	'12. 3.20 지정
17		제주	제주발전연구원	'12. 4.17 지정

라.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기능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은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과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나뉘며, 2012년에 부여된 각각의 지원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개선 지원
 - 평가 지표, 분석기법 개발 등
- 컨설팅 방향 설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 국내외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전략 개발 지원
-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및 연계를 통한 전국 지원망 구축
 - 전국 단위 워크숍, 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양성평등 발전방안 모색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분석평가 지원
 - 분석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지원 및 홍보자료 발간 지원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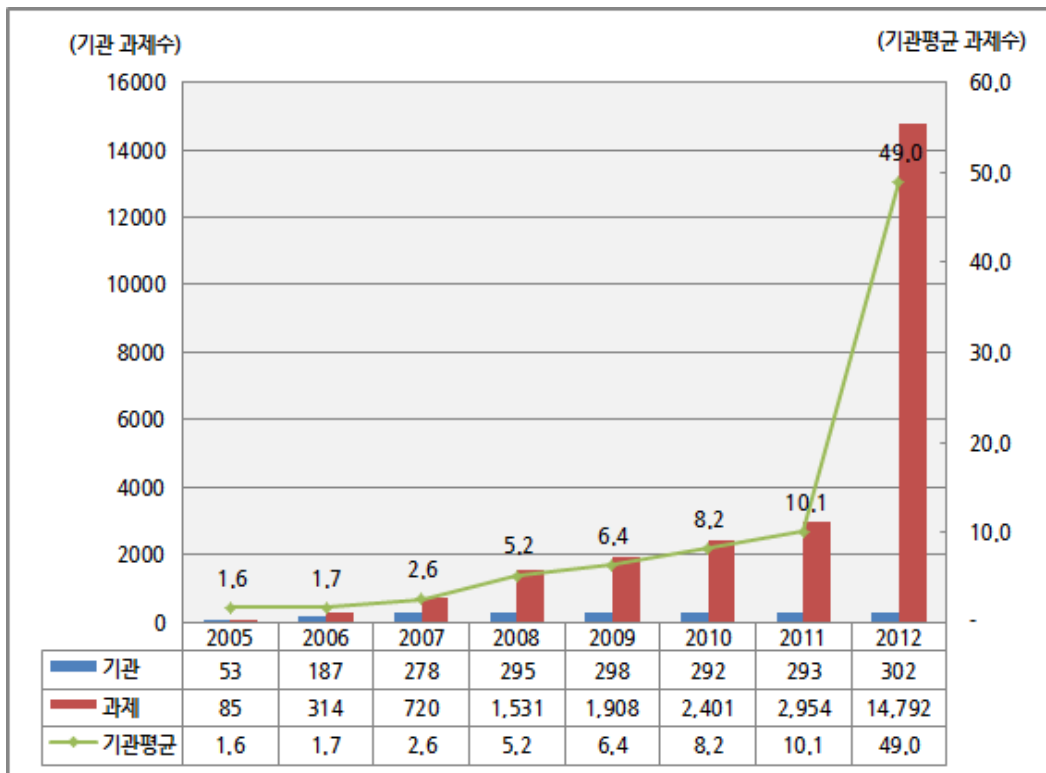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석평가 지원
 - 해당 지역 분석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 대상 정책별 개선안 도출 지원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 지역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 지역 단위 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지역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추진 결과 개요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 결과

2012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법령·계획으로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추진과제수가 대폭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개선 기능도 강화되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총 14,792개 추진하였다. 이것은 2011년보다 약 5배 증가한 결과이다. 이것은 302개 기관이 평균 49개 과제를 수행한 실적이다. 2011년에 293개 기관이 평균 10.1개 과제를 수행한 것에 비해서 참여기관이나 추진 과제수가 증가하였다.



[그림 I -2]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변화 추이

이를 다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나눠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도에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해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1,270개였다. 그 중 법령이 1,099개, 계획 27개, 사업 144개로 양적으로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분석평가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1,270개의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결과,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과제는 104개(8.2%), 원안동의 1,104개(86.0%), 기타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중단된 과제가 62개(4.9%)였다. 개선의견 통보에 대한 수용률은 전체적으로 91.3%였으며, 이를 다시 대상정책별로 보면 법령 개선의견 수용률이 89.4%, 계획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은 100%, 사업 개선의견 수용률은 92.7%였다.

표 I-3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중앙)

(단위: 개, %)

구 분	대상 기관수	총계	개선의견	개선의견 수용률(%) ^{a)}	원안동의	기타 ^{b)}	
							계
중앙행정 기관	법령	35	1,099	47	89.4	991	61
	계획	13	27	2	100.0	24	1
	사업	36	144	55	92.7	89	0

주 1 : a)는 개선의견 수용률(%)=(수용+일부수용)/개선의견 ×100

주 2 : b)는 분석평가 제외 또는 중단된 경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012년에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해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광역자치단체가 1,845개, 기초자치단체 11,358개, 시·도 교육청 319개로 총 13,522개였다. 그 중 법령이 7,365, 계획 61개, 사업 6,096개로 나타났다.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결과를 보면,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과제가 3,215개(23.8%), 원안동의 7,198개(53.2%), 기타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중단된 과제가 1,848개(13.7%), 검토의견 통보가 안됐거나 되었더라도 개선의견인지 원안동의인지를 알 수 없는 과제가 1,261개(9.3%)로 파악되었다. 한편 개선의견 통보에 대한 수용률은 전체적으로 68.1%였는데, 이를 기관유형별로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54.6%, 기초자치단체 71.4%, 시·도 교육청 29.2%로

나타났다. 대상정책별로 볼 때도 기관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법령 개선의견 수용률은 52.5%, 기초자치단체 47.0%, 시·도 교육청 30.0%였다. 계획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85% 정도의 수용률을 보였고, 사업 개선의견 수용률은 광역자치단체가 55.0%, 기초자치단체 80.8%, 시·도 교육청은 28.6%로 각각 차이가 났다.

표 I-4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지자체)

(단위: 개, %)

구 분	대상 기관수	총계	개선의견	개선의견	원안동의	기타 ^{b)}	알 수 없음 ^{c)}	
				수용률(% ^{a)})				
전 체	260	13,522	3,215	68.1	7,198	1,848	1,261	
광역자치 단체	계	17	1,845	571	54.6	1,011	164	99
	법령	17	873	160	52.5	550	161	2
	계획	8	23	7	85.7	15	1	0
	사업	16	949	404	55.0	446	2	97
기초자치 단체	계	227	11,358	2,620	71.4	6,008	1,574	1,156
	법령	222	6,234	730	47.0	3,765	1,473	266
	계획	26	37	13	84.6	8	9	7
	사업	227	5,087	1,877	80.8	2,235	92	883
시·도 교육청	계	16	319	24	29.2	179	110	6
	법령	16	258	10	30.0	139	103	6
	계획	1	1	0	-	0	1	0
	사업	9	60	14	28.6	40	6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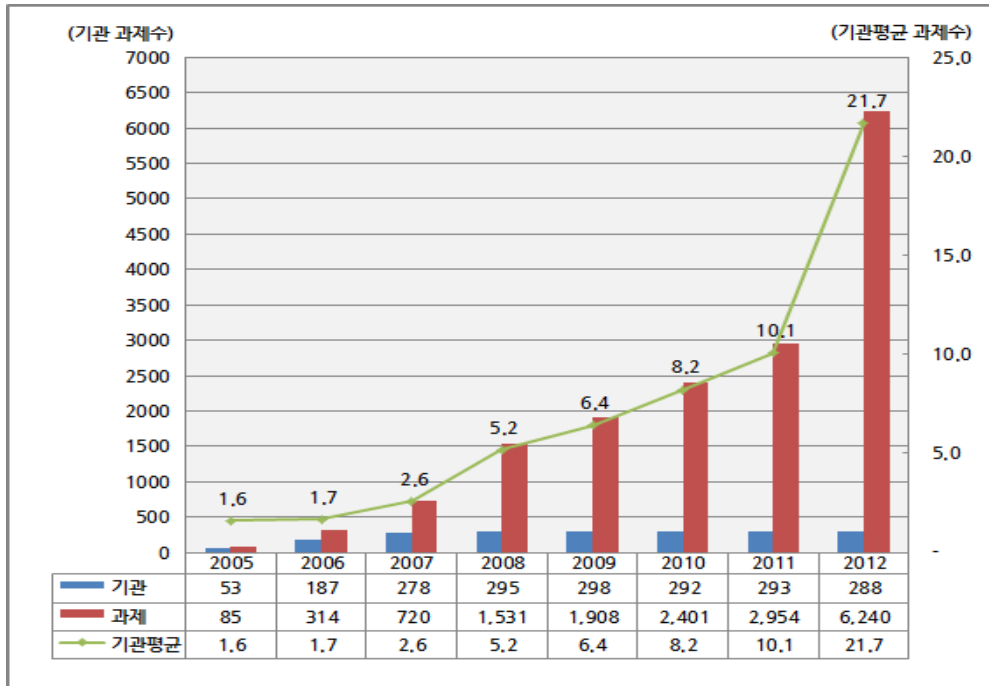
주 1 : a)는 개선의견 수용률(%)=(수용+일부수용)/개선의견 ×100

주 2 : b)는 분석평가 제외 또는 중단된 경우

주 3 : c)는 원안동의인지 개선의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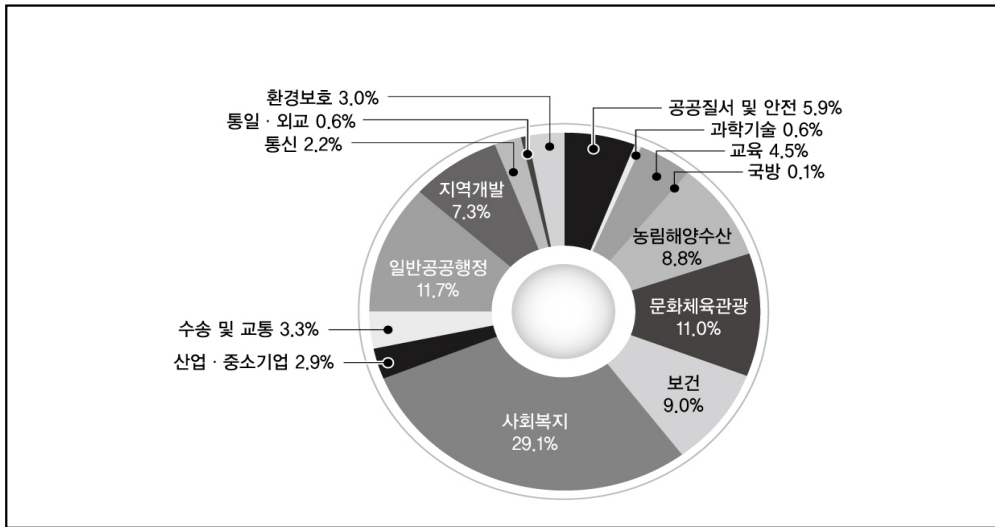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는 2005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연도별로 과제 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53개 기관이 평균 1.6개, 2007년에는 278개 기관이 평균 2.6개, 2009년에는 298개 기관이 평균 6.4개, 2011년에는

293개 기관이 평균 10.1개, 2012년에는 288개 기관이 평균 21.7개를 추진하였다. 2012년의 기관별 평균 사업 과제 수는 2011년 대비 2배 증가하였다.



[그림 I -3]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변화 추이(사업)

한편 2012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사업을 정부의 기능분류체계(Business Reference Model, BRM)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분야별로 유형화 해 보면, 전체 6,240개 중 사회복지 분야가 2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그림 I-3). 일반공공행정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각각 11.7%, 11.0%로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분야는 9.0%,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8%, 지역개발 분야는 7.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9%, 교육 분야 4.5% 순으로 집계되었다. 그 외 수송 및 교통 분야 3.3%, 환경보호 분야 3.0%, 산업·중소기업 분야 2.9%, 통신 분야 2.2%, 통일·외교 분야 및 과학기술 분야가 각각 0.6%로 3% 이내의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국방 분야가 0.1%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I -4]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분야별 추진현황

표 I -5 사업분야별, 기관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단위: 개(%))

사업분야(BRM)	중앙	광역	기초	교육청	계
전 체	144(100.0)	949(100.0)	5,087(100.0)	60(100.0)	6,240(100.0)
공공질서 및 안전	25(17.4)	53(5.6)	283(5.6)	9(15.0)	370(5.9)
과 학 기 술	7(4.9)	10(1.1)	18(0.4)	0(0.0)	35(0.6)
교 육	10(6.9)	47(5.0)	190(3.7)	35(58.3)	282(4.5)
국 방	4(2.8)	1(0.1)	0(0.0)	0(0.0)	5(0.1)
농 립 해 양 수 산	12(8.3)	100(10.5)	434(8.5)	0(0.0)	546(8.8)
문 화 체 육 관 광	12(8.3)	104(11.0)	563(11.1)	8(13.3)	687(11.0)
보 건	1(0.7)	55(5.8)	505(9.9)	0(0.0)	561(9.0)
사 회 복 지	30(20.8)	228(24.0)	1,552(30.5)	3(5.0)	1,813(29.1)
산 업 · 중 소 기 업	8(5.6)	56(5.9)	116(2.3)	0(0.0)	180(2.9)
수 송 및 교 통	1(0.7)	42(4.4)	165(3.2)	1(1.7)	209(3.3)
일 반 공 공 행 정	15(10.4)	139(14.6)	575(11.3)	3(5.0)	732(11.7)
지 역 개 발	2(1.4)	55(5.8)	400(7.9)	1(1.7)	458(7.3)
통 신	2(1.4)	16(1.7)	121(2.4)	0(0.0)	139(2.2)
통 일 · 외 교	9(6.3)	10(1.1)	17(0.3)	0(0.0)	36(0.6)
환 경 보 호	6(4.2)	33(3.5)	148(2.9)	0(0.0)	187(3.0)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적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 총 42,916명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첫째, 교육 유형별로는 위탁교육 1,831명, 자체교육 38,553명, 찾아가는 교육 2,532명이 참여하여 자체교육의 참여 실적이 가장 높았다.

둘째,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631명, 광역자치단체 9,125명, 기초자치단체 32,783명, 시·도 교육청 37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표 I-6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유형별 실적

(단위: 기관, 명)

구분	교육 유형	기관수	교육 참가인원
전체		-	42,916
중앙	위탁교육	37	277
	자체교육	-	-
	찾아가는 교육	8	354
광역	위탁교육	17	134
	자체교육	12	8,459
	찾아가는 교육	3	532
기초	위탁교육	207	1,265
	자체교육	132	30,094
	찾아가는 교육	6	1,424
교육청	위탁교육	17	155
	찾아가는 교육	3	222

셋째, 전체 교육실적 중에서 여성가족부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교육실적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일반직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이 287명, 6급 이하 공무원은 1,427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기관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중앙

행정기관은 5급 이상 136명, 6급 이하 108명, 지방자치단체는 5급 이상 119명, 6급 이하 1,205명, 교육청은 5급 이상 32명, 6급 이하 114명이 참여하여 전반적으로 6급 이하의 참여율이 높았다.

표 I-7 성별영향분석평가 직급별 교육실적

구분	일반직												특정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		군,경찰 소방		교육, 연구직		기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11	12	51	14	126	73	177	216	258	398	147	231	11	5	14	11	25	51	1,831
중앙	11	12	12	2	55	44	31	28	24	13	1	11	8	3	2	1	1	18	277
여가부 ^{a)}	(10)	(12)	(5)	(1)	(24)	(29)	(4)	(9)	(2)	(7)	-	(1)	-	-	-	-	-	(8)	(112)
지자체	0	0	32	9	57	21	132	164	214	344	141	210	3	2	9	5	24	32	1,399
교육청	0	0	7	3	14	8	14	24	20	41	5	10	0	0	3	5	0	1	155

주 1) 여성가족부 주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교육 실적
 2) a)는 여성가족부의 직급별 교육실적 인원

각 기관별 교육실적 세부현황은 <표 I-8>과 같다.

표 I-8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별 교육 실적

기관명(기관수)	참가인원(명)		
	위탁교육	자체교육	찾아가는 교육
전체	1,831	38,553	2,532
중앙행정기관(40)	277	-	354
교육과학기술부	11	-	-
외교통상부	9	-	12
법무부	9	-	-
국방부	36	-	14

기관명(기관수)	참가인원(명)		
	위탁교육	자체교육	찾아가는 교육
행정안전부	2	-	52
문화체육관광부	2	-	30
농림수산식품부	3	-	-
지식경제부	2	-	-
보건복지부	6	-	40
환경부	1	-	-
고용노동부	1	-	-
여성가족부	112	-	-
국토해양부	2	-	-
기획재정부	1	-	-
통일부	0	-	-
국가보훈처	10	-	-
법제처	1	-	-
병무청	6	-	-
경찰청	3	-	-
국세청	2	-	-
관세청	2	-	-
기상청	6	-	-
농촌진흥청	3	-	47
문화재청	4	-	-
산림청	1	-	-
조달청	5	-	-
식품의약품안전청	1	-	70
중소기업청	1	-	89
통계청	3	-	-
특허청	4	-	-
방위사업청	2	-	-
소방방재청	4	-	-
해양경찰청	4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	-

기관명(기관수)	참가인원(명)		
	위탁교육	자체교육	찾아가는 교육
국 가 인 권 위 원 회	0	-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6	-	-
금 용 위 원 회	0	-	-
국 가 과 학 기 술 위 원 회	3	-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7	-	-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1	-	-
광역자치단체(17)	134	8,459	532
서 울 특 별 시	2	449	-
부 산 광 역 시	3	1,150	-
대 구 광 역 시	21	827	191
인 천 광 역 시	14	1,401	-
광 주 광 역 시	8	921	-
대 전 광 역 시	10	2,535	-
울 산 광 역 시	11	658	-
경 기 도	14	22	-
강 원 도	11	-	-
충 청 북 도	10	354	309
충 청 남 도	6	142	-
전 라 북 도	0	-	-
전 라 남 도	9	-	-
경 상 북 도	7	-	32
경 상 남 도	5	-	-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	-	-
세 종 특 별 자 치 시	1	-	-
기초자치단체(224)	1,265	30,094	1,424
서 울 특 별 시 기 초	196	6,211	-
부 산 광 역 시 기 초	23	1,170	315
대 구 광 역 시 기 초	53	1,441	-
인 천 광 역 시 기 초	143	2,111	-

기관명(기관수)		참가인원(명)		
		위탁교육	자체교육	찾아가는 교육
광주광역시	기초	23	1,421	-
대전광역시	기초	35	-	-
울산광역시	기초	20	1,068	-
경기도	기초	274	3,468	-
강원도	기초	133	1,498	142
충청북도	기초	101	533	-
충청남도	기초	44	1,955	-
전라북도	기초	39	1,782	-
전라남도	기초	52	2,380	967
경상북도	기초	71	2,382	-
경상남도	기초	58	2,674	-
시·도 교육청(17)		155	-	222
	서울특별시 교육청	6	-	-
	부산광역시 교육청	27	-	-
	대구광역시 교육청	18	-	-
	대전광역시 교육청	9	-	85
	인천광역시 교육청	2	-	-
	광주광역시 교육청	3	-	-
	울산광역시 교육청	11	-	66
	경기도 교육청	4	-	-
	강원도 교육청	9	-	-
	충청북도 교육청	5	-	-
	충청남도 교육청	12	-	-
	전라북도 교육청	18	-	-
	전라남도 교육청	3	-	-
	경상북도 교육청	8	-	71
	경상남도 교육청	16	-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3	-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1	-	-



II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1. 중앙행정기관	45
2. 광역자치단체	58
3. 기초자치단체	66
4. 시·도 교육청	74
5. 대상 정책별 정책 개선 사례	80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1. 중앙행정기관

가. 과제 추진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42개 기관이 총 1,270개를 추진하였다(〈표 II-1〉). 이 중에서 법령 1,099개(86.5%), 계획 27개(2.1%), 사업 144개(11.3%)였다. 추진 과제 수가 많은 기관별로 보면, 국토해양부가 166개(1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 110개(8.7%), 농림수산식품부 92개(7.2%) 순으로 많았다. 이것은 법령에 대한 분석평가를 많이 추진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를 다시 대상정책별로 보면, 법령 분석평가 추진실적은 전체 1,099개였는데, 국토해양부가 158개로 가장 많이 하였고,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 105개, 농림수산식품부 85개 순으로 나타났다.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전체 27개를 추진하였는데,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가 각 5개로 가장 많이 추진하였고, 다음으로 여성가족부가 3개로 많았다.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전체 144개를 추진하였는데, 여성가족부가 24개로 가장 많이 추진하였고, 다음으로 법무부(검찰청) 14개, 고용노동부 9개 순으로 많았다.

표 II - 1 중앙행정기관별 과제 추진 결과

(단위: 개, %)

기 관 명	법령	계획	사업(*)	계
전 체	1,099 (86.5)	27 (2.1)	144 (11.3)	1,270 (100.0)
기 획 재 정 부	69	-	1	70(5.5)
교 육 과 학 기 술 부	105	1	4	110(8.7)
외 교 통 상 부	17	-	5	22(1.7)
통 일 부	5	-	1	6(0.5)
법 무 부 (검 찰 청)	39	-	14(7)	53(4.2)
국 방 부	29	-	4(4)	33(2.6)
행 정 안 전 부	78	2	5(5)	85(6.7)
문 화 체 육 관 광 부	49	1	8(8)	58(4.6)
농 립 수 산 식 품 부	85	-	7(5)	92(7.2)
지 식 경 제 부	44	1	3(5)	48(3.8)
보 건 복 지 부	69	1	4(10)	74(5.8)
환 경 부	68	5	7	80(6.3)
고 용 노 동 부	37	2	9	48(3.8)
여 성 가 족 부	17	3	24	44(3.5)
국 토 해 양 부	158	5	3	166(13.1)
방 송 통 신 위 원 회	17	-	3	20(1.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5	-	-	5(0.4)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3	2	1	6(0.5)
국 무 총 리 실	4	-	-	4(0.3)
공 정 거 래 위 원 회	6	-	1	7(0.6)
금 융 위 원 회	23	-	-	23(1.8)
국 민 권 의 위 원 회	3	-	1	4(0.3)
법 제 처	4	-	1	5(0.4)
국 가 보 훈 처	25	-	3	28(2.2)

기 관 명	법령	계획	사업(*)	계
국 세 청	-	-	1	1(0.1)
관 세 청	-	-	1	1(0.1)
조 달 청	-	-	1	1(0.1)
통 계 청	3	-	2	5(0.4)
병 무 청	4	-	-	4(0.3)
방 위 사 업 청	-	1	-	1(0.1)
경 찰 청	21	-	2	23(1.8)
소 방 방 재 청	47	-	3	50(3.9)
문 화 재 청	10	-	3	13(1.0)
농 촌 진 흥 청	-	-	5	5(0.4)
산 림 청	16	2	3	21(1.7)
중 소 기 업 청	11	-	5	16(1.3)
특 허 청	19	-	1	20(1.6)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	1	1	2(0.2)
기 상 청	4	-	2	6(0.5)
해 양 경 찰 청	4	-	1	5(0.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4	4(0.3)
(국 가 인 권 위 원 회) ^{a)}	1	-	-	1(0.1)

주 : a)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에 의무적용기관이 아니었음

나. 검토의견 통보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계획, 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하였다. 첫째, 법령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결과를 보면, 전체 과제 수 1,099개 중에서 '원안동의' 991개(90.2%), '개선 의견' 47개(4.3%), '기타' 61개(5.5%)로 나타났다.

표 II-2 중앙행정기관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법령)

(단위: 개(%))

기 관 명	과제수	원안 동의	개선의견	기타 ^{a)}
전 체	1,099(100.0)	991(90.2)	47(4.3)	61(5.5)
기 획 재 정 부	69(100.0)	65(94.2)	0(0.0)	4(5.8)
교 육 과 학 기 술 부	105(100.0)	90(85.7)	3(2.9)	12(11.4)
외 교 통 상 부	17(100.0)	15(88.2)	1(5.9)	1(5.9)
통 일 부	5(100.0)	4(80.0)	0(0.0)	1(20.0)
법 무 부 (검 찰 청)	39(100.0)	34(87.2)	2(5.1)	3(7.7)
국 방 부	29(100.0)	21(72.4)	2(6.9)	6(20.7)
행 정 안 전 부	78(100.0)	71(91.0)	1(1.3)	6(7.7)
문 화 체 육 관 광 부	49(100.0)	37(75.5)	7(14.3)	5(10.2)
농 립 수 산 식 품 부	85(100.0)	80(94.1)	5(5.9)	0(0.0)
지 식 경 제 부	44(100.0)	39(88.6)	0(0.0)	5(11.4)
보 건 복 지 부	69(100.0)	57(82.6)	11(15.9)	1(1.4)
환 경 부	68(100.0)	64(94.1)	3(4.4)	1(1.5)
고 용 노 동 부	37(100.0)	32(86.5)	5(13.5)	0(0.0)
여 성 가 족 부	17(100.0)	16(94.1)	1(5.9)	0(0.0)
국 토 해 양 부	158(100.0)	154(97.5)	0(0.0)	4(2.5)
방 송 통 신 위 원 회	17(100.0)	17(100.0)	0(0.0)	0(0.0)
국 가 과 학 기 술 위 원 회	5(100.0)	4(80.0)	1(20.0)	0(0.0)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3(100.0)	3(100.0)	0(0.0)	0(0.0)
국 무 총 리 실	4(100.0)	4(100.0)	0(0.0)	0(0.0)
공 정 거 래 위 원 회	6(100.0)	6(100.0)	0(0.0)	0(0.0)
금 융 위 원 회	23(100.0)	22(95.7)	1(4.3)	0(0.0)
국 민 권 의 위 원 회	3(100.0)	2(66.7)	0(0.0)	1(33.3)
법 제 처	4(100.0)	3(75.0)	0(0.0)	1(25.0)
국 가 보 훈 처	25(100.0)	24(96.0)	1(4.0)	0(0.0)
국 세 청	-	-	-	-
관 세 청	-	-	-	-
조 달 청	-	-	-	-

기 관 명	과제수	원안 동의	개선의견	기타 ^{a)}
통 계 청	3(100.0)	1(33.3)	2(66.7)	0(0.0)
병 무 청	4(100.0)	4(100.0)	0(0.0)	0(0.0)
방 위 사 업 청	-	-	-	-
경 찰 청	21(100.0)	17(81.0)	1(4.8)	3(14.3)
소 방 방 재 청	47(100.0)	43(91.5)	0(0.0)	4(8.5)
문 화 재 청	10(100.0)	10(100.0)	0(0.0)	0(0.0)
농 촌 진 흥 청	-	-	-	-
산 림 청	16(100.0)	15(93.8)	0(0.0)	1(6.3)
중 소 기 업 청	11(100.0)	10(90.9)	0(0.0)	1(9.1)
특 허 청	19(100.0)	18(94.7)	0(0.0)	1(5.3)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	-	-	-
기 상 청	4(100.0)	4(100.0)	0(0.0)	0(0.0)
해 양 경 찰 청	4(100.0)	4(100.0)	0(0.0)	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
(국 가 인 권 위 원 회)b)	1(100.0)	1(100.0)	0(0.0)	0(0.0)

주 1 : a)는 분석평가 제외 (분석평가 제외대상 법령 등) 또는 중단된 경우(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중단된 경우)

주 2: b)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에 의무적용기관이 아니었음

둘째, 여성가족부 장관이 통보한 중앙행정기관의 계획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결과를 보면, 전체 과제 수 27개 중에서 ‘원안동의’ 24개(88.9%), ‘개선의견’ 2개(7.4%), ‘기타’ 1개(3.7%)였다.

표 II - 3 중앙행정기관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계획)

(단위: 개(%))

기 관 명	과제수	원안 동의	개선 의견	기타 ^{a)}
전 체	27(100.0)	24(88.9)	2(7.4)	1(3.7)
기 획 재 정 부	-	-	-	-
교 육 과 학 기 술 부	1(100.0)	1(100.0)	0(0.0)	0(0.0)
외 교 통 상 부	-	-	-	-
통 일 부	-	-	-	-
법 무 부 (검 찰 청)	-	-	-	-
국 방 부	-	-	-	-
행 정 안 전 부	2(100.0)	1(50.0)	1(50.0)	0(0.0)
문 화 체 육 관 광 부	1(100.0)	0(0.0)	1(100.0)	0(0.0)
농 립 수 산 식 품 부	-	-	-	-
지 식 경 제 부	1(100.0)	1(100.0)	0(0.0)	0(0.0)
보 건 복 지 부	1(100.0)	0(0.0)	0(0.0)	1(100.0)
환 경 부	5(100.0)	5(100.0)	0(0.0)	0(0.0)
고 용 노 동 부	2(100.0)	2(100.0)	0(0.0)	0(0.0)
여 성 가 족 부	3(100.0)	3(100.0)	0(0.0)	0(0.0)
국 토 해 양 부	5(100.0)	5(100.0)	0(0.0)	0(0.0)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	-	-
국 가 과 학 기 술 위 원 회	-	-	-	-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2(100.0)	2(100.0)	0(0.0)	0(0.0)
국 무 총 리 실	-	-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	-	-	-
금 융 위 원 회	-	-	-	-
국 민 권 의 위 원 회	-	-	-	-
법 제 처	-	-	-	-
국 가 보 훈 처	-	-	-	-
국 세 청	-	-	-	-
관 세 청	-	-	-	-
조 달 청	-	-	-	-

기 관 명	과제수	원안 동의	개선의견	기타 ^{a)}
통 계 청	-	-	-	-
병 무 청	-	-	-	-
방 위 사 업 청	1(100.0)	1(100.0)	0(0.0)	0(0.0)
경 찰 청	-	-	-	-
소 방 방 재 청	-	-	-	-
문 화 재 청	-	-	-	-
농 촌 진 흥 청	-	-	-	-
산 림 청	2(100.0)	2(100.0)	0(0.0)	0(0.0)
중 소 기 업 청	-	-	-	-
특 허 청	-	-	-	-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1(100.0)	1(100.0)	0(0.0)	0(0.0)
기 상 청	-	-	-	-
해 양 경 찰 청	-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
(국 가 인 권 위 원 회) ^{b)}	-	-	-	-

주 1 : a)는 분석평가 제외 또는 중단된 경우

주 2 : b)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에 의무적용기관이 아니었음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결과를 보면, 전체 과제 수 144개 중에서 ‘원안동의’ 89개(61.8%), ‘개선의견’ 55개(38.2%)였다.

표 II -4 중앙행정기관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사업)

(단위: 개(%))

기 관 명	과제수	원안 동의	개선의견	기타 ^{a)}
전 체	144(100.0)	89(61.8)	55(38.2)	0(0.0)
기 획 재 정 부	1(100.0)	1(100.0)	0(0.0)	0(0.0)
교 육 과 학 기 술 부	4(100.0)	3(75.0)	1(25.0)	0(0.0)
외 교 통 상 부	5(100.0)	0(0.0)	5(100.0)	0(0.0)
통 일 부	1(100.0)	0(0.0)	1(100.0)	0(0.0)
법 무 부 (검 찰 청)	14(100.0)	0(0.0)	14(100.0)	0(0.0)
국 방 부	4(100.0)	2(50.0)	2(50.0)	0(0.0)
행 정 안 전 부	5(100.0)	2(40.0)	3(60.0)	0(0.0)
문 화 체 육 관 광 부	8(100.0)	3(37.5)	5(62.5)	0(0.0)
농 립 수 산 식 품 부	7(100.0)	7(100.0)	0(0.0)	0(0.0)
지 식 경 제 부	3(100.0)	3(100.0)	0(0.0)	0(0.0)
보 건 복 지 부	4(100.0)	1(25.0)	3(75.0)	0(0.0)
환 경 부	7(100.0)	4(57.1)	3(42.9)	0(0.0)
고 용 노 동 부	9(100.0)	6(66.7)	3(33.3)	0(0.0)
여 성 가 족 부	24(100.0)	20(83.3)	4(16.7)	0(0.0)
국 토 해 양 부	3(100.0)	2(66.7)	1(33.3)	0(0.0)
방 송 통 신 위 원 회	3(100.0)	3(100.0)	0(0.0)	0(0.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0(0.0)	0(0.0)	0(0.0)	0(0.0)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1(100.0)	1(100.0)	0(0.0)	0(0.0)
국 무 총 리 실	0(0.0)	0(0.0)	0(0.0)	0(0.0)
공 정 거 래 위 원 회	1(100.0)	1(100.0)	0(0.0)	0(0.0)
금 융 위 원 회	0(0.0)	0(0.0)	0(0.0)	0(0.0)
국 민 권 의 위 원 회	1(100.0)	0(0.0)	1(100.0)	0(0.0)
법 제 처	1(100.0)	1(100.0)	0(0.0)	0(0.0)
국 가 보 훈 처	3(100.0)	2(66.7)	1(33.3)	0(0.0)
국 세 청	1(100.0)	1(100.0)	0(0.0)	0(0.0)
관 세 청	1(100.0)	1(100.0)	0(0.0)	0(0.0)
조 달 청	1(100.0)	1(100.0)	0(0.0)	0(0.0)

기 관 명	과제수	원안 동의	개선의견	기타 ^{a)}
통 계 청	2(100.0)	0(0.0)	2(100.0)	0(0.0)
병 무 청	0(0.0)	0(0.0)	0(0.0)	0(0.0)
방 위 사 업 청	0(0.0)	0(0.0)	0(0.0)	0(0.0)
경 찰 청	2(100.0)	0(0.0)	2(100.0)	0(0.0)
소 방 방 재 청	3(100.0)	2(66.7)	1(33.3)	0(0.0)
문 화 재 청	3(100.0)	3(100.0)	0(0.0)	0(0.0)
농 촌 진 흥 청	5(100.0)	5(100.0)	0(0.0)	0(0.0)
산 림 청	3(100.0)	2(66.7)	1(33.3)	0(0.0)
중 소 기 업 청	5(100.0)	5(100.0)	0(0.0)	0(0.0)
특 허 청	1(100.0)	1(100.0)	0(0.0)	0(0.0)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1(100.0)	1(100.0)	0(0.0)	0(0.0)
기 상 청	2(100.0)	1(50.0)	1(50.0)	0(0.0)
해 양 경 찰 청	1(100.0)	0(0.0)	1(100.0)	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100.0)	4(100.0)	0(0.0)	0(0.0)

주 1 : a)는 분석평가 제외 또는 중단된 경우

다. 개선의견 수용률

검토의견이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 수용한 정도를 보면 <표 II-5>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령 89.4%, 계획 100%, 사업 92.7%로 계획 및 사업 개선의견 수용률은 높은 반면 법령 개선의견 수용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를 다시 중앙행정기관별로 보면, 법령 수용률은 외교통상부,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통계청, 경찰청이 100%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계획 수용률은 100%로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선의견에 대해 모두 수용하였다. 사업 수용률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검찰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통계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이 모두 100% 수용하였다.

표 II -5 중앙행정기관별 개선의견 수용률

(단위: 개(%))

구 분	법령		계획		사업	
	개선의견	수용률	개선의견	수용률	개선의견	수용률
전 체	47(100.0)	42(89.4)	2(100.0)	2(100.0)	55(100.0)	51(92.7)
기 획 재 정 부	-	-	-	-		
교 육 과 학 기 술 부	3(100.0)	2(66.7)	-	-	1(100.0)	1(100.0)
외 교 통 상 부	1(100.0)	1(100.0)	-	-	5(100.0)	5(100.0)
통 일 부	-	-	-	-	1(100.0)	1(100.0)
법 무 부 (검찰청)	2(100.0)	1(50.0)	-	-	14(100.0)	14(100.0)
국 방 부	2(100.0)	2(100.0)	-	-	2(100.0)	2(100.0)
행 정 안 전 부	1(100.0)	1(100.0)	1(100.0)	1(100.0)	3(100.0)	1(33.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7(100.0)	7(100.0)	1(100.0)	1(100.0)	5(100.0)	4(80.0)
농 립 수 산 식 품 부	5(100.0)	4(80.0)	-	-		
지 식 경 제 부	-	-	-	-		
보 건 복 지 부	11(100.0)	9(81.8)	-	-	3(100.0)	3(100.0)
환 경 부	3(100.0)	3(100.0)	-	-	3(100.0)	3(100.0)
고 용 노 동 부	5(100.0)	5(100.0)	-	-	3(100.0)	3(100.0)
여 성 가 족 부	1(100.0)	1(100.0)	-	-	4(100.0)	4(100.0)
국 토 해 양 부	-	-	-	-	1(100.0)	1(100.0)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	-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100.0)	1(100.0)	-	-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	-	-	-		
국 무 총 리 실	-	-	-	-		
공 정 거 래 위 원 회	-	-	-	-		
금 융 위 원 회	1(100.0)	1(100.0)	-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	-	-	1(100.0)	1(100.0)
법 제 처	-	-	-	-		
국 가 보 훈 처	1(100.0)	1(100.0)	-	-	1(100.0)	1(100.0)
국 세 청	-	-	-	-		

구 분	법령		계획		사업	
	개선의견	수용률	개선의견	수용률	개선의견	수용률
관 세 청	-	-	-	-		
조 달 청	-	-	-	-		
통 계 청	2(100.0)	2(100.0)	-	-	2(100.0)	1(50.0)
병 무 청	-	-	-	-		
방 위 사 업 청	-	-	-	-		
경 찰 청	1(100.0)	1(100.0)	-	-	2(100.0)	2(100.0)
소 방 방 재 청	-	-	-	-	1(100.0)	1(100.0)
문 화 재 청	-	-	-	-		
농 촌 진 흥 청	-	-	-	-		
산 림 청	-	-	-	-	1(100.0)	1(100.0)
중 소 기 업 청	-	-	-	-		
특 허 청	-	-	-	-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	-	-	-		
기 상 청	-	-	-	-	1(100.0)	1(100.0)
해 양 경 찰 청	-	-	-	-	1(100.0)	1(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	-	-	-

주 : 수용률(%)=(수용+일부 수용)/ 개선의견×100

라. 반영결과 수용 내용

중앙행정기관이 2012년에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반영 개선사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선 반영내용은 성별특성 반영으로서 59.5%를 차지했다. 이 중 많은 부분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성별 균형 및 성별분리통계의 작성에 관한 것들이었다.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성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의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의하면 각 부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상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4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해당 법령에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한편, 성별분리통계의 작성은 성인지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임에 따라 제·개정되는 법령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해당 법령에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인지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 밖에 다양한 분야, 다양한 내용의 법안 마련 시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되었던 법령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하여 개선되었다.

표 II-6 중앙행정기관 반영결과 수용 내용(법령)

(단위: 개(%))

구분	계	성별구분조항	성별특성반영
법령	42 (100.0)	17 (40.5)	25 (59.5)

주 1 : 복수응답

둘째, 계획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지침과 정책수행 방식의 개선, 성별통계 생산·활용,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 조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활성화 등이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은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추진 시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의무화하고 여성의 적극적 역할을 자원봉사 홍보 방안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제3차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성별 비율을 고려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출판 산업 여성인력 수급 및 전문가 인력풀 확대 방안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별 성별분리 통계 생산 내용을 계획안에 반영하였다.

표 II - 7 중앙행정기관 '개선의견' 통보에 따른 반영 결과 내용(계획)

(단위: 의견수(%))

구분	전체	법령·지침 성인지적 개선	정책수행 방식 개선	성인지적 예산 편성	성별 통계 생산·활용	정책결정 과정 평등 참여	정책 수혜 평등성	성별 적극적 조치	정책 담당자 성인지 교육	기타
법령	8 (100.0)	1 (12.5)	2 (25.0)	0 (0.0)	2 (25.0)	1 (12.5)	0 (0.0)	1 (12.5)	0 (0.0)	1 (12.5)

주 : 복수응답

셋째, 사업 개선 반영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정책수행방식의 개선(35.8%)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성별통계 생산·활용(17.5%)이었다. 그 외 정책담당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14.2%, 성별 적극적 조치 10.8%,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참여 9.2%, 법령·지침에 대한 성인지적 개선 9.2% 등의 정책개선 의견을 반영하였다.

표 II - 8 중앙행정기관 개선의견 반영결과 수용 내용(사업)

(단위: 의견수(%))

구분	전체	법령·지침 성인지적 개선	정책수행방 식 개선	성인지적 예산 편성	성별 통계 생산·활용	정책결정 과정 평등 참여	정책 수혜 평등성	성별 적극적 조치	정책 담당자 성인지 교육	기타
법령	120 (100.0)	11 (9.2)	43 (35.8)	2 (1.7)	21 (17.5)	11 (9.2)	1 (0.8)	13 (10.8)	17 (14.2)	1 (0.8)

주 : 복수응답

2. 광역자치단체

가. 과제 추진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17개 기관이 전체 1,845개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에서 법령은 873개(47.3%), 계획은 23개(1.2%), 사업은 949개(51.4%)를 추진하였다. 추진 과제수가 많은 기관별로 보면, 서울특별시가 190개(1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181개(9.8%), 제주특별자치도가 172개(9.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다시 대상정책별로 보면, 법령 분석평가 추진실적은 전체 873개였는데, 서울특별시가 126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92개, 부산광역시 66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전체 23개를 추진하였는데, 광주광역시가 5개로 가장 많이 추진하였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각 4개를 추진하였다.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전체 949개를 추진하였는데, 경기도가 126개로 가장 많이 추진하였고,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106개, 대전광역시가 92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9 광역자치단체별 과제 추진 결과

(단위: 개(%))

기 관 명	법령	계획	사업(*)	계
전 체	873 (47.3)	23 (1.2)	949 (51.4)	1,845 (100.0)
서울특별시	126	2	62	190(10.3)
부산광역시	66	4	71	141(7.6)
대구광역시	26	1	61	88(4.8)
인천광역시	55	-	46	101(5.5)
광주광역시	61	5	54	120(6.5)

기 관 명	법령	계획	사업(*)	계
대 전 광 역 시	59	4	92	155(8.4)
울 산 광 역 시	49	-	24	73(4.0)
경 기 도	55	-	126	181(9.8)
강 원 도	32	2	14	48(2.6)
충 청 북 도	20	-	54	74(4.0)
충 청 남 도	40	-	56	96(5.2)
전 라 북 도	34	-	43	77(4.2)
전 라 남 도	47	-	37	84(4.6)
경 상 북 도	6	-	42	48(2.6)
경 상 남 도	43	1	61	105(5.7)
제 주 특 별 자 치 도	62	4	106	172(9.3)
세 종 특 별 자 치 시	92	-	-	92(5.0)

나. 검토의견 통보 결과

2012년에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한 법령, 계획, 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법령 및 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는 광역자치단체의 분석평가책임관이 하였으며, 계획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하였다. 첫째, 법령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결과를 보면, 전체 과제 수 873개 중에서 '원안동의' 550개(63.0%), '개선의견' 160개(18.3%), '기타 16개(18.5%)로 99.8%가 통보되었다.

표 II-10 광역자치단체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법령)

(단위: 개(%))

구 분	과제수	원안 동의	개선의견	기타 ^{a)}	알 수 없음 ^{b)}
전 체	873(100.0)	550(63.0)	160(18.3)	161(18.5)	2(0.2)
서울특별시	126(100.0)	86(68.3)	26(20.6)	13(10.3)	1(0.8)
부산광역시	66(100.0)	50(75.8)	15(22.7)	1(1.5)	0(0.0)
대구광역시	26(100.0)	16(61.5)	6(23.1)	4(15.4)	0(0.0)
인천광역시	55(100.0)	29(52.7)	7(12.7)	19(34.5)	0(0.0)
광주광역시	61(100.0)	40(65.6)	4(6.6)	17(27.9)	0(0.0)
대전광역시	59(100.0)	51(86.4)	0(0.0)	8(13.6)	0(0.0)
울산광역시	49(100.0)	40(81.6)	4(8.2)	5(10.2)	0(0.0)
경기도	55(100.0)	23(41.8)	14(25.5)	18(32.7)	0(0.0)
강원도	32(100.0)	26(81.3)	0(0.0)	6(18.8)	0(0.0)
충청북도	20(100.0)	15(75.0)	1(5.0)	4(20.0)	0(0.0)
충청남도	40(100.0)	19(47.5)	16(40.0)	5(12.5)	0(0.0)
전라북도	34(100.0)	28(82.4)	0(0.0)	6(17.6)	0(0.0)
전라남도	47(100.0)	23(48.9)	3(6.4)	21(44.7)	0(0.0)
경상북도	6(100.0)	4(66.7)	2(33.3)	0(0.0)	0(0.0)
경상남도	43(100.0)	14(32.6)	16(37.2)	13(30.2)	0(0.0)
제주특별자치도	62(100.0)	50(80.6)	6(9.7)	5(8.1)	1(1.6)
세종특별자치시	92(100.0)	36(39.1)	40(43.5)	16(17.4)	0(0.0)

주 1 : a)는 분석평가 제외 또는 중단된 경우

주 2 : b)는 검토의견 통보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원안동의인지 개선의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둘째, 여성가족부 장관이 통보한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결과를 보면, 전체 과제 수 23개 중에서 ‘원안동의’ 15개(65.2%), ‘개선의견’ 7개(30.4%), ‘기타’ 1개(4.3%)로 100% 통보가 이루어졌다.

표 II-11 광역자치단체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계획)

(단위: 개(%))

구 분	과제수	원안 동의	개선의견	기타 ^{a)}
전 체	23(100.0)	15(65.2)	7(30.4)	1(4.3)
서울특별시	2(100.0)	1(50.0)	0(0.0)	1(50.0)
부산광역시	4(100.0)	3(75.0)	1(25.0)	0(0.0)
대구광역시	1(100.0)	0(0.0)	1(100.0)	0(0.0)
인천광역시	-	-	-	-
광주광역시	5(100.0)	5(100.0)	0(0.0)	0(0.0)
대전광역시	4(100.0)	2(50.0)	2(50.0)	0(0.0)
울산광역시	-	-	-	-
경기도	-	-	-	-
강원도	2(100.0)	0(0.0)	2(100.0)	0(0.0)
충청북도	-	-	-	-
충청남도	-	-	-	-
전라북도	-	-	-	-
전라남도	-	-	-	-
경상북도	-	-	-	-
경상남도	1(100.0)	1(100.0)	0(0.0)	0(0.0)
제주특별자치도	4(100.0)	3(75.0)	1(25.0)	0(0.0)

주: a)는 분석평가 제외 또는 중단된 경우

셋째, 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결과를 보면, 전체 과제 수 949개 중에서 ‘원안동의’ 446개(47.0%), ‘개선의견’ 404개(42.6%), ‘기타’ 2개(0.2%)로 89.8% 통보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법령 및 계획 검토의견 통보 비율보다는 낮지만 대체로 양호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법령, 계획, 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결과를 살펴 본 바, 법령 및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개선이 요구된다.

표 II-12 광역자치단체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사업)

(단위: 개(%))

구 분	과제수	원안 동의	개선의견	기타 ^{a)}	알 수 없음 ^{b)}
전 체	949(100.0)	446(47.0)	404(42.6)	2(0.2)	97(10.2)
서울특별시	62(100.0)	41(66.1)	21(33.9)	0(0.0)	0(0.0)
부산광역시	71(100.0)	46(64.8)	25(35.2)	0(0.0)	0(0.0)
대구광역시	61(100.0)	5(8.2)	56(91.8)	0(0.0)	0(0.0)
인천광역시	46(100.0)	1(2.2)	45(97.8)	0(0.0)	0(0.0)
광주광역시	54(100.0)	48(88.9)	6(11.1)	0(0.0)	0(0.0)
대전광역시	92(100.0)	92(100.0)	0(0.0)	0(0.0)	0(0.0)
울산광역시	24(100.0)	20(83.3)	4(16.7)	0(0.0)	0(0.0)
경기도	126(100.0)	37(29.4)	88(69.8)	1(0.8)	0(0.0)
강원도	14(100.0)	14(100.0)	0(0.0)	0(0.0)	0(0.0)
충청북도	54(100.0)	0(0.0)	0(0.0)	0(0.0)	54(10.0)
충청남도	56(100.0)	11(19.6)	44(78.6)	1(1.8)	0(0.0)
전라북도	43(100.0)	32(74.4)	10(23.3)	0(0.0)	1(2.3)
전라남도	37(100.0)	37(100.0)	0(0.0)	0(0.0)	0(0.0)
경상북도	42(100.0)	0(0.0)	0(0.0)	0(0.0)	42(100.0)
경상남도	61(100.0)	61(100.0)	0(0.0)	0(0.0)	0(0.0)
제주특별자치도	106(100.0)	1(0.9)	105(99.1)	0(0.0)	0(0.0)

주 1 : a)는 분석평가 제외 또는 중단된 경우

주 2 : b)는 검토의견 통보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원안동의인지 개선의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다. 개선의견 수용률

검토의견 통보 결과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경우에 광역자치단체가 수용한 정도를 보면 <표 Ⅱ-13>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령 52.5%, 계획 85.7%, 사업 55.0%로 계획의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이를 다시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법령 수용률은 세종특별자치시가 8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75.0%, 경기도 64.3% 순으로 높았다. 계획 수용률은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가 모두 100% 수용하였다. 사업 수용률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가 100%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가 95.6%, 경기도가 86.4%의 수용률을 보여 주었다.

표 Ⅱ-13 광역자치단체별 개선의견 수용률

(단위: 개(%))

구 분	법령		계획		사업	
	개선의견	수용률	개선의견	수용률	개선의견	수용률
전 체	160(100.0)	84(52.5)	7(100.0)	6(85.7)	404(100.0)	222(55.0)
서울특별시	26(100.0)	10(38.5)	-	-	21(100.0)	14(66.7)
부산광역시	15(100.0)	7(46.7)	1(100.0)	1(100.0)	25(100.0)	20(80.0)
대구광역시	6(100.0)	3(50.0)	1(100.0)	1(100.0)	56(100.0)	36(64.3)
인천광역시	7(100.0)	1(14.3)	-	-	45(100.0)	43(95.6)
광주광역시	4(100.0)	2(50.0)	-	-	6(100.0)	6(100.0)
대전광역시	-	-	2(100.0)	2(100.0)	-	-
울산광역시	4(100.0)	3(75.0)	-	-	4(100.0)	4(100.0)
경기도	14(100.0)	9(64.3)	-	-	88(100.0)	76(86.4)
강원도	-	-	2(100.0)	2(100.0)	-	-
충청북도	1(100.0)	0(0.0)	-	-	-	-
충청남도	16(100.0)	5(31.3)	-	-	44(100.0)	17(38.6)
전라북도	-	-	-	-	10(100.0)	6(60.0)
전라남도	3(100.0)	0(0.0)	-	-	-	-
경상북도	2(100.0)	1(50.0)	-	-	-	-
경상남도	16(100.0)	8(50.0)	-	-	-	-
제주특별자치도	6(100.0)	0(0.0)	1(100.0)	0(0.0)	105(100.0)	0(0.0)
세종특별자치시	40(100.0)	35(87.5)	-	-	-	-

주 : 수용률(%)=(수용+일부 수용)/검토의견 개선의견×100

라. 반영결과 수용 내용

광역자치단체가 2012년에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반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의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 결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성별특성반영으로서 71.4%를 차지했다.

표 II-14 광역자치단체 반영결과 수용 내용(법령)

(단위: 건(%))

구분	전체	성별구분조항	성별특성반영	알 수 없음 ^{a)}
법령	105 (100.0)	9 (8.6)	75 (71.4)	21 (20.0)

주 1 : a)는 반영결과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주 2 : 복수응답

둘째, 광역지자체 소관 계획에도 정책수행방식의 개선, 성별통계 생산,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활성화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과 관련된 계획은 주거지 안전 개선 및 공원 등의 안전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관련 성별통계, 여성의 이동여건을 고려한 보도 개선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에는 고위 관리직의 성인지 정책 과정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성별통계 구축 등이 반영되었다.

표 II-15 광역자치단체 '개선의견' 통보에 따른 반영 결과 내용(계획)

(단위: 의견수(%))

구분	전체	법령·지침 성인지적 개선	정책수행 방식 개선	성인지적 예산 편성	성별 통계 생산·활용	정책결정 과정 평등 참여	정책 수혜 평등성	성별 적극적 조치	정책 담당자 성인지 교육	기타
계획	13 (100.0)	0 (0.0)	6 (46.2)	0 (0.0)	2 (15.4)	1 (7.7)	1 (7.7)	1 (7.7)	2 (15.4)	0 (0.0)

주 : 복수응답

셋째,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개선 사례에서는 정책수행방식의 개선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성별통계 생산·활용이 20%, 성인지적 예산 편성이 9.3%의 순이었다.

표 II - 16 광역자치단체 개선의견 반영결과 수용 내용(사업)

(단위: 의견수(%))

구분	전체	법령·지침 성인지적 개선	정책수행 방식 개선	성인지적 예산 편성	성별 통계 생산·활용	정책결정 과정 평등 참여	정책 수혜 평등성	성별 적극적 조치	정책 담당자 성인지 교육	기타
사업	355 (100.0)	15 (4.2)	152 (42.8)	33 (9.3)	71 (20.0)	10 (2.8)	17 (4.8)	19 (5.4)	9 (2.5)	29 (8.2)

주 : 복수응답

3. 기초자치단체

가. 과제 추진 결과

기초자치단체별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를 보면 <표 II-17>와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227개 기초자치단체가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전체 11,358개 추진하였다. 이 중에서 법령은 6,234개(54.9%), 계획은 37개(0.3%), 사업은 5,087개(44.8%)를 추진하였다. 대체로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은 지역이 과제도 많이 추진한 경향이 있다. 법령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1,246개로 가장 많이 추진하였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가 779개,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는 567개 순으로 많이 추진하였다. 계획은 전체 37개 중에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19개로 가장 많이 추진하였고, 다음으로 충청남도 5개, 전라북도 4개 순으로 많이 추진하였다. 사업은 전체 5,087개 중에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813개로 가장 많이 추진하였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가 535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가 499개로 많이 추진하였다.

표 II-17 기초자치단체별 과제 추진 결과

(단위: 개, %)

기관명	기초 지자체 수	법령	계획	사업	계
전 체	227	6,234 (54.9)	37 (0.3)	5,087 (44.8)	11,358 (100.0)
서울특별시	25	779	-	535	1,314(11.6)
부산광역시	16	306	-	272	578(5.1)
대구광역시	8	127	-	139	266(2.3)
인천광역시	10	317	1	438	756(6.7)
광주광역시	5	114	-	122	236(2.1)
대전광역시	5	114	-	271	385(3.4)
울산광역시	5	58	1	107	166(1.5)
경기도	31	1,246	19	813	2,078(18.3)
강원도	18	477	2	267	746(6.6)
충청북도	12	289	2	255	546(4.8)
충청남도	15	567	5	426	998(8.8)
전라북도	14	416	4	295	715(6.3)
전라남도	22	495	1	275	771(6.8)
경상북도	23	435	-	499	934(8.2)
경상남도	18	494	2	373	869(7.7)

나. 검토의견 통보 결과

2012년에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한 법령, 계획, 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결과를 살펴보겠다. 기초자치단체의 법령, 계획, 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는 기초자치단체의 분석평가책임관이 하였다. 첫째, 법령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결과를 보면, 전체 과제 수 6,234개 중에서 ‘원안동의’ 3,765개(60.4%), ‘개선의견’ 730개(11.7%), ‘기타’ 1,473개(23.6%)로 95.7%가 통보되었다. 한편, 검토의견 통보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원안동의인지 개선의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266개(4.3%)로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

표 II-18 기초자치단체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법령)

(단위: 개(%))

기관명	기초 지자체 수	과제수	원안 동의	개선의견	기타 ^{a)}	알 수 없음 ^{b)}
전 체	227	6,234(100.0)	3,765(60.4)	730(11.7)	1,473(23.6)	266(4.3)
서울특별시	25	779(100.0)	515(66.1)	47(6.0)	198(25.4)	19(2.4)
부산광역시	16	306(100.0)	180(58.8)	39(12.7)	79(25.8)	8(2.6)
대구광역시	8	127(100.0)	34(26.8)	11(8.7)	79(62.2)	3(2.4)
인천광역시	10	317(100.0)	239(75.4)	28(8.8)	50(15.8)	0(0.0)
광주광역시	5	114(100.0)	52(45.6)	14(12.3)	47(41.2)	1(0.9)
대전광역시	5	114(100.0)	75(65.8)	6(5.3)	33(28.9)	0(0.0)
울산광역시	5	58(100.0)	17(29.3)	1(1.7)	6(10.3)	34(58.6)
경기도	31	1,246(100.0)	808(64.8)	210(16.9)	180(14.4)	48(3.9)
강원도	18	477(100.0)	271(56.8)	60(12.6)	84(17.6)	62(13.0)
충청북도	12	289(100.0)	202(69.9)	19(6.6)	58(20.1)	10(3.5)
충청남도	15	567(100.0)	366(64.6)	92(16.2)	108(19.0)	1(0.2)
전라북도	14	416(100.0)	298(71.6)	12(2.9)	106(25.5)	0(0.0)
전라남도	22	495(100.0)	353(71.3)	14(2.8)	128(25.9)	0(0.0)
경상북도	23	435(100.0)	129(29.7)	76(17.5)	229(52.6)	1(0.2)
경상남도	18	494(100.0)	226(45.7)	101(20.4)	88(17.8)	79(16.0)

주 1 : a)는 분석평가 제외 또는 중단된 경우

주 2 : b)는 검토의견 통보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원안동의인지 개선의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둘째,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서의 검토의견 통보 결과를 보면, 전체 과제 수 37개 중에서 ‘원안동의’ 8개(21.6%), ‘개선의견’ 13개(35.1%), ‘기타’ 9개(24.3%)로 81.1% 통보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중앙행정기관 계획 검토의견 통보율 96.3%, 광역자치단체의 계획 검토의견 통보율 100%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 기초자치단체 분석평가 책임관의 검토의견 통보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표 Ⅱ-19 기초자치단체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계획)

(단위: 개(%))

기 관 명	기초 지자체 수	과제수	원안 동의	개선의견	기타 ^{a)}	알 수 없음 ^{b)}
전 체	227	37(100.0)	8(21.6)	13(35.1)	9(24.3)	7(18.9)
서울특별시	25	-	-	-	-	-
부산광역시	16	-	-	-	-	-
대구광역시	8	-	-	-	-	-
인천광역시	10	1(100.0)	0(0.0)	1(100.0)	0(0.0)	0(0.0)
광주광역시	5	-	-	-	-	-
대전광역시	5	-	-	-	-	-
울산광역시	5	1(100.0)	0(0.0)	0(0.0)	0(0.0)	1(100.0)
경 기 도	31	19(100.0)	3(15.8)	8(42.1)	5(26.3)	3(15.8)
강 원 도	18	2(100.0)	0(0.0)	0(0.0)	1(50.0)	1(50.0)
충 청 북 도	12	2(100.0)	0(0.0)	1(50.0)	0(0.0)	1(50.0)
충 청 남 도	15	5(100.0)	1(20.0)	2(40.0)	1(20.0)	1(20.0)
전 라 북 도	14	4(100.0)	3(75.0)	0(0.0)	1(25.0)	0(0.0)
전 라 남 도	22	1(100.0)	0(0.0)	0(0.0)	1(100.0)	0(0.0)
경 상 북 도	23	-	-	-	-	-
경 상 남 도	18	2(100.0)	1(50.0)	1(50.0)	0(0.0)	0(0.0)

주 1 : a)는 분석평가 제외 또는 중단된 경우

주 2 : b)는 검토의견 통보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원안동의인지 개선의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셋째, 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결과를 보면(〈표 Ⅱ-20〉), 전체 과제 수 5,087개 중에서 ‘원안동의’ 2,235개(43.9%), ‘개선의견’ 1,877개(36.9%), ‘기타’ 92개(1.8%)로 82.6%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법령 검토의견 통보율 95.7%보다는 낮고, 계획 검토의견 통보 81.1%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법령, 계획, 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결과를 살펴 본 결과,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는 약 8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앞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표 II-20 기초자치단체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사업)

(단위: 개(%))

기 관 명	기초 지자체 수	과제수	원안 동의	개선의견	기타 ^{a)}	알 수 없음 ^{b)}
전 체	227	5,087(100.0)	2,235(43.9)	1,877(36.9)	92(1.8)	883(17.4)
서울특별시	25	535(100.0)	153(28.6)	171(32.0)	0(0.0)	211(39.4)
부산광역시	16	272(100.0)	74(27.2)	171(62.9)	0(0.0)	27(9.9)
대구광역시	8	139(100.0)	26(18.7)	113(81.3)	0(0.0)	0(0.0)
인천광역시	10	438(100.0)	26(5.9)	397(90.6)	1(0.2)	14(3.2)
광주광역시	5	122(100.0)	26(21.3)	96(78.7)	0(0.0)	0(0.0)
대전광역시	5	271(100.0)	214(79.0)	20(7.4)	0(0.0)	37(13.7)
울산광역시	5	107(100.0)	26(24.3)	34(31.8)	11(10.3)	36(33.6)
경 기 도	31	813(100.0)	457(56.2)	281(34.6)	13(1.6)	62(7.6)
강 원 도	18	267(100.0)	48(18.0)	48(18.0)	1(0.4)	170(63.7)
충 청 북 도	12	255(100.0)	164(64.3)	45(17.6)	21(8.2)	25(9.8)
충 청 남 도	15	426(100.0)	246(57.7)	62(14.6)	2(0.5)	116(27.2)
전 라 북 도	14	295(100.0)	247(83.7)	39(13.2)	9(3.1)	0(0.0)
전 라 남 도	22	275(100.0)	226(82.2)	23(8.4)	2(0.7)	24(8.7)
경 상 북 도	23	499(100.0)	144(28.9)	333(66.7)	1(0.2)	21(4.2)
경 상 남 도	18	373(100.0)	158(42.4)	44(11.8)	31(8.3)	140(37.5)

주 1 : a)는 분석평가 제외 또는 중단된 경우

주 2 : b)는 검토의견 통보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원안동의인지 개선의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다. 개선의견 수용률

검토의견 통보결과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경우에 기초자치단체가 수용한 정도를 보면 <표 II-2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령 47.0%, 계획 84.6%, 사업 80.8%로 계획 및 사업의 개선의견 수용률은 비교적 양호하고, 법령 개선의견 수용률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다시 광역단위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법령 수용률은 대전광역시 기초자치단체와 울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가 100%이며, 다음으로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가 83.3%, 인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가 78.6%로 높았다. 한편 계획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을 보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와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의 수용률이 100%로 높았다. 사업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은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가 1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와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광주광역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의 수용률이 90% 대로 양호하였다.

표 II-21 기초자치단체별 개선의견 수용률

(단위: 개(%))

구 분	기초 지자체 수	법령		계획		사업	
		개선의견	수용률	개선의견	수용률	개선의견	수용률
전 체	227	730(100.0)	343(47.0)	13(100.0)	11(84.6)	1,877(100.0)	1,517(80.8)
서울특별시	25	47(100.0)	23(48.9)	-	-	171(100.0)	160(93.6)
부산광역시	16	39(100.0)	5(12.8)	-	-	171(100.0)	163(95.3)
대구광역시	8	11(100.0)	3(27.3)	-	-	113(100.0)	103(91.2)
인천광역시	10	28(100.0)	22(78.6)	1(100.0)	0(0.0)	397(100.0)	263(66.2)
광주광역시	5	14(100.0)	3(21.4)	-	-	96(100.0)	87(90.6)
대전광역시	5	6(100.0)	6(100.0)	-	-	20(100.0)	7(35.0)
울산광역시	5	1(100.0)	1(100.0)	-	-	34(100.0)	10(29.4)
경 기 도	31	210(100.0)	122(58.1)	8(100.0)	8(100.0)	281(100.0)	258(91.8)
강 원 도	18	60(100.0)	12(20.0)	-	-	48(100.0)	15(31.3)
충 청 북 도	12	19(100.0)	2(10.5)	1(100.0)	1(100.0)	45(100.0)	42(93.3)
충 청 남 도	15	92(100.0)	52(56.5)	2(100.0)	1(50.0)	62(100.0)	48(77.4)
전 라 북 도	14	12(100.0)	10(83.3)	-	-	39(100.0)	37(94.9)
전 라 남 도	22	14(100.0)	8(57.1)	-	-	23(100.0)	23(100.0)
경 상 북 도	23	76(100.0)	38(50.0)	-	-	333(100.0)	257(77.2)
경 상 남 도	18	101(100.0)	36(35.6)	1(100.0)	1(100.0)	44(100.0)	44(100.0)

주 : 수용률(%)=(수용+일부 수용)/개선의견×100

라. 반영결과 수용 내용

기초자치단체가 2012년에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반영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 결과에서도 성별 특성반영이 61.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외 성별구분조항이 9.9%를 차지하였다.

표 II - 22 기초자치단체 반영결과 수용 내용(법령)

(단위: 개(%))

구분	전체	성별구분조항	성별특성반영	알 수 없음 ^{a)}
법령	497 (100.0)	49 (9.9)	307 (61.8)	141 (28.4)

주 1: a)는 반영결과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주 2: 복수응답

둘째, 기초지자체 소관 계획에서는 주로 정책수행방식 개선, 성별통계 생산·활용과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지방대중교통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은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사업 및 교통관련 시설 내 여성 화장실이나 수유실 설치, 보행도로 평탄화, 실태조사 결과의 성별분리통계 구축, 여성 운전자 채용확대 등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였다.

표 II - 23 기초자치단체 '개선의견' 통보에 따른 반영 결과 내용(계획)

(단위: 의견수(%))

구분	전체	법령·지침 성인지적 개선	정책수행 방식 개선	성인지적 예산 편성	성별 통계 생산·활용	정책결정 과정 평등 참여	정책 수혜 평등성	성별 적극적 조치	정책 담당자 성인지 교육	기타
계획	19 (100.0)	0 (0.0)	10 (52.6)	0 (0.0)	4 (21.1)	0 (0.0)	0 (0.0)	4 (21.1)	0 (0.0)	1 (5.3)

주: 복수응답

셋째,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개선 사례에서는 정책수행방식의 개선이 47.7%, 성별통계 생산·활용이 16.4%, 성인지적 예산 편성이 8.6%, 정책수혜의 평등성이 6.8% 순으로 반영되었다.

표 II-24 기초자치단체 개선의견 반영결과 수용 내용(사업)

(단위: 의견수(%))

구분	전체	법령·지침 성인지적 개선	정책수행 방식 개선	성인지적 예산 편성	성별 통계 생산·활용	정책결정 과정 평등 참여	정책 수혜 평등성	성별 적극적 조치	정책 담당자 성인지 교육	기타
사업	2,384 (100.0)	83 (3.5)	1,138 (47.7)	205 (8.6)	392 (16.4)	53 (2.2)	161 (6.8)	121 (5.1)	48 (2.0)	183 (7.7)

주 : 복수응답

4. 시·도 교육청

가. 과제 추진 결과

시·도 교육청의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16개 기관이 319개를 추진하였다. 이 중에서 법령은 258개(80.9%), 계획은 1개(0.3%), 사업은 60개(18.8%)를 추진하였다. 추진과제수가 많은 기관별로 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이 43개(13.5%)로 가장 높게 추진하였고, 다음으로 강원도교육청 41개(12.9%), 울산광역시교육청 36개(1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정책별로 보면, 법령 분석평가 추진실적이 전체 258개였는데, 강원도교육청이 40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 34개, 전라북도교육청 26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만 1개가 추진되었다.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전체 60개를 추진하였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이 20개로 가장 높게 추진하였고, 다음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12개, 광주광역시교육청 7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25 시·도 교육청별 과제 추진 결과

(단위: 개(%))

기 관 명	법령	계획	사업	계
전 체	258 (80.9)	1 (0.3)	60(15) (18.8)	319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9	-	-	9(2.8)
부산광역시교육청	8	-	-	8(2.5)
대구광역시교육청	34	-	-	34(10.7)
인천광역시교육청	12	-	2	14(4.4)
광주광역시교육청	17	-	7	24(7.5)
대전광역시교육청	23	-	20	43(13.5)
울산광역시교육청	23	1	12	36(11.3)
경기도교육청	6	-	-	6(1.9)
강원도교육청	40	-	1	41(12.9)
충청북도교육청	8	-	6	14(4.4)
충청남도교육청	1	-	-	1(0.3)
전라북도교육청	26	-	3	29(9.1)
전라남도교육청	9	-	-	9(2.8)
경상북도교육청	14	-	3	17(5.3)
경상남도교육청	20	-	-	20(6.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	-	6	14(4.4)

나. 검토의견 통보 결과

2012년도에 시·도 교육청이 추진한 법령, 계획, 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결과를 살펴보겠다. 여기서 검토의견 통보 주체는 시·도교육청 분석평가책임관이었다. 첫째, 법령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결과를 보면(〈표 II-26〉), 전체 과제 수 258개 중에서 ‘원안동의’ 139개(53.9%), ‘개선 의견’ 10개(3.9%), ‘기타’ 103개(39.9%)로 97.7%가 통보되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둘째, 계획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를 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1개 과제를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도 100% 이루어졌다.

표 II-26 시·도 교육청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법령)

(단위: 개(%))

구 분	과제수	원안 동의	개선의견	기타 ^{a)}	알 수 없음 ^{b)}
전 체	258(100.0)	139(53.9)	10(3.9)	103(39.9)	6(2.3)
서울특별시교육청	9(100.0)	9(100.0)	0(0.0)	0(0.0)	0(0.0)
부산광역시교육청	8(100.0)	8(100.0)	0(0.0)	0(0.0)	0(0.0)
대구광역시교육청	34(100.0)	32(94.1)	0(0.0)	2(5.9)	0(0.0)
인천광역시교육청	12(100.0)	4(33.3)	2(16.7)	6(50.0)	0(0.0)
광주광역시교육청	17(100.0)	3(17.6)	1(5.9)	13(76.5)	0(0.0)
대전광역시교육청	23(100.0)	7(30.4)	0(0.0)	16(69.6)	0(0.0)
울산광역시교육청	23(100.0)	8(34.8)	1(4.3)	14(60.9)	0(0.0)
경기도교육청	6(100.0)	1(16.7)	5(83.3)	0(0.0)	0(0.0)
강원도교육청	40(100.0)	40(100.0)	0(0.0)	0(0.0)	0(0.0)
충청북도교육청	8(100.0)	8(100.0)	0(0.0)	0(0.0)	0(0.0)
충청남도교육청	1(100.0)	0(0.0)	0(0.0)	1(100.0)	0(0.0)
전라북도교육청	26(100.0)	9(34.6)	1(3.8)	16(61.5)	0(0.0)
전라남도교육청	9(100.0)	0(0.0)	0(0.0)	3(33.3)	6(66.7)
경상북도교육청	14(100.0)	3(21.4)	0(0.0)	11(78.6)	0(0.0)
경상남도교육청	20(100.0)	0(0.0)	0(0.0)	20(100.0)	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100.0)	7(87.5)	0(0.0)	1(12.5)	0(0.0)

주 1 : a)는 분석평가 제외 또는 중단된 경우

주 2 : b)는 검토의견 통보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원안동의인지 개선의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셋째, 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결과를 보면(<표 II-27>), 전체 과제 수 60개 중에서 '원안동의' 40개(66.7%), '개선의견' 14개(23.3%), '기타' 6개(10.0%)로 100% 통보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도교육청 분석평가책임관은 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II-27 시·도교육청별 검토의견 통보 결과(사업)

(단위: 개(%))

구 분	과제수	원안 동의	개선의견	기타 ^{a)}	알 수 없음 ^{b)}
전 체	60(100.0)	40(66.7)	14(23.3)	6(10.0)	0(0.0)
서울특별시교육청	0	-	-	-	-
부산광역시교육청	0	-	-	-	-
대구광역시교육청	0	-	-	-	-
인천광역시교육청	2(100.0)	1(50.0)	1(50.0)	0(0.0)	0(0.0)
광주광역시교육청	7(100.0)	7(100.0)	0(0.0)	0(0.0)	0(0.0)
대전광역시교육청	20(100.0)	18(90.0)	2(10.0)	0(0.0)	0(0.0)
울산광역시교육청	12(100.0)	4(33.3)	2(16.7)	6(50.0)	0(0.0)
경기도교육청	0	-	-	-	-
강원도교육청	1(100.0)	1(100.0)	0(0.0)	0(0.0)	0(0.0)
충청북도교육청	6(100.0)	6(100.0)	0(0.0)	0(0.0)	0(0.0)
충청남도교육청	0	-	-	-	-
전라북도교육청	3(100.0)	0(0.0)	3(100.0)	0(0.0)	0(0.0)
전라남도교육청	0	-	-	-	-
경상북도교육청	3(100.0)	3(100.0)	0(0.0)	0(0.0)	0(0.0)
경상남도교육청	0	-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6(100.0)	0(0.0)	6(100.0)	0(0.0)	0(0.0)

다. 개선의견 수용률

검토의견 통보결과 ‘개선의견’으로 통보된 경우에 시·도 교육청이 수용한 정도를 보면 <표 II-28>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령 30.0%, 계획은 개선의견 통보가 없었기에 수용률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업은 28.6%였다. 전반적으로 시·도 교육청의 법령 및 사업 개선의견 수용률이 낮았다.

표 II - 28 시·도 교육청별 개선의견 수용률

(단위: 개(%))

구 분	법령		계획		사업	
	개선의견	수용률	개선의견	수용률	개선의견	수용률
전 체	10(100.0)	3(30.0)	-	-	14(100.0)	4(28.6)
서울특별시교육청	-	-	-	-	-	-
부산광역시교육청	-	-	-	-	-	-
대구광역시교육청	-	-	-	-	-	-
인천광역시교육청	2(100.0)	2(100.0)	-	-	1(100.0)	0(0.0)
광주광역시교육청	1(100.0)	0(0.0)	-	-	-	-
대전광역시교육청	-	-	-	-	2(100.0)	1(50.0)
울산광역시교육청	1(100.0)	1(100.0)	-	-	2(100.0)	0(0.0)
경기도교육청	5(100.0)	0(0.0)	-	-	-	-
강원도교육청	-	-	-	-	-	-
충청북도교육청	-	-	-	-	-	-
충청남도교육청	-	-	-	-	-	-
전라북도교육청	1(100.0)	0(0.0)	-	-	3(100.0)	3(100.0)
전라남도교육청	-	-	-	-	-	-
경상북도교육청	-	-	-	-	-	-
경상남도교육청	-	-	-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	-	6(100.0)	0(0.0)

주 : 수용률(%)=(수용+일부 수용)/개선의견×100

라. 반영결과 수용 내용

시·도 교육청이 2012년에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반영 주요 내용을 살펴 보겠다. 시·도 교육청의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반영 결과를 보면, 성별특성반영이 22.2%, 성별구분조항이 11.1%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9 시·도 교육청 반영결과 수용 내용(법령)

(단위: 개(%))

구분	전체	성별구분조항	성별특성반영	알 수 없음 ^{a)}
법령	9 (100.0)	1 (11.1)	2 (22.2)	6 (66.7)

주 1: a)는 반영결과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주 2 : 복수응답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개선 사례에서는 정책수행방식의 개선이 33.3%의 비중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성별통계 생산·활용과 성인지적 예산 편성, 성별 적극적 조치가 모두 22.2%의 반영 결과를 보였다.

표 II-30 시·도 교육청 개선의견 반영결과 수용 내용(사업)

(단위: 의견수(%))

구분	전체	법령·지침 성인지적 개선	정책수행 방식 개선	성인지적 예산 편성	성별 통계 생산·활용	정책결정 과정 평등 참여	정책 수혜 평등성	성별 적극적 조치	정책 담당자 성인지 교육	기타
시·도 교육청	9 (100.0)	0 (0.0)	3 (33.3)	2 (22.2)	2 (22.2)	0 (0.0)	0 (0.0)	2 (22.2)	0 (0.0)	0 (0.0)

주 : 복수응답

5. 대상 정책별 정책 개선 사례

가. 법령

1) 중앙행정기관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경찰청)	
평가 이전	평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모성보호 관련 조항의 명시가 없었음.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참여 대상에 여성가족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건강검진 시기, 주기 등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에서 성별고려가 누락되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조사 관련 여성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 모성보호 관련된 조항 명시(제3조제2항)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참여 대상에 여성가족부 추가(제4조제2항) ○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성별에 따른 상이한 질병발생률 등을 고려, 검진 시기, 주기를 정할 때 ‘성별’ 고려 규정 명시(제6조 제3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모성보호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참여 대상에 여성가족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건강검진 시기, 주기 등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대상에서 성별고려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평가 이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조사)

- ② 정기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찰공무원의 소득, 지출, 자산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2. 경찰공무원의 혼인, 출산, 양육, 부양, 동거 가족형태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3.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분포, 이용 정도 및 수요에 관한 사항
 4. 경찰공무원 의료지원기관의 여건 등 의료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경찰공무원의 질병 및 건강에 관한 사항
 6. 여성 경찰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9조에 따른 직원숙소의 이용 여부, 자택 보유 여부 등 경찰공무원의 주거에 관한 사항
 8.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실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법령에 복지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여성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고려, 모성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한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크다. 한편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여성가족부를 추가하였다.

평가 이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3.23., 타법개정]

제4조(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
 2. 안전행정부
 3. 보건복지부
 4. 여성가족부
 5.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여성가족부를 추가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정책에 있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성별특성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 경찰공무원의 모성보호 및 성별에 따른 상이한 질병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검진 시기 및 주기를 정할 때 ‘성별’ 고려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평가 이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19호, 2013.3.23., 타법개정]
<p>제6조 (의료지원)</p> <p>③ 건강검진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강장애요인을 고려하여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각각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야간 교대근무, 함정근무의 누적기간 2. 중요 범죄수사, 대규모 집회·시위 관리, 경호 등을 위한 장시간 집중근무 빈도 3. 혹한(酷暑), 혹서(酷暑), 매연, 소음, 진동, 전자기파, 실내공기 오염 등 위해환경의 노출 빈도 4. 그 밖에 근무의 형태, 나이, 성별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분야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교육과학기술부)	
평가 이전	평가 이후
<p>○ 영 제5조제2항에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의 대상 중 이공계 대학 재학생에 대한 통계는 성별에 따른 통계가 누락되어 있음.</p>	<p>○ 법령에 이공계 대학 재학생들에 대해서 성별 분리 통계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여성 이공계 인력의 육성 및 지원 기반 마련</p>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5조 제2항에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구축의 대상 중 이공계 대학 재학생에 대한 통계에 성별에 따른 통계가 누락되어 있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평가 이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2.12.4] [대통령령 제24216호, 2012.12.4, 일부개정]
제5조(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② 종합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공계인력의 성별, 전공분야별 및 종사하고 있는 직업분야별 인원 통계	
2.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년별, 성별, 석사·박사 과정별, 전공분야별 및 희망하는 직업분야별 인원 통계	
3.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학·연”이라 한다)의 분야별 이공계 인력 수요에 관한 정보	
4.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한 이공계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종합정보체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별분리통계의 작성은 성인지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법령에서 성별분리통계의 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인지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교육과학기술부)	
평가 이전	평가 이후
○ 학교체육중앙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가 없음	○ 학교체육중앙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규정을 명시 -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학교체육중앙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가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성별 고려 규정을 명시하도록 개선하였다.

평가 이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23호]

제6조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 ①법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③생략.
-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⑥ 생략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는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비롯하여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 11호)을 심의하므로, 위원회 구성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동 시행령에 성별고려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남녀학생의 특성을 학교체육에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평가 이전	평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포츠의 현황등의 실태조사에 성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회 위촉시 성별에 대한 고려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스포츠의 현황 등의 실태조사에 성별에 대한 조사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선(제3조제1호)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회 위촉 시 '성별' 고려 규정 명시(제5조제2항)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스포츠의 현황 실태조사에 성별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스포츠 현황 등의 실태조사에 성별에 대한 조사를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규정을 명시하도록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안 제3조에서는 이스포츠의 현황 및 이용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인력활용에서 나타나는 성별균형 등 성별에 따른 기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성별분리통계가 작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책결정에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¹⁾ 이러한 개선안을 실제 시행령에 반영하여 제정·시행되었다.

평가 이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42호, 2012.8.13. 제정]
<p>제3조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산업 종사자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4. 생략</p>	
<p>제5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이스포츠, 문화산업, 교육, 청소년,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⑥ 생략.</p>	

1)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정부위원회 설치·운영지침」(11.6.)에도 각 부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상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4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기능에는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준에 대한 자문이 포함되어 있다. 폭력성 및 선정성, 그리고 특정 성(性)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치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자문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의 기능상 위원의 인적구성이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 사회복지분야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보건복지부)	
평가 이전	평가 이후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시 출연자 등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을 구분하여 모계친족보다 부계친족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고 있었으며, 출가녀인 경우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도록 함	○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시 출연자 등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개선하고, 출가녀인 경우 남편의 친족관계를 따르도록 한 조항 삭제(제9조제1항제2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9조제1항제2호는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구성 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평가 이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p>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p> <p>①법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의 각호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친족, 다만 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다.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자녀 라. 처의 3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바.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위 개정령안 제2호 소정의 “출가녀”라는 개념은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6조제3항의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이나 호주제 폐지와 함께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 따라서 동 개정령안의 “출가녀”라는 표현은 양성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동 개정령안 상 “출가녀”를 “결혼한 여자”로 대체한다고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결혼한 여자”는 본인의 친족관계에 의하지 않고 남편의 친족관계에 따라야 한다고 하여, 성별에 따른 구분과 혼인 여부에 따른 구분을 하고 있는 점이 양성평등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상에서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제를 둔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이러한 입법목적에 고려할 때, 결혼한 여자를 혼인 여부와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취급하는 것은 그 구별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개정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동 개정령안 소정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속하는 친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모계 친보다 부계친의 범위를, 처의 인척보다 부(夫)의 인척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상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아 온 구 민법 제777조를 참고로 하여 규정된 것으로,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제1항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헌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하게 1990년에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동 개정령 안에서 여전히 성별차등적인 규정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다.

평가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3.1.27.]**
[대통령령 제24020호, 2012.8.3, 일부개정]

제9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법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생략)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와 같이 전근대적인 “출가녀”의 개념과, 합리적 근거 없는 결혼한 여자에 대한 구분 취급, 성별차등적인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규정 내에 포함하고 있었던 동 개정령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의 상이한 특수 관계인의 범위를 동일하게 조정하고, 아울러 경제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개선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

농림해양수산분야

<input type="checkbox"/>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충청남도 당진시)	
평가 이전	평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여성 참여에 대한 고려가 없음 ○ 지원 사업 범위에 여성귀농인 관련 사업은 포함 되어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 귀농인 및 성인지정책 전문가를 추가 신설 (제3조제3항제4호) ○ 지원 사업 범위에 여성귀농인의 영농 및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제8조제1항제5호)

충청남도 당진시의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안에는 당초 귀농·귀촌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여성참여에 대한 고려가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 귀농인 및 성인지 정책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지원 사업 범위에 여성귀농인 관련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여 여성귀농인의 영농 및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다.

평가 이후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제정 2012.12.31. 조례 제308호]

제3조 (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

1. 시의회의원
2. 귀농인단체협의회 추천인
3. 귀농관련 행정기관 추천인
4. 여성 귀농인, 성인지(性認知) 정책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사업의 지원)

①시장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귀농·귀촌인의 조직화를 위한 지원
5. 여성 귀농인의 영농 및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영농에 필요한 사항 지원

농어촌에서 여성은 50.9%(2011년)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노동력이자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소득격차 등으로 농어촌 내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하며, 농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범위에 여성귀농인의 영농 및 조기 적응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여성귀농인 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귀농·귀촌위원회에 여성귀농인, 특히 성인지 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전문적인 성인지적 정책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분야

□ 「대구광역시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대구광역시 달서구)	
평가 이전	평가 이후
○ 수영장 월 이용료에 있어 여성 보건 할인이 없음	○ 수영장 월 이용료에 있어 여성보건 할인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불평등 수혜를 해소(조례 제11조 제3항 제6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안」 제11조 소정의 수영장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에 있어 여성 보건 할인 조항이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 여성 보건 할인 관련 조항을 추가하여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불평등 수혜를 해소하였다.

평가 이후	「대구광역시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967호]
제11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①~② (생략) ③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5 (생략) 6.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7. (생략)	

가임여성의 경우 매월 일정 생리기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이러한 성별특성을 반영하여 가임여성에 대한 이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하여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조례개정에 반영했다는 의의가 있다.

□ 사회복지분야

□ 「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경기도 광주시)	
평가 이전	평가 이후
○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에 한 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등은 불포함	○ 본래 개정조항이 아니었지만, 분석평가를 통해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에 대한 조항부분에 기존에 대상에 없었던 홀벌이 부부 특히 여성 가구주의 빈곤수준을 감안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등을 대상자 범위에 포함시켜 빈곤여성 가구를 비롯 한부모가족에 대해서까지 수혜대상자 범위 확대

「경기도 광주시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2조는 본래 개정조항이 아니었다. 하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에 대한 조항에서 기존에 대상에 없었던 홀벌이 부부, 특히 여성 가구주의 빈곤수준을 감안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등을 대상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평가 이후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2012.12.26. 조례 제509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2. “국민기초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같은 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2·26]

이와 같이 당초에 개정조항이 아니었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를 정하는 조항에 기존에 없었던 홀벌이 부부, 특히 여성 가구주의 빈곤수준을 감안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등을 대상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빈곤여성가구를 비롯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도 수혜를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경기도 용인시)	
평가 이전	평가 이후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거주지 실태 조사 등에 성별을 분석단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음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거주지 실태 조사 등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제15조).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15조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 조사 등에 성별을 분석단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동 조례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로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활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성별분리통계의 생산·활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평가 이후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2012.9.4. 조례 제1247호]
	제15조 (시책사업 추진)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황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동 조례의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 자료를 생산하게 되었다. 이것은 향후 관련사업의 성별 차이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수송 및 교통분야

□ 「당진시 주차장 조례」(충청남도 당진시)	
평가이전	평가이후
○ 주차장 요금의 감면 대상에 임신부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불포함.	○ 주차장 요금의 감면 대상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임신부가 운전하는 자동차 추가(제4조제14호)

당진시 주차장 조례안에는 주차장 요금의 감면대상에 당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에 대해서는 이미 감면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데 반해, 임산부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주차장 요금의 감면 대상에 임산부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평가 이후 「당진시 주차장 조례」[개정 2012.12.31. 조례 제310호]

제4조 (주차장요금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1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임산부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 감면. 단, 규칙으로 정한 자동차에 한함. <신설 2012.12.31.>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로 인해 입법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조항들을 스크린하는 것이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목적이다. 동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인지적 관점과 모성보호 차원에서 자칫 미비할 수 있었던 입법안을 개선하여 임산부에 대한 편의를 증진시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전라남도 화순군)	
평가 이전	평가 이후
○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사항에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근무자에 대한 성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근무자에 대한 친절교육, 장애유형 이해교육, 성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추가 (제14조제3호)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14조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근무자에 대해서 성교육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분석해 냈다. 이에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근무자에 대해서 친절교육, 장애유형 이해교육, 성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평가 이후	<p>「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10.18. 규칙 제1238호]</p> <p>제14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규 및 협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재 위탁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한 보험에 미리 가입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콜택시 근무자에 대해 친절교육, 장애유형 이해교육, 성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이러한 법령 개선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여성장애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로서 가장 기본적인 근무자의 성교육을 의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일반공공행정분야

□ 「광주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광주광역시 복구)	
평가 이전	평가 이후
○ 개정부분은 아니지만 조례 제5조에 “본적”이라는 용어가 존재.	○ 해당조항의 단어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

「광주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5조에 ‘본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조항의 단어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였다.

평가 이후 「광주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2012.12.21. 조례 제1043호]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명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본적’ 개념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가(家)에 속하는 사람의 호적(戶籍)이 있는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가부장제도에 바탕을 둔 남녀차별적인 호주제도 및 호적법의 폐지에 따라 법에서 폐지된 개념이다. 현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의하여 가족들 사이에 달리 사용이 가능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등록기준지가 동법에 규정·이용되고 있다. 호주제도 및 호적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각종 법령에 잔재하고 있는 남녀차별적인 구 법령 용어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과정에서 발견되어 바로잡혀 개선되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인천광역시 연수구)	
평가 이전	평가 이후
○ 심의회 위원의 위촉 시 성별균형에 대한 고려 내용이 없음	○ 심의회 위원의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 추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13조 제2항 심의회 위원 중 동 제정안 제14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성별 균형에 대한 고려 내용이 없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이에 구청장이 각 분야별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 위원이 포함되도록 개선하였다.

평가 이후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2013.2.28. 규칙 제514호]

제13조 (구성) ①(생략)
②심의회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다만 제14조 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각 분야별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동 규칙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및 법령질의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안 제1조).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자치법규 입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근거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이와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심의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을 참여시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게 되었다.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기도 고양시)	
평가 이전	평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시 성별균형에 대한 고려 내용이 없음 ○ 선정위원회 구성시 성별균형에 대한 고려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총괄부서의 장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촉여부를 파악하고 성별 구성비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 선정위원회의 구성 시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원안 제20조) 및 선정위원회 구성 시(원안 제7조) 성별균형에 대한 고려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위원 위촉 시 총괄부서의

장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촉여부를 파악하고, 성별구성비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고(제5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시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제6조).

평가 이후	<p>「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2.11.9. 조례 제1447호]</p> <p>제5조(위원의 위촉) ①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촉 여부를 파악하고 성별 구성비를 조정하여야 한다.</p> <p>제6조(선정위원회) ④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때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p>
--------------	---

동 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위촉 시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 및 여성정책관련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성별 구성비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대표성 확립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 지역개발분야

□ 「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중구)	
평가 이전	평가 이후
○ 기본계획수립에 있어 '주민의 수요 요구 검토'시 성별에 따른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누락	○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의 수요 요구 검토'시 '성별, 연령별 등 주민특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개선

「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는 구청장이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의 수요 요구 검토 시 성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성별, 연령별 등 주민특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개선하였다.

평가 이후	<p>「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2.9.20. 조례 제1129호]</p> <p>제6조(기본계획) ①구청장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3.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	--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에 성인지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환경보호분야

□ 「평택시 환경기본조례」(경기도 평택시)	
평가 이전	평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시 환경지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에 대한 고려가 없음 ○ 환경보존기본계획의 수립과 환경교육 및 홍보에 있어 성별 분리통계에 대한 내용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택시 환경지문위원회 설치에 있어 환경영역의 경우 여성이 정책 및 예산의 실질적 수혜자이자 수행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 조문 수정 ○ 환경보존기본계획의 수립과 환경교육 및 홍보에 있어 성별 분리통계를 생산, 활용하도록 조문 수정

「평택시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서 이를 개선 반영하였다. 제10조 환경보존계획의 수립과 환경교육 및 홍보에 있어 성별 분리통계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제22조 평택시 환경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성별균형에 대한 고려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해당조항에 성별 분리통계를 생산·활용하도록 하는 조문 및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문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평가 이후 「평택시 환경기본조례」[경기도평택시조례 제1109호, 2013.1.7. 일부개정]

제10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의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성별 분리통계를 생산·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1.7.)

제22조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 ①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분야의 이견조정 및 주요사항 결정을 위하여 시에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관계 공무원, 시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별분리통계의 생산·활용은 성인지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계획의 수립에 있어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성인지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위원회 개선조항도 정책결정과정에 성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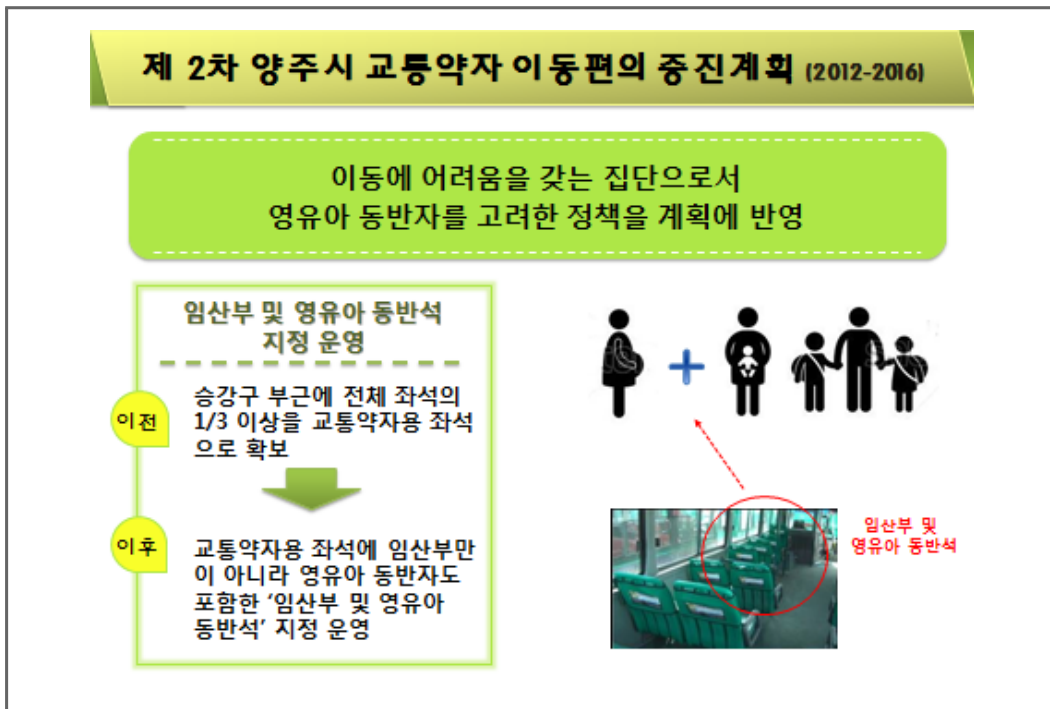
나. 계획

□ 수송 및 교통 분야

□ 제2차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경기도 양주시)	
평가 이전	평가 이후
○ 교통약자용 좌석을 승강구 부근에 전체좌석의 1/3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석 표시 설치

양주시는 제2차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통하여 영유아 동반자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한 정책을 계획에 반영하였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용 좌석을 승강구 부근에 전체좌석의 1/3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양주시는 영유아 양육자가 버스 이동의 불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에 임산부 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자도 포함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석’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다.



□ 양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2012-2016)(경기도 양주시)	
평가 이전	평가 이후
○ 쉼터 및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계획	○ 버스정류장 쉼터 조명시설, CCTV 및 방범 벨 설치 방안을 수립

양주시는 양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2012-2016)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교통시설 설치 시 범죄로부터 안전성을 적극 고려한 정책을 계획에 반영하였다.

양주시는 정류장 시설 설치 계획에서 버스정류장 설치 시 조명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또한, CCTV 및 방범벨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정류장 승차인원에 따른 계층화 분석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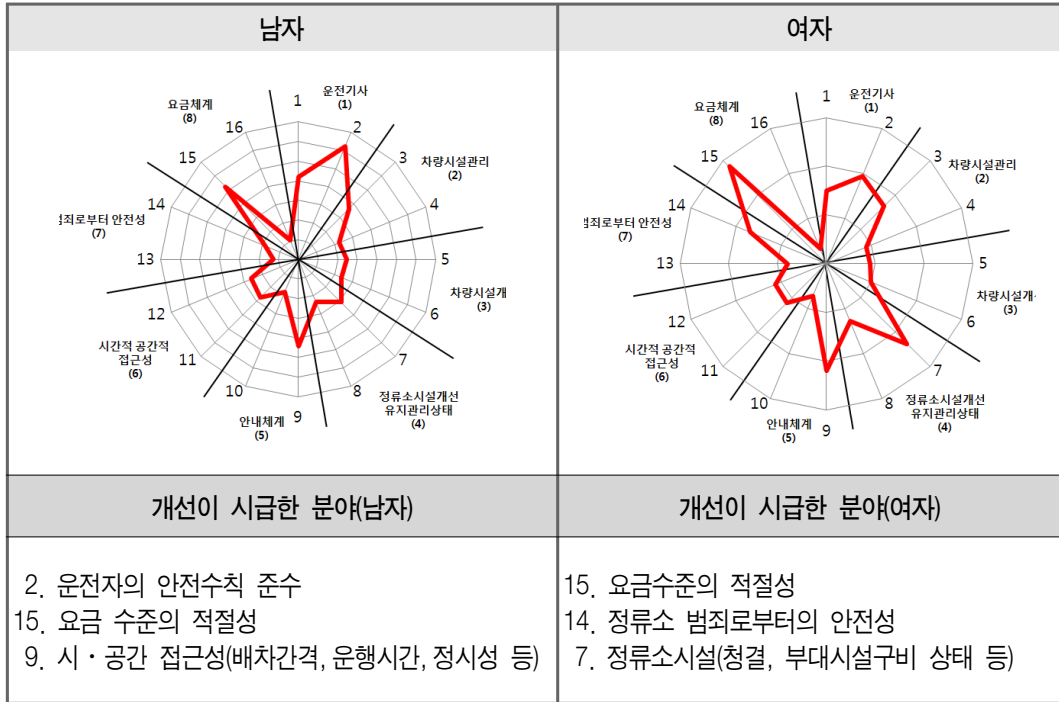
□ 화성시 지방대중교통계획(경기도 화성시)	
평가 이전	평가 이후
○ 환승센터 설치 계획 ○ 버스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시 운전자 복지관련 고려 없음.	○ 환승시설 이용자 안전과 편의 ○ 여성운전자 채용 및 근무환경을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우대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평가식에 반영

□ 제2차 수원시 지방 대중교통계획(경기도 수원시)	
평가 이전	평가 이후
○ 환승시설 설치 계획	○ 환승객을 위한 편의시설

화성시는 여성과 남성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 및 요구의 차이를 반영하여 대중교통 시설의 편의와 범죄 안전 분야를 화성시 지방 대중교통계획에 포함시켰다.

화성시 지방 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 시설 개선 사업으로 18개의 환승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었다. 성별분리통계 분석을 통해 환승시설 설치 시 환승시설 내외에 보안 카메라 설치,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환승객을 위한 편의시설(화장실, 모유 수유실, 놀이방 등) 설치에 대한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림 II -1] 성별에 따른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도 (경기도 화성시)

한편 경기도 화성시 지방 대중교통계획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지방 대중교통 계획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추진방안으로 버스기사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하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운전자의 모성 및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여성운전자 채용 및 근무환경을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우대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고용 여건을 개선하였다.

□ 지역개발 분야

□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대구광역시)	
평가 이전	평가 이후
○ 보행 안전 분야에 대한 고려 없음	○ 부문별계획 중 교통계획에 여성의 보행안전 등을 위해 범죄예방설계, 보행안전시설 설치

2020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 도로 및 도시 공간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설계 적용, 아파트 단지 안전 지대화 방안을 교통계획 내에 포함시켰다.

대구광역시가 제안한 CPTED 설계 적용 범위는 주거중심부에 놀이터 조성, 주민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시설 이용자가 많은 복합시설 배치, 보도 및 지하주차장 등에 적절한 조명시설 설치 등이다.


아파트 단지 안전 지대화 방안은 주차장 및 주차장 매개 시설에 비상벨 스위치 설치 및 추적 CCTV 연계,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단지 내 전용정류장, 동별 공용부분인 계단실과 경비실 투명창 설치, 가스배관 등에 침입방지시설 설치 등이다.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2020)

주요 도로 및 도시공간에 CPTED 설계 적용 & 아파트 단지 안전 지대화 방안을 교통계획 내 포함

이후 CPTED(범죄 예방) 설계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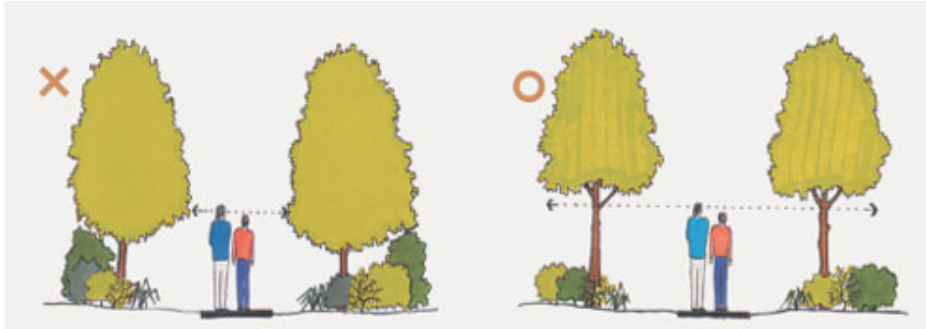
- 주거 중심부에 놀이터 조성
- 시설 이용자가 많은 복합 시설 배치
- 보도 및 지하주차장 등에 적절한 조명 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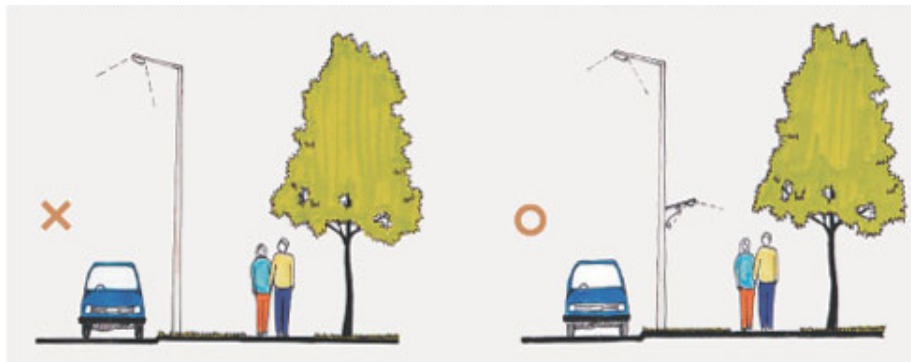
이후 아파트 단지 안전 지대화 방안

- 주차장 및 주차장 매개 시설에 비상벨 스위치 설치 및 추적 CCTV 연계
-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단지 내 전용 정류장
- 동별 공용 부분인 계단실과 경비실 투명창 설치
- 가스배관 등에 침입방지 시설 설치

계획



[그림 II-2]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공원조경 설치 예시



[그림 II-3] 차도와 인도를 비추는 가로등 디자인 예시

□ 「제4차 하수도정비기본계획(대전광역시)」	
평가 이전	평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위주의 종목(축구장, 풋살경기장, 야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 용지 계획 ○ 공원시설 용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추진 시 여성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종목 반영 ○ 여성 및 가족친화적인 공원 조성 계획

대전광역시 제4차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를 반영하여 하수 처리시설 주변 용지 계획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시 노약자와 여성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가·문화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는 공원시설 용지 계획에 밝은 조명 및 CCTV 설치, 산책로 조성 시 여성의 보행환경 및 유모차 등을 고려한 포장재료 사용, 수유실 및 유모차 대여소 등 편의시설 확충, 표면에 차고 딱딱한 재료를 지양하고 아이의 높이에 맞는 벤치 설계 등 여성 및 가족친화적인 요소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체육시설 용지 계획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고 여성 및 노약자 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을 반영한 체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다. 사업

1) 중앙행정기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input type="checkbox"/> 전담의용소방대 확대 사업(소방방재청) : 남녀차별적 업무분장 개선 및 여성의용소방대 정복규정 중 하의 '치마' 규정을 '치마 또는 바지'로 수정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사업은 적재적소에 정예 민간 소방력을 배치함으로써 도서·산간지역 소방사각 지역 해소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하며, 부족 소방인력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음	시, 도별로 운영 중인 전담의용소방대 관련 일부지자체조례를 통해 ○ 업무분장안에 여성은 '위안' 활동, 남성은 '소방'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 ○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한 일부 조례에서 여성의 하의를 치마로 제한하는 등 여성에게 불합리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표준 조례(안)을 개정하여 ○ 남녀 구분없이 업무분장을 규정 반영할 예정임 ○ 여성의 하의를 치마로 제한한 사항을 "치마 또는 바지"로 수정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표준 조례(안)" 개정시 반영할 예정임

소방방재청은 2012년에 '전담의용소방대 확대운영'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등 재난 현장 소방 활동을 지원하는 비상근의 소방업무 보조 인력으로서, 소방서별로 남성의용소방대 및 여성의용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분석평가 과정을 통해 일부 지자체 조례의 업무분장에 여성은 ‘위안’활동, 남성은 ‘소방’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성별 업무분장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일부 조례에서는 의용소방대원 정복규정에 여성의 하의를 치마로 제한하고 있어, 여성에게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미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여성 제복을 치마로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성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 및 보완을 권고한 바 있었다. 그런데 일부 시·도 조례의 경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는 남녀구분 없는 업무분장규정 및 여성의용소방대의 정복규정 중 하의에 대한 규정을 ‘치마 또는 바지’로 수정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표준 조례(안)’ 개정 시 반영하였다.



□ 농림해양수산분야

□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농촌진흥청)

: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조건 완화 및 사업 다각화

사업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사업은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 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에의 기여를 통해 농촌사회에 활력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농업인 지원사업은 주로 농가경영주(대부분이 남성)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위주였음. ○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업인구 중 51%를 차지(2010년),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은 농업의 보조자적인 역할로 인식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가 보다 더 용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농촌여성만을 위한 사업에서 '09년부터 남녀 모두가 참여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 - '12년에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지침을 개정 ○ 성인지 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 본 사업예산 중 여성의 수혜 비율이 67%로서 전체 여성 농업인 비율 51%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 남녀농업인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 창업 경영개선교육에 여성농업인 참여가 용이하도록 시간, 교육장소, 교육형태(집합), 컨설팅 등 다양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및 세무관리 교육지원, 소외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여성 농업인단체 등을 방문하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함. ○ 전자상거래 “우먼팜”(www.womanfarm.com) 홈페이지 구축 지원으로 지속적인 수익창출에 기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먼팜 참여농가 매출액 증대 : ('11)635 → ('12)683백만 원

농촌진흥청은 2012년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분석평가 결과 농촌진흥청에서는 성평등한 사업 운영을 위해 크게 세 분야에서 사업개선을 추진하였다. 첫째, 남성과 여성 모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의 지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였다. 그동안 유사한 많은 사업들의 대부분이 남성인 농가 경영주의 농업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농업정책에서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 초기에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가 참여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으며, 2012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지침을 개정하였다.

둘째, 여성 농업인의 사업 참여 확대 및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였다. 본 사업에 여성과 남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성별 요구에 맞는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후속 교육 진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셋째, 여성농업인이 창업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시간, 교육 장소, 교육 방식, 컨설팅 방식 등 전반적인 사업 수행 방식을 개선하였다. 여성 농업인단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에 대한 홍보방식 또한 다양화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분야

□ 인적자원육성관리 사업(문화체육관광부) : 여성참여가 용이한 현장 영화인 교육프로그램 예산 확대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사업은 영화산업 신진인력 양성 및 현장영화인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영화산업 내 고용안정 추구하고 효율적인 인력수급·운용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 영화산업 제 분야 중 촬영 기기를 다루는 분야와 촬영 현장 작업 분야는 신체적 물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음 - 반면에 창의력과 기획력, 네트워크 능력이 필요한 기획, 제작관리 분야에서는 여성의 진출이 활발할 수 있음에도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	○ 여성의 진출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기획 창작 분야 및 영화제작프로젝트 관리 분야에 대한 현장 영화인 교육프로그램 예산을 확대 하였음 ○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여성 참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음 ○ 교육 참여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현장 영화인 교육과정 옴부즈맨 구성시 여성의 비율을 50%로 하여 여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인적자원육성관리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영화산업 신진인력 양성 및 현장영화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평가결과 제시된 조치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째, 예산반영 계획으로, 여성이 진출하기에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기획창작 분야와 영화 제작 프로젝트 관리 분야의 현장영화인 교육프로그램의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에 반영할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교육훈련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여성 참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현장 영화인 교육과정 옴부즈맨 구성 시 여성의 비율을 50%로 하여 여성의 수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영화산업진입이 주로 지인 등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영화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영화인교육센터'에서 여성교육 수료생들이 여성 영화인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여성 영화인 세미나 등을 신규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또한 영화인 경력인증체계 구축 시 성별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성별로 구분된 영화인 교육센터 설문을 통해 여성 영화인의 요구를 파악하고, 영화산업협력위원회 실무진 구성 시 여성위원 비율을 높여 여성영화인이 경험하는 피해에 대한 대처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보건분야

□ 의료기기 명예지도원 운영 사업(식품의약품안전청) : 여성 의료기기감시원 비율 확대 및 여성 감시원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조 운영 방법 개선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사업은 의료기기 명예지도원 운영을 통해 부정·불량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수집 체계의 다원화 등 의료기기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및 소비자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관심 있는 자를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의료기기 감시원 업무를 돕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만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조의 직무 수행 시 물리적 안전문제 등이 발생하는 등 성별에 따른 직무환경 차이 발생함 ○ 60대 이상의 고령여성이 부정·불량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기본계획(지침)에 여성 의료기기 감시원의 위촉비율을 “40% 이상”으로 명시하여 실제 여성 위촉 비율이 49.5%로 상향됨 ○ 고령여성의 부정·불량 의료기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여성 의료기기 노인 명예감시원 위촉 비율을 확대함 ○ 여성단체 대상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 등의 교육 강화함 ○ 여성 명예지도원의 안전한 현장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감시요령 교육 및 점검조 운영 방법 개선함 - 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대처 방법 등 교육 실시 남녀 모두 포함된 점검조 편성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2년에 ‘의료기기 명예지도원 운영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평가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업개선을 추진하였다. 첫째, ‘의료기기 명예지도원 지침’을 개정하여 기존에 여성 명예지도원 위촉비율 3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던 것을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분석평가를 통해 부정·불량 의료기기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큰 계층이 60대 이상의 고령 여성이고, 이의 예방을 위해 ‘여성 의료기기 명예지도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 위촉비율을 높여 ‘의료기기 시니어 명예감시원’을 운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부정·불량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가장 피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고령 여성의 부정·불량 의료기기 피해 감소를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여성단체 대상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수행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셋째, 의료기기 명예감시원의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명예감시원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하였다. 분석평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성 명예감시원이 현장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하지 못한 환경(감시원증을 강제로 뺏거나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업무 비협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발견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기 명예감시원 점검조를 여성과 남성 한조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 명예지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강화하여 점검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및 대처방법 등을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하여 명예지도원의 안전을 위한 사업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분야

□ 고용창출지원 사업(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기업이 고용창출지원 사업에 지원 시 가점을 부여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사업은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의 단축,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말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24,244천명 중 여성 취업자 수 10,416천명(43%), 남성취업자수 14,153천명(57%)로 여성 취업자 수가 적음. 이와 연계되어 여성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이 낮음 ○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사업의 경우 '11년에 여성의 참여비율이 10%로 매우 낮으며 유망 창업기업의 고용지원사업의 경우 여성비율이 38%로 낮은 편임 -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요건인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의 전문 인력에 해당하는 여성이 적어 전문 인력 채용 지원금 활용실적이 저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창출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고용노동부는 2012년에 ‘고용창출지원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의 단축,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주요사업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전문 인력 채용지원, 고용환경 개선 지원이다.

여성가족부는 종합검토의견에서 ①전문 인력 채용 시 여성이 10%뿐인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며, ② ‘전문 인력 채용 지원 사업’에서 여성을 일정비율 채용할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과 ③ 각 지방관서의 심사위원회 및 ‘함께 일하기 지원 사업’ 컨설팅 수탁기관의 컨설팅에 대한 성별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④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고용창출 지원 사업에 지원 시 가점 부여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여성 채용 시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지만, 고용창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고용창출지원 사업에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따른 정책 개선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산업·중소기업분야

□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산림청)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과 청년·장년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서비스 도우미사업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만18세 이상인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나, 사업 참여자에서 성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남 - 2010년 남성참여율 비율은 72%인데 비해 여성참여율 비율은 28%, 2011년에는 남성 67.4%, 여성 32.6%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종합 지침 개정 - 여성수혜자 비율을 33%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명시 - 여성 전문 인력 양성 및 공공서비스 분야 여성 참여율 향상 노력 명시 -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시 여성 일자리 사업 관련 기관(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는 등 홍보 확대를 통한 여성 참여율 향상을 도모함

산림청은 2012년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과 청·장년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극복 및, 국민에게는 보다 나은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해 숲 해설가, 숲길 조사 관리원, 수목원 코디네이터,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숲 생태관리인, 등산 안내인, 도시녹지관리인,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분석평가 결과 2011년 전체 사업 참여자 성비가 여성 32.6%, 남성 67.4%로 나타나 여성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림청은 성평등을 위해 두 가지 조치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산림청은 ‘2013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업 종합 지침’ 상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사업의 성인지 예산 편성·관리 사업임을 명시하여 여성수혜자 비율 33% 달성을 성과목표로 정했다. 더불어 양성평등한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발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며, 여성 전문인력 양성 및 공공서비스 분야 여성 참여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둘째,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다양화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조치의 일환으로 ‘2013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종합 지침’ 중 모집공고란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사업의 경우 모집공고 시 각 지역의 여성일자리사업 관련 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참여 홍보 확대”를 명시하였다.

이 밖에도 산림청은 산림서비스 사업의 세부사업별 성별참여 현황을 파악하는 등 성별 분리통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일반공공행정분야

□ 세정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성과평가체계 개편(국세청) : 성과 평가시 출산·육아 휴직자의 불이익 최소화 방안 마련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사업은 세수기여도, 성실신고 파급 효과 제고 등 해야 할 일을 더 잘한 직원이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 지표와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성과 평가 시 출산휴가·육아 휴직자의 경우, 근무일수 부족문제로 양적 평가 및 비계량평가(다면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될 수 있음	○ 개인 평가 시 출산·육아 휴직(휴가)자의 근무일수를 정상근무자와 동일하게 평가하고, 다면평가(비계량평가)시 출산·육아휴직자는 본인의 실제 취득점수와 다른 소속 직원들의 평균점수 중 큰 점수를 최종 점수에 반영하여 불이익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평가결과 하위 5% 이내로 평가받은 직원의 여성비율이 2010년 60%에서 2012년 42%로 감소

국세청은 2012년에 ‘성과평가체계 개편’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성과평가체계를 개편하여 세수기여도, 성실신고 파급효과 제고 등 해야 할 일을 더 잘한 직원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정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기존의 평가 지표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경우,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이거나 휴직 후 복귀한 여성 직원은 근무일수, 조직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하였다. 구체적인 개선 내용으로는 첫째, 평가 지표 설정 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양적 평가를 지양하되, 부득이한 양적평가 시에는 근무일수를 고려하여 목표 값을 조정하는 원칙을 마련하였다. 둘째, 역시 근무일수를 통해 조직 기여도를 평가하게 되는 조직평가 시 출산·육아 휴직자의 근무일수를 정상근무자와 동일하게 평가하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다면평가(비계량평가) 시 출산·육아 휴직자는 본인의 실제 취득점수와 다른 소속 직원들의 평균점수 중 큰 점수를 최종점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분야

□ 국립공원지킴이 사업(환경부) : 채용공고 시 “여성가장 및 다문화가정 등 여성취약계층” 가점제도 명시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의 보전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혜에서 여성의 참여비율이 현저하게 낮음 - 전체인원 529명 중 여성은 122명(23%), 남성은 407명(77%)로 여성의 참여정도가 낮음 - 여성의 참여가 낮은 원인 중의 하나는 ‘국립공원지킴 운영지침(12.4 개정)의 자격기준에서 ‘안전지킴이 분야 지원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를 명시하고 있어 여성의 지원이 배제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지킴이 운영지침 수정계획 - 자격요건에 여성과 남성 모두 지원이 가능하지만 ‘안전지킴이 분야 지원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를 추가하고 있어 남성에게만 지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계획임 ○ 채용공고 시 취약계층여성에 대한 우대 사항 명시로 여성참여 확대 - 여성가장 및 다문화가정 등 여성취약계층에 대한 가점내용을 채용공고 시 명시하여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임 ○ 성별분리 통계의 지속적인 관리

환경부는 2012년에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의 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사업수혜에서의 성별특성을 보면, 2011년 기준, 사업에 참여한 전체인원 529명 중 여성이 122명(23%), 남성이 407명(77%)으로 여성의 참여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의 개선안으로는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개선에 관하여 환경부의 돋보이는 노력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의 내용을 적극 수용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사항은 두 가지이다. 첫째, 녹색순찰대와 재난구조대로 구성되는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의 ‘2012 국립공원지킴이 사업 채용 계획’과 달리 ‘국립공원지킴이 운영지침’에서는 자격요건에 ‘안전지킴이 분야 지원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를 추가하고 있어서, 남성에게만 지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채용 공고 시 우대사항으로 “여성가장 및 다문화가정 등 여성취약계층에 대한 가점내용을 채용공고 시 명시” 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 반영결과를 제출하면서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국립공원지킴이 운영지침을 수정하여 재난구조대의 경우 남녀 모두가 지원이 가능하지만 남성에게만 지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둘째, 여성취약 계층에 대한 가점제도의 운영을 채용 공고 시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셋째, 성별 분리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환경부 사례는 해당부처가 작성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서는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통계를 통해서 여성의 참여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상황을 보여주었으나 그 원인을 분석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검토의견 통보서에서 성별격차가 큰 원인의 일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환경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을 성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 사례이다.

2) 광역자치단체

□ 일반공공행정분야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 이행성과 평가(서울특별시) : 공공기관에 일·가정 양립 여건조성 위한 기반마련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기관 경영평가 (시민만족도 조사 포함) ○ 투자·출연기관 '대표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 출연기관 근무자의 성별 현황을 보면, 2011년 기준 여성의 비율은 51.4%임. -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을 성중립적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양성평등 추진성과, 노력도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성과급 지급률 및 기관 대표경영성과 연봉인상률을 결정하여 책임경영체제 구축 및 실질적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 ○ '2012년도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2012.11)'을 보면, 공통지표 중 (4)사회공헌(가중치 4점) 항목에서 ⑤일·가정 양립지원 및 양성평등 직장 조성 등(0.5점, 비계량)을 세부평가내용에 포함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양성평등 직장 조성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20%) ▶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노력(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실행 노력(육아휴직 이용 장려 노력, 유연근무제 활성화 노력, 직장 내 보육 시설 강화 노력 등) ▶ 양성평등 직장 조성 노력(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직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 양성평등 직장 조성을 위한 실행 노력(여성인력 채용 및 여성 관리자 확대노력, 핵심부서(기획, 예산, 감사, 인사) 및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노력 등) - 양성평등 분위기 조성 노력(관련 교육실행 노력 등)

서울특별시시는 ‘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 이행성과 평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일·가정 양립정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였다. 시 투자·출연기관은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 이행성과 평가’사업의 주요 내용은 출연기관 경영평가와 투자·출연기관의 ‘대표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 평가’이다. 이를 위해 출연기관 경영 평가에 ‘일·가정 양립지원 및 양성평등 직장 조성노력’ 지표를 반영하였다. 구체적 평가 항목을 보면, ① 육아휴직 이용 장려 노력, ② 유연근무제 활성화 노력, ③ 직장 내 보육 시설 강화 노력, ④ 여성인력 채용 및 여성 관리자 확대 노력, ⑤ 핵심부서 및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확대 노력 등, ⑥ 양성평등분위기 조성 노력으로 구성하였다.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의 성평등 이행 주요 정책 개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 - 31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의 성평등 이행 주요 정책 개선 현황

기관명	일·가정 양립지원	양성평등 직장조성
서울의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개원, 육아휴직 활성화 - 가족휴양 콘도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이상 간부직 여성비율(61%) - 주요보직 여성배치
서울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 직원에게 육아휴직 등 확대 - 유연근무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여성인력 채용 3% 증가 - 전년대비 여성 관리자 3명 증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제 활성화 - 직장 내 보육시설 강화, 육아휴직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부서 여성비율 확대(46.6%) - 전년대비 여성 관리자 3명 증가
서울신용보증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경영을 통한 직무 몰입도 제고 - 반차휴가제도, 체력단련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 대비 여성비율 증가(채용 5.2% ↑, 간부 1.8% ↑, 핵심부서 25% ↑)
세종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패밀리 데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관리자 확대(5명) - 남성 육아휴직 실시 직장문화 조성
서울시복지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활성화, 대체인력 활용 - 직원가족을 위한 휴양소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각종 위원회 여직원 참여 확대
서울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활성화, 대체인력 채용 - 탄력적 근무제도, 수유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및 성희롱 고충위원회 운영 - 전년 대비 여성 관리자 증가 (18.4%)
서울시립교향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장려 - 직원 생일기념품(케이크) 지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추진계획 수립 -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서울시자원봉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권장 - 유연근무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기간을 경력기간 인정 - 부장 이상 여성인력(50%)
서울디자인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예정자 고충 상담 및 격려 - 육아휴직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 내 여직원 휴게실 조성 등 -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 지역개발분야

□ DMC 입주기업지원 사업(서울특별시) : 첨단산업센터 및 산학협력연구센터 입주신청 서면 심사 시 여성 CEO 가점 부여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DMC(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씨티)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 활성화 및 기업생태계 조성의 목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C 입주기업의 종건 직원 및 대표자 대부분은 남성임 - 경영·인사·기술 등 컨설팅 지원, 입주기업 홍보 마케팅 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 사업화 지원 등은 종건 직원 및 기업 CEO가 대상자이므로 남성이 많아 남성 편중 지원됨 ○ 신규직원은 여성이 많은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CEO에게 정책적 사업지원 가점 부여 체계마련(시설입주, 기업지원 프로그램 선정 등) ○ 남성 CEO가 대부분인 CEO아카데미를 폐지하고, 수요조사를 통한 입주기업 임직원을 위한 DMC 아카데미 운영 ○ 여성의 비율이 많은 신규채용 지원, 신규자를 위한 교육 등에 예산 반영 ○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여건 조성(어린이집 운영, 지하주차장 조명 개선 등)

서울특별시는 2012년에 ‘DMC 입주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사업의 목적은 DMC(상암동 디지털미디어씨티)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클러스터활성화 및 기업생태계 조성, DMC 입주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R&D 및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산학협력지원, 인력채용 및 양성 지원, 입주기업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을 보면, 여성의 참여율이 14.3%에 불과하여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시된 개선안은 두 가지이다. 첫째, 여성 CEO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첨단산업센터 및 산학협력연구센터 입주신청 서면 심사 시 여성 CEO에게 가점을 3점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는 것으로 첨단산업센터 어린이집 및 여성휴게실을 운영하고 지하주차장의 조명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검토의견 통보서의 주요 분석 내용에 대해 원안 동의하였다.

□ 광주야구경기장 건립공사(광주광역시)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기존 야구장의 노후하고 열악한 시설로 인하여 관람객 불편 및 선수들의 부상 발생률 증가로 체육활동 및 경기관람 환경 개선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구 경기장은 남성 이용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을 배려하는 시설이 부족하였음. - 여성편의공간(모유수유실 등)이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에서 여성과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야구 여성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위해 설계에 여성 편의시설 개선 - 여성 화장실 개선 - 수유실 4개소, 유아놀이방 2개소 설치 - 키즈카페, 파티플로어, 클럽라운지 등 여성 편의공간 마련 - 유모차, 휠체어가 통과하기 쉬운 완만한 경사 슬로프 설치 및 단차 없이 통과하기 용이한 구조로 설계


광주광역시는 사업기간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광주 야구경기장 건립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기존 야구장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하여 관람객이 불편하고 선수들의 부상 발생률이 증가하여 체육활동 및 경기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전체이용자 비율을 성별로 보면, 2011년 기준 여성비율이 31.5%였으나 2012년에는 여성이 32.4%로 증가하였다. 아직까지 이용자 중에는 남성이 많은 편이지만 여성의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이 필요하였다. 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안은 세 가지이다. 첫째, 여성친화적인 경기장 건설을 위해 야구경기장을 건립하고 입찰안내서상 여성친화적 설계를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가족친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설계시공 단계부터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검토의견 통보서에 따르면, 주요 분석평가내용—설계·시공단계부터 여성, 임산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수영장 건축 추진 등—에 대해 원안동의하였다.

광주야구경기장 건립공사 (광주광역시)

노후 및 열악한 시설 개선 시 여성 관람객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한 여성친화적 야구경기장 건립

이전

- 이용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 여성 편의공간 및 교통약자를 배려한 공간 부족



이후

- 여성친화적 설계를 입찰 안 내서상 명시, 관련 예산 반영
-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한 설계 시공
- 남녀 모두를 고려한 편의공간 마련 : 여성화장실 개선, 클럽라운지, 파티 플로서 설치
- 유아동 동반자 고려 시설 설치 : 모유수유실 4개소, 유아놀이방 4개소, 키즈카페 설치
- 유모차, 휠체어 이용객 고려 : 완만한 경사 슬로프, 단차 없는 구조 설계

3) 기초자치단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p><input type="checkbox"/> 안전문화운동(부산광역시 금정구) : 여성 청소년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프로그램 추가, 여성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p>		
사업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p>재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습 위주의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을 실시, 현장 위기대처능력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청소년은 남성 청소년에 비해 재난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며, 해당교육을 선호하지 않는 특징을 보임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여성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이 더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여성 청소년 대상 재난안전교육 및 예산반영, 시범 운영 필요 ○ 2013년 재난안전 순회교육 계획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학교별 신청 접수 시 여자중학교 우선 신청 접수 -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안전교육 내용 추가 : 호신술, 자기방어, 응급 도움 요청 등 - 전문강사 초빙 : 실습 및 체험위주 교육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2012년 ‘안전문화운동(재난안전 순회교육)’에 대해서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재난안전 교육실시 확대 등 구체적인 사업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금정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재난안전 순회교육)’은 재난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등학생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의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여성 청소년들은 신체적인 차이 등으로 인해 여성에게 필요한 안전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제 재난안전 순회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34%로 남성 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금정구에서는 여성 청소년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여성 청소년의 교육 참여율을 높여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추진하였다.

첫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 교육확대를 위해 2013년 재난안전 순회교육 시 참여 학교 신청과정에서 여자중학교를 우선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제시하였다. 둘째, 여성 청소년에게 필요한 호신술, 자기방어, 응급도움 요청 등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 농림해양수산분야

□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충청북도 증평군) :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조작교육 확대 및 사업 홍보 강화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대여를 통한 작업 효율성을 개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조작 등은 관행적으로 남성이 주로 담당 ○ 여성은 상대적으로 농기계 조작 훈련에서 소외되어, 농기계 조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농업인이 농기계 임대 서비스의 직접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각종 농기계 조작 교육과 홍보활동 강화

충청북도 증평군은 2012년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였다.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농기계 대여를 통한 작업 효율성을 개선하며,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사업이다.

본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2011년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의 수혜 여성 농업인은 단지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농기계 이용이 남성의 역할인 것으로 여겨져 왔던 사회적 환경의 영향 및 여성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농기계 조작 훈련에서 소외되어 농기계 조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충청북도 중평군에서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조작 교육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분야

□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경상북도 문경시) : 여성 청소년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종목으로 스포츠바우처 시행기관 확대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도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혜 대상 비율이 남성 69%, 여성 31%로 남녀 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사업 참여 시설이 태권도, 합기도, 유도 등 남성 위주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바우처 사업 연계처 확대 시 여성 수혜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여성 참여 확대 가능한 과목 운영 기관과의 사업 연계 도모 - 기존 격투 종목 위주의 종목과 별도로 여성이 더 수혜 받을 수 있는 에어로빅, 탁구, 무용 등 다양한 종목으로 스포츠바우처 시행 기관 확대 ○ 남녀의 고른 참여를 유도

경상북도 문경시는 2012년 ‘스포츠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여 해당 사업의 성별 불균형 수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경시에서 진행되는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통해 해당 사업의 성별수혜 현황을 살펴본 결과 문경시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중 남성 청소년

참여 비율이 73%를 보이는데 비해, 여성 청소년 참여 비율은 27%에 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문경시는 이와 같은 사업수혜의 성별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개선하였다. 우선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남성 청소년 참여비율이 높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시설이 태권도, 합기도, 유도 등 남성 위주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성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만한 스포츠시설 연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결과 사업에 대한 개선안으로 여성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여 발레,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탁구, 무용 등 연계 스포츠시설 분야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 보건분야

□ 정신보건센터운영(우울증 예방사업)(경기도 시흥시) : 여성 대상 우울증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다양화 및 이를 위한 운영예산 증액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사업은 우울감이 있는 회원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조기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우울증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여성 10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 등을 포함한 기분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10월 현재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등록현황을 보면 우울증으로 인해 등록된 경우가 여성이 남성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여성 77명, 남성 3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대상 프로그램 권역별 확대 실시 ○ 우울증 프로그램 예산 확대 및 여성 대상 교육 예산 증액 ○ 독거 여성 어르신 대상 우울증 스크리닝, 여성 대상 산후 우울증 스크리닝 실시 후 등록관리 ○ 여성일자리본부, 여성장애인센터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등 프로그램 참여방법 다양화 추진 ○ 육아기 여성 우울증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아동 일시 돌봄 서비스나 돌봄도우미 배치 등 검토 추진

경기도 시흥시는 2012년에 ‘정신보건센터운영(우울증 예방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시행하는 우울증 예방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자살문제의 주요한 원인인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우울증 조기 치료 또는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결과 여성들은 육아스트레스, 고부간 갈등, 산후 우울증, 폐경기 우울증 등에 대한 기분장애를 경험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타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예방 및 치료가 확대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독거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 스크리닝, 산후 우울증 스크리닝을 실시하여 우울감을 느끼는 여성들을 정신보건 센터에 등록, 체계적인 지원을 진행하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둘째, 여성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사회적 편견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일 자리본부, 여성장애인센터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진행한다거나, 여성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는 등 프로그램 참여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생활권역이 나누어져 있는 시흥시 특성을 반영하고, 이동이 어려운 여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육아기 여성 우울증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해 아동 일시 돌봄 서비스나 돌봄 도우미 배치 등도 검토 중이다.

셋째, 이와 같은 여성 우울증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여성대상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증액 확보하였다.

□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서울특별시 도봉구) : 성별 유병률 차이 반영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 예방 중심의 통합연계형 건강관리 수행과 지역사회 회의 대사증후군 조기 발견 및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 최소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대사증후군 등록에서 여성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10년에 대사증후군 등록인 중에 여성비율은 59.6%였으나 2011년에 60.8%로 1.2% 증가했으며 남성에 비해 높은 등록률을 보임 - 조사결과 소득이 낮으며 전업주부일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높음	○ 주부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 및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 여성주간 행사 연계, 시장·유통업체 종사자·아파트 등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상담실 운영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2012년에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예방중심의 통합 연계형 건강관리 사업수행과 지역사회의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 최소화로 주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30세 이상부터 64세 이하인 구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전문 관리 센터 및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하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30세 이상 여성의 유병률이 25.6%로, 특히 전업주부층에서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성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은 데 비해서, 여성은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해서 제시된 정책개선 사항은 주부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 및 건강 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여성주간 행사와 연계하여, 아파트 등으로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상담실 운영을 제시하였다.

검토의견 통보서에서는 주요 분석평가 내용에 대해 원안동의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 문화적, 경제적 차이에 따른 맞춤형 대사증후군 관리를 제시하였다.

□ 사회복지분야

□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서울특별시 강남구) : 여성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강남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과 양적 확대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 기관에서 54개 사업을 운영, 2,156명의 참여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 - 세부 사업운영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고려 없음 - 세부 사업별 성별 참여 현황 제시 없음 - 전체 사업 참여자 중 여성 참여 비율이 높음(2012년 3월 현지 여성참여 비율 65.9%)을 들어 사업 개선안 제시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참여 욕구와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개선 - 여성의 평균수명과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여성노인이 고급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서비스 제공 ○ 내용 : 여성어르신 일자리 신규창출 - 강남시니어기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각종 행사, 여행지 등 취재로 시니어 정보 제공 • 방법 : 블로그운영, 신문발행(10월말 예정) • 참여 : 20명 (여14명, 남6명) - 교육강사 파견사업(동화구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 파견 • 참여 : 10명 (여9명, 남1명) - 기타사업 : 시니어모델, 보육교사도우미, 일상생활해결지원단 등 ※ 2012년 신규일자리 10개 사업: 270명 참여(여71%,남29%) ⇒ 여성어르신을 위한 이색일자리 신규 창출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2012년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강남구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양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강남구의 15개 기관에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인력 파견형으로 유형화 되는 54개의 일자리사업을 운영하여 총 2,156명의 참여자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강남구는 당초 이러한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2012년 3월 현재, 전체 사업 참여자 중 여성 참여자의 비율이 65.9%로 높게 나타남을 들어 사업의 성별형평을 고려한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시한 검토의견 통보서에 제시된 개선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이에 사업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성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남구는 여성의 평균 수명과 근무 기간을 고려했을 때 여성 어르신이 경제적으로 불리하며 노인 빈곤 문제와도 직결되는 환경에 처해 있음을 들어 여성어르신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 어르신을 위한 신규 일자리로 ‘강남 시니어 기자단’ 운영,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 등에 ‘(구연동화) 교육 강사 파견’, ‘시니어 모델’, ‘보육교사 도우미 파견’, ‘일상생활해결지원단’ 등을 마련하였다.

□ 일반공공행정분야

□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사업(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성별 휴식 공간 마련		
사업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치·보호구 착용지도 및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무사고 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과 여성의 작업복이 동일 - 청소작업 수행 시 남녀 신체적 차이에 따른 작업복이 별도로 제작되어 제공되지 않음 ○ 안전교육에서 성별차이를 고려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작업 수행 시 남녀 신체적 차이에 따른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 실시 ○ 성별차이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작업복 제작 필요 ○ 근무조건이 힘들에 따라 성별 특성에 따른 쉼 공간 배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는 2012년에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환경미화원 등 현장 근무자의 안전보호구 확인 착용 생활화, 청소 시설물 안전관리로 사전재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청소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안전보호구 적격품의 검수 및 착용지도 등으로 환경미화원 안전관리에 집중되어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형태의 작업복을 착용하여 여성에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제시된 정책개선안은 세 가지이다. 첫째, 청소작업 수행 시 남녀 신체적 차이를 고려한 안전 교육이다. 둘째, 성별 차이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작업복 제작이다. 셋째, 근무환경이 힘들에 따라 성별 특성에 따라 쉼 공간을 배려하는 것이다.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도봉구의 남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132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135
3.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138
4.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	140



Ⅲ.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평가하는 제도이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정책개선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주요 목표이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법적 근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시행령 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기반하고 있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적용기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이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제는 주로 성별 격차가 크고 다수 부처에 관련되거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수혜 대상의 범위가 넓어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정책·사업 등이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과제 선정은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며, 2012년에는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그것이다. 추진결과 총 42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과제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 개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정으로 법령 제·개정 시 해당 조문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게 되었다.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정책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추진 시 사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 정비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요 법령 전문(全文)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이 요청되었다.

이에 사회복지·노동·경제·교육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법령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한 결과, 14개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다.

나. 정책 개선 및 추진 계획

① 건강가정기본법(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건강증진대책 마련 시 성별 특성 고려 부재	○ 가족형태의 다양한 변화와 가족 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 시 동 개선과제 내용 반영예정

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 정착지원과)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기준 마련 시 성별 특성 고려 부재	○ 입법추진시 성별 특성 반영 노력 - 성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③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법은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은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표현이 불분명함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 추진

④ 국민체육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함	○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체육 활동 대책 마련 시 성별 특성 고려 부재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체육시설 건립 시 성별 특성을 고려토록 권고 - 공공체육시설 내 여성 편의시설(놀이방, 아이 돌봄 인력 배치 등)을 설치토록 적극 권장

⑤ 사립학교법(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과)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사립학교 교원 휴직사유 중 아동 입양을 위한 휴직 보장 부재	○ 사립학교 교원 휴직사유 중 아동 입양을 위한 휴직 근거 마련을 위해 사립학교법(제59조제1항) 개정 추진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규명·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환경 유해인자가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 시 성인지 관점 부족 - 환경문제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임신·출산 등에 국한하여 고려함 ○ 환경정책 수립 및 환경 관련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고려 부재	○ 차기종합계획 수립 시에 현행 「환경보건법」제6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신부 등 여성에 대해 고려 할 예정임

⑦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기획재정부 소관 법률)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법은 조세 대상, 조세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 제도가 확립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세 법령에 있어서 특수 관계인의 범위 설정 시 부계혈족만을 기준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관해 친족을 부계·모계 혈족을 구분하여 차등하는 규정 다수 존재	○ 특수 관계인의 범위 설정 시 부계와 모계 혈족을 동일하게 법령 정비 추진

⑧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법은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 보험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특수 관계인의 범위 설정 시 부계 혈족만을 기준으로 하거나, 특수 관계인의 범위에 관해 친족을 부계·모계 혈족을 구분하여 차등하는 규정 다수 존재	○ 특수 관계인의 범위 설정 시 부계·모계 혈족을 동일하게 고려하도록 법령 정비방안 마련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가. 개요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 및 『2012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다수의 부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정책은 보건·복지 증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농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문화·여가 여건 개선,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7개 분야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남녀 간 소득격차 등으로 농어촌 내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농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역할 강화 및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도출이 요청된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에서 50.9%(2010년 기준)를 차지하는 여성을 중요한 노동력이자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4개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다.

나. 정책 개선 및 추진 계획

① 농지담보 노후연금제도 지원 개선(농림수산식품부)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본 사업은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 여성농업인에 대한 노후생활안정 지원에 한계 - 대부분의 농지소유자가 남성이므로 가입자 생존시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은 남성의 연금수령액에 의존 * 여성농업인 특성상 경력증명이 곤란하여 연금가입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여성농업인을 위한 연금지원방법 개선 - ‘농지연금 업무처리 요령’ 지침 개정(‘14년 초)시 농지연금 수령계좌를 가입자 동의 시 배우자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예정

② 취약농가인력지원 강화(농림수산식품부)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본 사업은 사고·질병 및 취약농가에 영농 및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취약농가 기초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도우미·영농도우미 지원은 여성 농업인 수요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조건이 많음 ○ (가사도우미) 지원조건 및 지원일수가 제한적이며 가사도우미의 낮은 처우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조건 : 65세 이상 부부가구 등 중심 * 지원일수 : 연간 12일 제한 * 영농도우미 일당 (52천원)에 비해 가사도우미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활동비(10천원)만 지급 ○ (영농도우미) 연일수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일수 : 연간 10일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도우미·영농도우미 이용 일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도우미) 65세 이상 부부가구 중심에서 경로당으로 지원확대, 실제 이용일수를 분석하여 점차적 확대 예정 * ('12년) 930개소 → ('13년) 1,400개소 * 경로당 가사도우미 최대24일까지 지원일수 확대 - (영농도우미) '14년에 지원일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기재부 협의 예정

③ 소규모 농어업 창업 및 소득화 지원(농촌진흥청)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농촌지역의 창업 및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해 지역농산물에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이를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창업인이 갖는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법률과 문서작성이 창업저해 - 위생관리와 시설 관련 규제에 대한 정보 부재 -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위생관리, 유통,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지원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연구인력, 강소농 지원단, 자문번호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을 교육 및 컨설팅에 적극 활용 ○ 시군센터 가공·창업 담당자 전문교육 등에 중소기업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연계하여 여성 CEO 경영개선 교육 지속 추진 (중기청 협조, '13년 하반기 추진 예정)

④ 농업인 교육훈련(농촌진흥청)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p>본 사업은 실무중심의 현장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농업인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음</p>	<p>○ 여성의 낮은 훈련 참여율 - 여성수혜자 비율 28.9%는 다른 농업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양호한 수치이나 여전히 사업 대상자 비율 51.5%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p>	<p>○ 여성교육생 할당제 도입·시범운영, 여성참여과정 개발·교육환경 개선 정도·여성참여율 및 홍보실적을 평가에 반영 등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13) ○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여성 친화과정 인터넷 강좌 개설(13.4~11월)</p>

3.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가. 개요

2009년 이후 현재(2012.11기준)까지 전국 39개 시군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관련 정책 및 사업현황 등 운영 실태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의 장애 요인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확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지침의 정비방안을 발굴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진행하였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4개의 개선과제가 도출되었다.

나. 정책 개선 및 추진 계획

①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법은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 법령 부재	○ 여성친화도시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추진 - 「여성발전기본법」상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등 마련

②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본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4장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것으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여성과 아동을 고려한 기반시설 배치 규정 부재	○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보행동선계획 수립 시 ‘아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침개정 추진

③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지침』상 여성·아동의 안전 및 범죄예방 관련 내용 부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지침』(4-15-1) 개정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도록명시 예정 - (지침4-15-1)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개요	평가 이전	평가 이후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지침 등에 여성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 관련 규정 부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 도시공원 시설의 안전 및 시설 이용자의 보호 등 범죄예방 조치에 대한 규정 명시 예정

4.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

가. 개요

일상생활에서 성별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한 사항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거환경, 돌봄여건, 건강여건, 이동여건, 여가문화 등 5개 분야 사업에서 무인택배보관함, 안심버스 쉼터, 안심택시, 마을품앗이 센터 등 20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나. 20대 생활체감형 개선과제 주요내용

분야명	분석평가 주요내용	생활체감형 개선과제
주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요구는 여성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도로 높으며 이상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중요한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안전 지역(safe zone) : 마을광장 -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범죄 감소·예방 - 공공 공지에 휴식 공간, 조명 설치 - 운동코스 개발 및 코스 안내 지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범죄 등 증가로 혼자 집에 있을 때 택배 등 낯선 방문객이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 - 특히 여성 또는 아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불안정도가 더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택배보관함 - 주택가 근접 거리 공공기관(주민자치센터 등) 무인택배보관함 - 필요시 야간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야외 화장실, 주거단지 엘리베이터 등의 이용자의 불안정도가 높으며 특히 여성의 불안정도는 더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급 상황 경적 회전등 -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내부, 지하도로 비상벨 설치 - 비상벨과 연결된 경적 회전등 및 안내 표지판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위협예방을 위해 비상벨, CCTV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가시성이 낮아 위험 상황시 찾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벨 형광기등 - 비상벨 주변 형광색 도색으로 가시성 확보 - CCTV 주변 조명 정비 및 안내표지 설치

분야명	분석평가 주요내용	생활체감형 개선과제
이동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근처 야간보행시 여성의 두려움 정도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 야간보행의 두려움은 여성의 이동기회 및 사회활동 기회를 제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길안심 귀가서비스 - 안심귀가 전화 개설 - 자율방법대 차량 또는 도보 동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이용 이동을 위한 안전장치 전무 - 이동동반시 버스이용에 대한 불안정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상버스 및 지하철 안전벨트 - 시외버스 탑승장 어린이용 안전의자 대여 - 시내버스 노약자석 4점식 안전벨트 장착 - 지하철 안전띠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동반 및 유모차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편의 앱 개발 - 공공기관 휠체어 및 유모차 접근가능 시설, 돌봄 시설 정보 - CCTV 및 비상벨 설치위치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객대기공간인 쉼터에 대한 요구가 많으나 대부분 미설치 - 여성과 아동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 정류장은 쉼터설치가 가장 필요하나 설치된 경우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버스 쉼터 - 천장, 가림막, 조명, 의자 - 정류장 보행로 장애물 제거 - 읍면 지역 휴게소 대용 버스 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시이용시 여성의 불안정도가 높음 - 특히 젊은 여성일수록 불안정도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택시 - 택시이용자에게 차량번호 및 위치정보 공개 - 지자체·지역택시조합 MOU - 스마트폰 앱 연계된 QR코드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보안관 제도, 성범죄신고 앱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지하철 성범죄 지속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CCTV 설치차량 - 지하철 객실 내 CCTV 설치 차량 지정 (1개 칸) - 비상인터폰 및 CCTV 설치 안내문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자가보유율은 낮으나 대중교통 수단 확충은 어려움 - 버스 배차간격 및 버스노선, 환승에 대한 읍면지역 거주자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마을순환버스 - 수요 대응형 여객운송사업(DRT)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설치 또는 주요기관 공공 순환버스 설치

분야명	분석평가 주요내용	생활체감형 개선과제
돌봄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시설 이용자 중 미취학 아동 부모 특히 여성의 만족도가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돌봄지원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건축·리모델링 대상 1000㎡ 이상 규모의 기관 1층 돌봄지원 시설 설치 - 영유아 놀이 공간, 임신부 휴게실 겸 수유실, 다목적 화장실, 유모차 보관 및 대여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부담 등으로 인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저조 ○ 취학전 자녀 중 어린이집 등에서 퇴원 후 홀로 있는 아동은 19.2%이며 이중 대부분은 맞벌이 가구아동 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품앗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생활권 단위 커뮤니티 공간- 어울림과 돌봄공간 - 프로그램 - 동네 밥상(나홀로 아동, 지역 여성이 함께하는 점심), 작은 토론회 등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보육시설 전체 공급율은 50% 정도이나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대부분이 읍·면·동 임 - 특히 농촌지역은 여성이 자녀양육의 주 담당자이며 농번기에는 일과 양육부담이 가중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마을 방문 육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집 미설치 지역 육아 서비스 차량 운행 - 유아놀이교실, 장난감 대여, 부모교육 등
건강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는 모든 시민의 유산소활동 및 근력·뼈 강화를 위한 신체활동을 권고하나, - 생활체육 활동경험은 여성이 현저히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선호 반영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 종목 다양화, 대중교통 연결성, 여성 편의 시설 - 아동프로그램 동반개설, 야간 프로그램, 여성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여성들은 아이와 지속적으로 밀착되어 있어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얻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여성 힐링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시설 및 주민자치센터 - 근육활동과 정서적 안정 연계프로그램, 춤 테라피 - 영아 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명	분석평가 주요내용	생활체감형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 우울감은 산모의 약 85%가 겪고 있음 - 일부 보건소에서 산후우울증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나, 상담서비스까지는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 정신보건센터 또는 지역 비영리법인 정신건강증진 사업 상설화 - 상담 및 예술 또는 움직임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년기 여성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급격한 몸의 변화와 정서적·심리적 변화가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년기 여성 환경 프로그램 - 평생학습센터(진단 및 교육) 또는 보건소 상설강좌(진단 및 운동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으나 야간 및 휴일이용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산모 도움방 개설 - 장애인 어울림 센터에 산모 도움방 (2~3인용) 설치 및 24시간 도우미 배치 - 산전후 6개월 미취학 자녀 육아 도우미 - 보건소 방문 예방접종
여가문화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의 경우 비고용상태인 경우가 많아 여가시간이 많으나 비용부담으로 77.5%가 TV시청이 유일한 여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 여행바우처 이동지원 - 여행바우처 사용시 여행용 차량 및 기사 무상제공



IV

성과와 과제

1. 총평	147
2. 성과	155
3. 과제	169



IV. 성과와 과제



1. 총평

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2012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행으로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최초로 이루어진 의미 있는 해이다. 2012. 3. 16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안(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되었다.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이 추진된 법령안 8,464개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졌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원안동의’는 5,445개(64.3%), ‘개선의견’은 947개(11.2%)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제시된 개선의견 947개 중 중앙행정기관은 89.4%, 지방자치단체는 47.8%를 법령안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사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별 특성반영 항목에서 많은 부분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성별 균형 및 성별분리통계의 작성에 관한 것이다. 정책결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 시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고려 조항을 해당 법령에 명문화하여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전행정부의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의하면 각 부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상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4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는 경우, 검토의견 통보를 통해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성별분리통계의 작성은 성인지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성별분리통계를 생산·활용하도록 제·개정되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인지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 밖에 다양한 분야, 다양한 내용으로 법안 마련 시 성인지적 관점의 결여로 미비하였던 법령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하여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개선사례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정책에 있어 성인지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례(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6호, 제6조제3항제4호),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계획수립 단계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성인지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사례(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에 빈곤 여성 가구주를 비롯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도 수혜대상자로 포함하도록 개선한 사례(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4호),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대상에 여성귀농인 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선하여 성인지적 지원사업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한 사례(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제8조제5호), 수영장 이용에 있어서 성별특성으로 고려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도록 사례(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조례 제11조제6호 등 다수 조례), 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에 장애인, 노인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임신부만 제외되어 있었던 조항을 임신부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한 사례(당진시 주차장 조례 제4조제14호), 장애인콜택시 근무자에 대해 성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개선한 사례(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남녀차별적인 구법의 잔재를 정비하지 못한 제·개정 법령에 대해서도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통하여 시정·개선이 이루어졌다. ‘출가녀’ 개념 및 합리적 근거 없는 결혼한 여자에 대한 구분취급, 친인척 범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등을 두었던 조항에서 차별적

개념의 삭제 및 성평등한 조항으로의 개선(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제1항제2호), 호주제도의 폐지 및 호적법 폐지로 법에서 폐지된 '본적' 개념을 사용한 법령조문을 '등록기준지'로 수정 개선한 사례(광주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1제1항)가 그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반영하여 성평등한 입법안을 만들어낸 지난 일년간의 경험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성 주류화를 위한 첫 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에 자신들의 개선사례 내지 우수사례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제정을 들고 있다. 2013년 5월 말 현재 1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나.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시행에 따라 2012년에 처음 이루어졌다. 2012년 수립한 88개의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3개 부처 27개 계획, 8개 광역자치단체 23개 계획, 26개 기초자치단체 37개 계획, 1개 시·도 교육청 1개 계획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검토의견 통보 결과를 보면, 88개 계획 중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통보한 계획은 47개(53.4%), 개선의견을 통보한 계획은 22개(25.0%)이다. 성별 연관성이 낮아 체크리스트 단계에서 제외되거나 중도에 계획 수립이 중단된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을 통보하지 않았다.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통보한 47개 계획의 기관 유형별 현황은 중앙행정기관 24개 계획, 광역지자체 15개 계획, 기초지자체 8개 계획이다.

개선 의견이 통보된 22개 계획 중 86.4%에 해당하는 19개의 계획이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계획안을 수정하였다.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한 실적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바, 중앙행정기관은 개선 의견을 통보 받은 2개의 계획에 대하여 성별통계 활용, 지침 개선,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 여러 측면에서 제안된 개선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역시 개선의견 수용 정도가 높은바, 7개 계획에 대한 개선의견 중 6개(85.7%)를 기초자치단체는 13개 계획에 대한 개선의견 중 11개(84.6%)의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계획안을 개선하였다.

검토의견 통보를 통하여 계획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지침과 정책수행 방식의 개선, 성별통계 생산,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였다. 둘째, 광역자치단체 소관 계획 역시 정책수행 방식의 개선, 성별통계 생산, 여성인력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였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소관 계획은 주로 정책수행 방식 개선, 성별통계 생산·활용과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인 개선사례를 보면, 여성의 보행안전 등을 위해 주요 도로 및 도시 공간에 범죄 예방 설계를 적용하고 아파트단지 안전 지대화 방안을 교통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영유아 동반자가 이동에 어려움을 갖는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통약자용 좌석에 임신부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자도 포함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석’을 지정·운영하도록 개선한 『양주시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성별분리통계 분석을 통해 환승시설 설치 시 여성과 남성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 및 요구의 차이가 반영되도록 개선한 『화성시 지방 대중교통계획』, 공원 조성 시 여성 및 가족친화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체육시설 추진 시에는 여성과 노약자 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을 반영토록 개선한 『대전광역시 제4차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여성운전자 채용 및 근무환경 지원 업체에 대한 우대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한 『경기도 화성시 지방 대중교통계획』 등을 들 수 있다.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해당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성인지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중점과제를 해당 분야의 성별 요구를 수용한 과제로 개선하거나 성별 요구를 반영한 신규 과제를 제안하여 계획 추진이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헌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계획에 대한 개선의견은 첫째, 계획이 제안한 전략 과제 및 세부정책 중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키거나 여성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개선, 둘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신규 과제 제안을 동시에 포함하여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의견의 제안과 수용은 대상 계획 분야에 있어서의 성별 요구에 대한 사전 연구 및 정책 사례의 축적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 황사, 석면,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계획은 성별로 다른 신체적 여건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성 인지적 연구의 부족으로 관련 계획에 대한 검토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대한 개선의견을 계획수립 기관이 수용한 정도가 높다는 것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활성화를 통해 성인지적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물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개선의견 수용률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개선의견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계획의 사업 단위가 상대적으로 작고, 추상 수위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개선의견 수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향후 기초자치단체 분석평가 책임관의 성인지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2012년 총 6,240개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시되었다. 6,240개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원안동의 45.0%, 개선의견 37.7%가 통보되었다. ‘원안동의’를 제시하는 경우는 성 차별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되었거나 또는 성 차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성별분리통계의 생산, 수혜의 성평등성,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성평등 교육실시 등 각 사업의 내용에 맞춰 적절한 사업 개선안을 제시한 경우들이었다. 한편 개선의견 수용률을 보면, 통보된 개선의견 2,350개 과제 중에서 1,794개(76.3%)를 수용하였다. 주요 반영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책수행방식의 개선(46.6%)이며, 다음으로는 성별통계 생산·활용(16.9%)이었다.

2012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공무원이 자체평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개선 사항과 여성가족부 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지방자치단체)이 수행기관에 제시하는 검토의견 통보서의 개선사항 내용이 그것이다. 검토의견 통보서 상의 개선의견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개선의 내용을 업무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기관 담당 공무원이 함께 검토하면서 개선사항을 보완할 뿐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이 소속해 있는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정책개선에 대해 더 많은 권한과 책임성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행한 분석평가사례들을 정책개선 사항 중심으로 유형화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여성참여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한 ‘인적자원육성 관리 사업’의 경우 교육훈련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별로 분석함으로써 여성참여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둘째, 자격 요건에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개선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국립공원지킴이 운영지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즉, 자격요건에 여성과 남성 모두 지원이 가능하지만 ‘안전 지킴이 분야 지원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를 추가하고 있어 남성에게만 지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여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한 기관들은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성과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개인 평가시 출산·육아휴직(휴가)자의 근무일수를 정상근무자와 동일하게 평가하고, 다면평가(비계량평가)시, 출산 육아휴직자는 본인의 실제 취득점수와 다른 소속 직원들의 평

균점수 중 큰 점수를 최종 점수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결과 하위 5% 이내로 평가받은 직원의 여성비율은 2010년 60%에서 2012년 42%로 감소하였다. 일·가정 양립의 확산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활용했던 주목할 만한 사례는 서울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 이행성과 평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민간부문에서 일·가정 양립정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는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양성평등 추진성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도록 한 것인데, 평가지표를 보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관의 노력사항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만들어 전체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넷째,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한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공공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의의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영등포구는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청소작업 수행 시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차이에 따른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작업복 제작이 필요하며, 성별 특성에 따른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다섯째,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교육 운영방식을 개선한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방방재청은 ‘전담의용소방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일부 시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 정복규정에서 여성의 하의를 치마로 제한한 사항을 “치마 또는 바지”로 수정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표준 조례(안)」 개정 시 반영하였다. 이는 여성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성별고정관점을 개선한 경우이다. 부산광역시 금정구는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여성청소년이 남성청소년에 비해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2013년에는 재난안전순회교육 시 참여 학교별 신청을 받으면서 여자중학교를 우선적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또한 교육내용에서는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안전교육내용을 추가하고 호신술, 자기방어, 응급도움 요청 등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업수행 방식의 변화는 정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폭력 등에 대한 여성의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2012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4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총 42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원년에 수행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적절한 분야를 대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정책개선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첫째, 사회복지·경제·교육 등 주요 분야의 법령 전문(全文)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법령 정비 방안을 도출하여, 해당분야의 법령 제·개정 시 도출된 개선과제를 사전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특정평가하여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상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2012년 39개 도시로 확산된 여성친화도시의 관련법령 및 지침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운영기반 구축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여성의 요구가 높은 안전분야 등에서 20대 생활체감형 개선과제를 발굴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을 성인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2. 성과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1)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무화 장치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법령 심의·의결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동 법에 의해 2012년에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법제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법령안의 심사) 제1항을 개정(2012. 10. 4)하여 법령안 심사요청 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시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3조(사전협의)에 입법예고전에 분석평가책임관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해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부산광역시 및 자치구 또한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사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인천광역시 연수구도 「법제사무처리규칙」 제5조(방침결정 및 사전협의)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방침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심사과정에서 사전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례 제·개정안의 성 차별 요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표 IV-1 법령 제·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실시 의무화 규정 사례

구분	기관명	조례·규칙명	개정시기
중앙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2012.10. 4
광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2012. 8. 9
기초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규칙	2012. 7.11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법제업무 운영규칙	2012.12.28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법제업무 운영규칙	2012. 7.16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구 법제업무 운영규칙	2013. 2.15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법제업무 운영규칙	2013. 1.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법제업무 운영규칙	2012.10.23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2012.10.26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법제업무 운영규칙	2012. 9.21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규칙	2012.11.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법제업무 운영규칙	2012.12.1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법제업무 운영규칙	2012.10.10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법제업무 운영규칙	2012. 7.16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제업무 운영규칙	2013. 3.15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법제업무 운영규칙	2012.11.16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법제업무 운영규칙	2012.12.26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법제업무 운영규칙	2012. 8.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2012.11.23

2)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2012. 3. 16) 원년을 맞아 변화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를 제정하였다. 2012년 3월 16일 이후부터 2013년 5월 말 현재까지 광역자치단체 6개 기관, 기초자치단체 11개 기관이 조례를 제정하였다. 해당 기관을 보면, 광역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남도이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광주광역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군·진천군, 충청남도 아산시, 전라남도 목포시가 있다. 광주광역시가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개 자치구도 모두 제정하는 등 법적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조례제정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명시된 주요조항 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조항을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 예를 들면, 분석평가 대상, 분석평가의 고려사항, 분석평가의 시기, 분석평가서 작성, 분석평가결과 반영,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및 임무, 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종합분석보고서 및 정책개선 실적 의회 제출, 분석평가 교육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는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 참여조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롭게 변화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기반을 공고하게 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분석평가 결과반영 강화, 공무원 교육 강화, 시민참여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2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 현황

구분	기관명	조례명	제정 시기
광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3. 5.2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2012.11.1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2. 5.15
	경기도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2. 8. 1
	충청북도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2.12.28
	전라남도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2.12.27
기초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2.10.31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2. 7.10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2. 8. 9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2. 8.10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2.11. 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2.10. 2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3. 1.11
	충청북도 청원군	청원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3. 3. 5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3. 1. 9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2.11. 5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2012.10. 8

자료 : 차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 검색(2013. 5.28)

나. 검토의견 통보절차 도입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책무성 강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성과 중의 하나는 대상과제 선정에서부터 정책개선 결과반영에 이르기까지 추진절차를 명료화하고,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절차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먼저 추진절차를 간략히 보면, 대상과제 선정 ⇒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 검토의견 통보(원안동의, 개선의견) ⇒ 개선의견 통보시 반영결과 제출(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익년도 2월)의 순서로 하도록 했다.

2012년 이전의 절차와 비교했을 때 의미 있는 점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앙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통보하고, 각 기관(또는 부서)은 그에 대한 반영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공식화 했다는 것이다.

한편, 법령, 계획, 사업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절차 도입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유는 i) 분석평가서를 작성한 공무원에게 자신이 작성한 분석평가서가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는 점이다. 2012년 이전에는 공무원이 분석평가서를 작성·제출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분석평가서 작성 담당자는 본인이 분석평가를 적절하게 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ii) 만약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분석평가서가 충실하게 분석되지 않았거나, 정책개선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정책개선 의견을 통보해서 이를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평가서 작성이 미흡한 경우라 할지라도 검토의견 통보를 통해서 정책개선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정책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2012년도에 추진한 법령, 계획, 사업 분석평가서의 경우, 분석평가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검토 의견을 통해서 정책개선이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검토의견 통보 책임을 기관 내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책임과 권한 및 자율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자체 추진 역량을 키우면서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다. 분석평가 대상정책 확장 : 사업 중심에서 법령, 계획, 사업으로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성과는 그 동안 사업 중심의 분석평가에서 머물러 있다가 2012년에는 법령, 계획, 사업으로 대상정책이 확장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법령과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시행 첫해인 2012년에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분석평가는 290개 기관이 참여하여 8,464개를 추진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것은 법령 제·개정안이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리고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계획 88개에 대해서도 분석평가가 이루어졌다. 계획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좀

더 긴 안목으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것인 만큼 국민의 삶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이 어떠한지를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성차별 가능성을 해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표 IV-3 2012년 기관유형별 과제 추진 결과

(단위: 개(%))

구 분	전체		법령		계획		사업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전 체	302	14,792 (100.0)	290 (100.0)	8,464 (100.0)	48 (100.0)	88 (100.0)	288 (100.0)	6,240 (100.0)
중 앙	42	1,270 (8.6)	35 (12.1)	1,099 (13.0)	13 (27.1)	27 (30.7)	36 (12.5)	144 (2.3)
광 역	17	1,845 (12.5)	17 (5.9)	873 (10.3)	8 (16.7)	23 (26.1)	16 (5.6)	949 (15.2)
기 초	227	11,358 (76.8)	222 (76.6)	6,234 (73.7)	26 (54.2)	37 (42.0)	227 (78.8)	5,087 (81.5)
교육청	16	319 (2.2)	16 (5.5)	258 (3.0)	1 (2.1)	1 (1.1)	9 (3.1)	60 (1.0)

또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매년 양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2배나 증가하여 총 6,240개 사업을 분석평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증가가 곧 분석평가의 질 담보와 정책개선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양적증가만큼 분석평가의 질이나 정책개선이 함께 담보되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정책개선 반영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라. 법령·계획·사업의 성 인지적 개선 증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도입의 목적은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있다.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는 이러한 제도 도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근거는 첫째, 법령, 계획, 사업 분석평가서 검토결과 개선의견 수용률이 비교적 양호하다. 수용률은 기관 유형별, 대상정책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의견 수용률은 80% 정도 수준이다. 이것은 계획,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의 정책개선 의견을 각 기관이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4 개선의견 수용률 현황

(단위: %)

구분	법령	계획	사업
전 체	49.8	86.4	76.3
중 앙	89.4	100.0	92.7
광 역	52.5	85.7	55.0
기 초	47.0	84.6	80.8
교육청	30.0	-	28.6

둘째, 각 기관이 종합분석보고서를 통해서 자체 추천한 정책개선 우수사례는 총 444개로 법령, 계획, 사업 등 각 대상정책별로 우수사례가 추천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2012년 처음으로 실시된 법령과 계획에 대해서도 정책개선 우수사례가 추천되었다.

표 IV-5 평가수행기관의 정책개선 사례 추천현황

(단위: 개)

구분	법령	계획	사업	계
전 체	92	7	345	444
중 앙	8	2	40	50
광 역	11	2	31	44
기 초	72	3	268	343
교육청	1	-	6	7

셋째, 정책개선 내용면에서 볼 때, 법령, 계획,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내용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먼저 법령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성별특성반영과 관련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균형 및 성별분리통계의 작성에 관한 것이다.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시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해당 법령에 명문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리고 성별분리통계의 생산은 성인지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라는 면에서 이의 생산을 해당 법령에 명시한 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표 IV-6 정책개선 대표사례 예시(법령)

구분	정책개선 대표사례명	기관명
중 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경찰청
기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 「광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 「용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당진시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 「당진시 주차장 조례」 ▪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중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광주광역시 북구 - 경기도 고양시 - 경기도 평택시 - 경기도 광주시 - 경기도 용인시 - 충청남도 당진시 - 충청남도 당진시 - 전라남도 화순군

주 : 본문 II장. 5절에 수록된 사례 목록

계획에 대한 주요 정책개선 사례로는 i) 계획안이 제안한 전략 과제 및 세부정책 중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키거나 여성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개선, ii)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신규 과제를 추가로 제안한 사례로 나타났다.

표 IV-7 정책개선 대표사례 예시(계획)

구분	정책개선 대표사례명	기관명
광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4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성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제2차 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 양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2012~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주 : 본문 II장. 5절에 수록된 사례 목록

사업에 대한 정책개선 사례는 법령이나 계획에 비해서 다양했다. 그 중에서도 해당 사업에 여성참여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사례, 자격 요건에서 여성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관련규정을 개선한 사례, 소속기관의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한 사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개선한 사례, 여성과 남성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교육 운영방식을 개선한 사례 등이 주를 이루었다.

표 IV-8 정책개선 대표사례 예시(사업)

구분	정책개선 대표사례명	기관명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적자원육성관리 사업 국립공원지킴이 사업 고용창출지원 사업 세정보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성과평가체계 개편 전담의용소방대확대 사업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시범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의료기기 명예지도원 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C입주기업지원 사업 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 이행성과 평가 광주야구경기장 건립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구분	정책개선 대표사례명	기관명
기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시중후군 관리사업 ▪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 안전문화운동(재난안전 순회교육) ▪ 정신보건센터운영(우울증 예방사업) ▪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 ▪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부산광역시 금정구 - 경기도 시흥시 - 충청북도 증평군 - 경상북도 문경시

주 : 본문 II장, 5절에 수록된 사례 목록

이 외에도 4개 과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총 63개의 개선과제 및 정책 개선 권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각 해당기관에 개선권고 하였다. 사회복지·경제·교육·문화·환경 등 주요 분야의 법 전문(全文)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분야의 법령 제·개정 시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근거법령 정비방안 및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여성친화 지정도시의 책무성이 강화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마.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확대를 통한 제도 이해 및 분석평가 역량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석평가 주체인 공무원의 제도 이해 및 분석평가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분석평가 수행기관에서는 공무원이 본격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한 2005년 이래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목적은 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석평가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정책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다.

특히 2012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첫해였으므로, 새롭게 변화된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 해이기도 하다. 법 제정의 의미, 제도 변화의 목적, 기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와의 차이, 분석평가 대상정책 확대 및 그에 따른 분석평가 방법의 이해 등이 필요하였다.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시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평가 대상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대상 범위 또한 확대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2012년에는 사업 담당자 위주로 교육하던 것에서 나아가 법령 제·개정 담당자, 3년 이상 주기의 법정 계획 수립 담당자에게까지 교육대상이 확대되었다.

둘째,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담당 역할별로 교육대상을 구분하고,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였다. 즉, 기관 내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기관담당부서 관리자를 대상으로는 한국사회 성평등 수준, 성 인지 정책 현황과 전망,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리더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관담당 실무자 대상으로는 과제 선정에 도움이 되는 대상과제의 성별 관련성 찾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이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 사용법, 대상사업 유형별 작성 실습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또한, 법령, 계획, 사업담당자 교육에서는 성 인지 관점의 이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이해, 대상사업별 분석평가서 작성 실습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프로그램은 2012년에 새롭게 변화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이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었으며, 대상정책별로 분석평가서 실습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셋째, 공무원의 교육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위탁교육, 자체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위탁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교육형태이다. 자체교육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직장교육,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내부 강사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찾아가는 교육은 여성가족부에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희망기관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2012년에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교육 형태를 활용하여 실시한 결과, 총 42,91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교육유형별로는, 위탁교육 1,831명, 자체교육 38,553명, 찾아가는 교육에 2,532명으로 자체교육 실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631명, 광역자치단체 9,125명, 기초자치단체 32,783명, 시·도 교육청 37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교육 유형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반 공무원들에게도 최대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

넷째, 교육실적 중 직급별 구분이 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5급 이상이 287명, 6급 이하가 1,4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이 주로 6급 이하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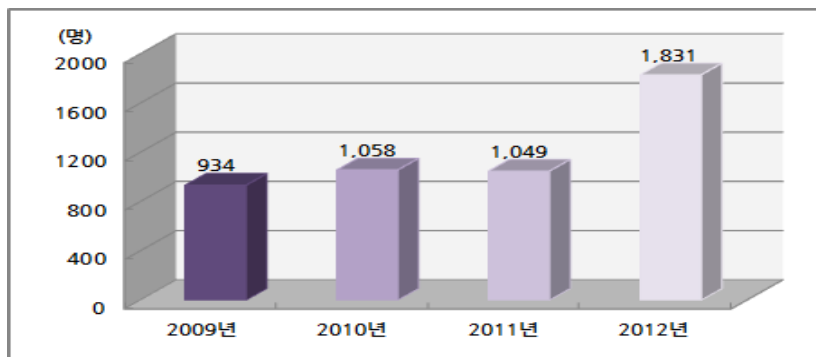
표 IV-9 직급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적(여성가족부 주관 위탁교육)

(단위: 명)

구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 체	287						1,427					
중 앙	11	12	12	2	55	44	31	28	24	13	1	11
지자체	0	0	32	9	57	21	132	164	214	344	141	210
교육청	0	0	7	3	14	8	14	24	20	41	5	10

주 : 일반직 공무원(특정직 제외)

그 동안 여성가족부가 주관해 온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09년 934명, 2010년 1,058명, 2011년 1,049명에서 2012년 1,831명으로 지속적으로 참여인원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분석평가 대상정책 확대에 따라 교육대상 참여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



[그림 IV-1]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적(여성가족부 주관 위탁교육)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성과는 교육대상 범위가 법령, 계획 담당자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뿐 아니라 2012년에 담당하지 않았던 일반 공무원도 다수 참여하였으며, 지자체의 경우 자체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교육 유형을 다양화하여 수요자 요구에 대응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교육참여자가 양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분석평가 제도의 변화내용을 공무원들에게 인지시키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점이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원년이었던 2012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16개 광역시도 지역에 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²⁾ 이는 2011년 12월 기준, 전국에 9개 기관(중앙, 서울, 경기, 충남, 경북, 강원, 부산, 전남, 광주)을 지정·운영하던 것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또한 각 센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전문인력 1명을 지원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은 각 센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였다. 기본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법령 제·개정안과 계획 및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에 대한 컨설팅 및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제공, 제도 및 정책개선 사례 홍보, 관련 교육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대표전화(1899~3855)를 개설하여 수시로 상담·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2012년에 중앙 및 16개 지역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운영하였다는 것은 큰 성과이다. 전국에 센터 지원체계가 갖추어지기 전에는 센터가 지정·운영 되던 지역의 분석평가 참여과제수와 공무원의 교육 참여실적이 많았고,

2) 센터 지정현황은 본문 I장 참조

분석평가 지표별 분석의 충실도 역시 센터가 없는 지역에 비해 훨씬 양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16개 광역자치단체내에 센터의 지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원 기관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구축되었다.

3. 과제

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관리직 공무원 교육 강화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교육은 2005년에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왔다. 2012년에는 교육대상 범위의 확대, 교육실시 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접근성 개선으로 공무원들이 새롭게 바뀐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의 교육 참여 실적은 낮게 나타났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교육실적을 보면, 위탁교육은 37개 기관 공무원 277명이 참여 하였으며, 찾아가는 교육은 8개 기관 공무원 354명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기관별 자체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광역자치단체는 위탁교육의 경우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총 134명이 참여하여 기관별 평균 약 8명이 교육을 받은 셈이다. 특히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8,459명이 참여하여 기관별 평균 약 700명이 참여하였다. 찾아가는 교육은 3개 기관에서 공무원 532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위탁교육 1,265명, 자체교육 30,094명, 찾아가는 교육에 1,424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자체교육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매우 소극적인데 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교육에 보다 적극성을 띄는 이유는 정부업무합동평가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 교육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 관련이 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직급별 교육실적을 보면, 주로 6급 이하 공무원에 집중되어 있다. 2012년 여성가족부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한 교육 실적 중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은 287명, 6급 이하 공무원은 1,427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고위·관리직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참여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책임관의 역량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절차는 2012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써 중앙은 여성가족부가, 지자체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분석평가책임관의 역할과 책무성이 커진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예산이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다. 2012년 분석평가 추진결과를 통해 판단해 보면, 이러한 인적, 재정적 역량과 추진여건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분석평가책임관의 추진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예를 들면, 검토의견 통보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으며, 분석평가서 작성이 미흡한데도 검토의견에 개선의견을 충실하게 작성하지 않고, '원안동의'를 한 사례, 지침의 검토의견통보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약식으로 변형해서 통보한 사례 등이 상당수 있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정책이 법령, 계획,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분석평가책임관 입장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는 연중 상시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되었다. 그러므로, 성 인지적 관점으로 검토의견 통보서를 작성하고 기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반을 관리할 전담인력이 확보가 필요하다. 검토의견 통보절차 도입의 의의를 살리고, 검토의견 통보서가 성 인지적 관점에서 충실하게 작성·통보될 수 있도록 인적 역량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분석평가책임관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검토의견 통보 절차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석평가책임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내실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의거해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분석평가 하는 것이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에 관한 성별 현황, 성별 만족도, 성별 요구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 매우 중요한 평가 유형이므로 제도 본래의 목적을 살리고 정책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제도개선 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각 부처의 주요정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12년에 4건에 불과한 대상과제 수를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대상과제 발굴·선정 단계부터 분석평가 추진 과정, 정책개선 반영까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 인지적 연구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도출된 정책개선 과제가 해당기관의 관련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라.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16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에서부터 분석평가서 작성 지원,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시행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해야 할 대상정책이 사업위주에서 법령, 계획으로까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역할도 그 만큼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역량 강화 또한 필요하다.

현재, 중앙 및 지역 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는 여성가족부의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과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사업 운영 안내』를 통해서 마련되었다. 그런데, 센터가 지원 기능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첫째,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지역센터들 간의 연계 강화 및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지역 센터들은 지정·운영 기간의 차이가 있으며, 인력구성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앙센터는 운영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 센터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총괄적 관리·지원을 하는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센터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컨설팅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된다. 특히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사업 관련 예산 및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부 록

〈부록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175
〈부록 2〉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84
〈부록 3〉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185
〈부록 4〉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양식	187
〈부록 5〉 법령·계획·사업 정책 개선 사례	207



부록 1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

법 률	시 행 령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p>	<p>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 률	시 행 령
<p>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분석평가의 실시</p> <p>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p> <p>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법 률	시 행 령
<p>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고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p>	<p>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3조(분석평가 지침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방법 등 분석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 법제처의 법령 심사 전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법 률	시 행 령
<p>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분석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p>	<p>해당 계획의 수립 전</p> <p>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p> <p>제5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p>제6조(분석평가결과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분석평가의 결과 및 그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제7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p>

법 률	시 행 령
<p>에게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분석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정책개선 권고) ①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라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정책개선의 절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의 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개선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종합분석 보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법 률	시 행 령
<p>제3장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p> <p>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p> <p>①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3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무총리실·법제처에 소속된 제12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 2.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8명 이내 <p>③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p> <p>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회의 위원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p>

법 률	시 행 령
<p>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분석평가 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분석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p>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3조(분석평가 교육)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p>

법 률	시 행 령
<p>제16조(분석평가 자문) ①여성가족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분석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p> <p>②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제17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①여성가족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연구기관을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4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립대학의 소속 연구기관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p>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석평가에 대한 상담·자문 2. 대상 정책 선정 및 분석평가결과 반영 등에 관한 상담·자문 3. 그 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③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연구기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④여성가족부 장관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

법 률	시 행 령
<p>제18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부 칙 〈법률 제11046호, 2011.9.1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은 이 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으로 본다.</p>	<p>경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분석평가 또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 수준 3. 운영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분석평가의 적용례) ①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법 예고하는 법령안부터 적용한다.</p> <p>②제4조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p> <p>③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3년도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안의 단위사업부터 적용한다.</p>

부록 2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

가. 설치

-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둔

나. 기능

-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0조 및 영 제11조)

가.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여성가족부 차관
- 위원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무총리실·법제처의 분석평가책임관
 -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8명 이내)

나. 임기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다.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부록 3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Ⅰ. 성별 구분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Ⅱ. 성별 고정관념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5.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Ⅲ. 성별 특성 반영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Ⅰ.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①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2. 성별 요구도	②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③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④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Ⅱ. 전략 및 중점과제	3. 성별 형평성	⑤ 자원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⑥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4.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⑦ 법령 반영 계획
		⑧ 예산 반영 계획
		⑨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주 : 비전과 목표는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의미하며, 전략 및 중점과제는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의미

주 :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②~④)은 통합 작성 가능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I.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①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②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③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④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⑤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II.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3. 법령	⑥ 법령 반영 계획
	4. 예산	⑦ 예산 반영 계획
	5. 사업	⑧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주 :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①~③)은 통합 작성 가능

부록 4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양식
1. 법령가. 체크리스트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구분	제정()	개정()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 (일간)	
	입법예고	~ (일간)	
	법제처 심사*	~ (일간)	
붙임 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세부 평가항목			
제외 법령	<input type="checkbox"/> 기관운영·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성평등기본조례, 여성친화도시조성조례 등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은 분석평가 대상			

나. 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대상 정책당 11p 내외로 작성

○ 법령명 :

I. 개 요

제·개정 목적

○

○

제·개정 주요 내용

○

○

II.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1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성별 구분 조항 개선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해당 조항>

○

2. 성별 구분 조항 필요성

 <분석 근거> <해당 조항>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분석 근거> <해당 조항 개선안>

제 · 개정안	개선안

2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해당 조항>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분석 근거>

<해당 조항>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분석 근거>

<해당 조항 개선안>

제 · 개정안	개선안

3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해당 조항>

○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분석 근거>

○

○

<해당 조항>

○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분석 근거>

○

○

<해당 조항 개선안>

제·개정안	개선안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급:
	전화번호:	

2. 계획

가. 체크리스트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계획)			
계획명			
구분	신규 수립()	재수립()차	
근거 법령			
소관 부서	주관기관 및 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관계기관	부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계획 수립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
계획안 마련		~	(일간)
위원회 상정 및 의결		~	(일간)
붙임 자료	1. 계획(안) 2. 관련 연구결과물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계획	<input type="checkbox"/>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 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나. 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계획)

※ 대상 정책당 11p 내외로 작성

○ 계획명 :

I. 개요

비전과 목표

○ ※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기술

전략 및 중점과제

○ ※ 계획의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기술

II. 비전과 목표

1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분석 근거>

○

<해당 계획 개선안>

○

Ⅲ. 전략 및 중점과제

1 성별 요구도

※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②~④)은 통합 작성 가능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해당 계획 개선안>

○

3.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해당 계획 개선안>

○

4.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해당 계획 개선안>

○

2 성별 형평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5. 자원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자원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분석 근거>

○ ※ 사업명 및 예산 규모 기재

<해당 계획 개선안>

○

6.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분석 근거>

	2010년	2011년
전체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해당 계획 개선안>

○

3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세부 평가항목	해당 계획 개선안
7. 법령 반영 계획	
8. 예산 반영 계획	
9.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급:	
	전화번호:	

3. 사업

가. 체크리스트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사업)				
사업명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담당자	부서명: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붙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단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1단계	제외 사업	<input type="checkbox"/>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단계	대상 사업	<input type="checkbox"/> 인적 대상 사업 - 예)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치·개선 사업 - 예) 공원, 도로, 주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그 외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 예) 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나. 분석평가서 작성 양식

(기관명) 성별영향분석평가서(사업)

※ 대상 정책당 11p 내외로 작성

○ 사업명 :

I. 개 요

사업 목적

- ※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사업목적 기재
-

추진 근거

○

주요 사업 내용

- ※ 사업 계획서 상에 기재된 주요 사업 대상, 세부 사업명 및 사업 내용 등 기재
-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2011년(A)	2012년(B)	증감(B-A)

I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1 성별 요구도

※ 사업의 성별 요구도의 세부 평가항목(①~③)은 통합 작성 가능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 남녀의 사회문화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해당 사업 개선안>

○

2. 남녀의 경제적 위치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해당 사업 개선안>

○

3. 남녀의 신체적 차이(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분석 근거>

○ ※ 관련 통계가 있을 경우 활용 제시

<해당 사업 개선안>

○

2 성별 형평성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분석 근거>

	2010년	2011년
전체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

<해당 사업 개선안>

○

5.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도 반영

<분석 근거>

○ ※ 사업명 및 예산 규모 기재

<해당 사업 개선안>

○

Ⅲ.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세부 평가항목	해당 사업 개선안
6.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7. 예산 반영 계획	
8.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소관 부서 및 연락처

기관/부서명		
부서장	성 명:	/직급: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직급:
	전화번호:	

4.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양식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정 책 명	※ 법령명, 계획명, 사업(과제)명 기재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년 월 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종합 검토 의견	※ 원안동의, 개선의견으로 구분하여 통보 ○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년 월 일까지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여성가족부 장관 (담당자/연락번호 : 000/02-2075-0000)</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5. 법령·계획·사업의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 양식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정책명	※ 법령명, 계획명, 사업(과제)명 기재	
소관부서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요 분석평가 내용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검토의견 반영 결과		
년 월 일 기관명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6. 법령·계획·사업의 종합 결과 보고 양식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결과 보고																					
관리번호*																					
소관부서	기관명																				
	작성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붙임자료	1. 법령·계획·사업별 체크리스트 작성 목록 및 체크리스트(전체) 2. 법령·계획·사업별 분석평가서 작성 목록 및 분석평가서(전체)																				
I. 분석평가 추진 현황 (총괄)	<input type="checkbox"/> 분석평가 추진 총괄표 (단위: 건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th> <th style="width: 15%;">법령</th> <th style="width: 15%;">계획</th> <th style="width: 40%;">사업</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 전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 제·개정 법령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 기본계획 수립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 (중앙성과관리시행 계획 관리과제 수 (지자체)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 사업 수</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2. 분석평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원안동의</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개선의견</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영결과</td> <td></td> <td></td> </tr> </tbody> </table>				법령	계획	사업	1. 전체	※ 제·개정 법령 수	※ 기본계획 수립 수	※ (중앙성과관리시행 계획 관리과제 수 (지자체)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 사업 수	2. 분석평가	원안동의			개선의견			반영결과		
		법령	계획	사업																	
	1. 전체	※ 제·개정 법령 수	※ 기본계획 수립 수	※ (중앙성과관리시행 계획 관리과제 수 (지자체)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단위 사업 수																	
	2. 분석평가	원안동의																			
개선의견																					
반영결과																					
<input type="checkbox"/> 총평(※개별 정책이 아닌 기관 내 전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input type="radio"/> 잘된 점																					
<input type="radio"/> 미흡한 점																					

<p>Ⅲ. 정책 개선 우수 사례</p>	<p>사례 1(사업명 : ※ 법령, 계획, 사업명 기재)</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input type="checkbox"/> 주요 정책 개선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p>사례 2(사업명 : ※ 법령, 계획, 사업명 기재)</p> <p><input type="checkbox"/>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p><input type="checkbox"/> 주요 정책 개선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부록 5 법령·계획·사업 정책개선 사례

표 부록-1 분석평가 수행기관의 정책개선사례 추천현황

(단위: 개(%))

구분	법령	계획	사업	계
전체	92	7	345	444
중앙	8	2	40	50
광역	11	2	31	44
기초	72	3	268	343
교육청	1	-	6	7

표 부록-2 분석평가 수행기관의 정책개선사례 : 법령

■ 중앙행정기관(8개)

연번	기관명	법령명
1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4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
5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6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법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경찰청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 광역자치단체(11개)

연번	기 관 명	법 령 명
1	부 산 광 역 시	부산광역시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
2	부 산 광 역 시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촉 비율향상 조례개정
3	대 구 광 역 시	대구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4	경 기 도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5	충 청 북 도	충청북도립교향악단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충 청 북 도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운영
7	충 청 남 도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8	전 라 남 도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9	경 상 남 도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1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1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기초자치단체(72개)

연번	기 관 명	법 령 명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개정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개정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5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6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7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10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1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12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13	경기도 남양주시	보건진료소협의회운영조례 등

연번	기 관 명	법 령 명
14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자격요건을 수정
15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16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환경기본조례
17	경기도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
18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9	경기도 파주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개정
20	경기도 군포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조례안 추가조항 신설
21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
22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23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24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25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6	경기도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27	강원도 태백시	재단법인 태백시민항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28	강원도 태백시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29	강원도 삼척시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30	강원도 홍천군	홍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31	강원도 영월군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32	강원도 영월군	영월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33	강원도 평창군	평창군 축제지원 조례
34	강원도 고성군	고성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5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36	충청남도 아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37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 양촌면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38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39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군 보육조례 일부 개정
40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산업단지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41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번	기 관 명	법 령 명
42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군 굿뜨래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43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44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45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46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47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8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9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50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군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51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5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군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운영조례
53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군 방문객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55	경상북도 포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56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57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58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
59	경상북도 영천시	영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60	경상북도 상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시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보장토록 포괄적 조례 제정
61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62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조례
63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64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군 경관조례 개정
65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66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7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원전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68	경상남도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69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
70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7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시·도 교육청(1개)

연번	기 관 명	법 령 명
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표 부록-3 분석평가 수행기관의 정책개선사례 : 계획

■ 중앙행정기관(2개)

연번	기 관 명	계 획 명
1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2	지식경제부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 광역자치단체(2개)

연번	기 관 명	계 획 명
1	부산광역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2	대구광역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개선

■ 기초자치단체(3개)

연번	기 관 명	계 획 명
1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2012-2016)
2	충청남도 공주시	공중화장실수급계획
3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 공무원 교육훈련 5개년 계획

표 부록-4 분석평가 수행기관의 정책개선 사례 : 사업

▣ 중앙행정기관(49개)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신규채용 및 고졸자 채용 확대
2	외교통상부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의료지원사업
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4	국방부	퇴직공무원 사회참여지원사업
5	문화체육관광부	인적자원 육성관리 사업
6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활성화 사업
7	농림수산식품부	어촌관광활성화
8	지식경제부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대학IT연구센터육성지원)
9	지식경제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
10	지식경제부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
11	보건복지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12	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13	환경부	국립공원지킴이
14	환경부	5대강 지킴이
15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사업
16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17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사업
18	국토해양부	북한이탈주민산단 고용 및 정착지원
19	공정거래위원회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 사업
20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사활동지원
21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22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 지원
23	국가보훈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
24	국세청	세정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성과평가체계 개편
25	관세청	그린캡사업
26	조달청	조달교육 확대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27	문화재청	전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 운영
28	농촌진흥청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
29	농촌진흥청	농업인대학 운영
30	농촌진흥청	농업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e-비즈니스 활성화
31	산림청	산림서비스 도우미
3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33	특허청	대학(원) 지식재산교육 지원
34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 명예지도원 운영
35	해양경찰청	성범죄 전문 수사대 운영
3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정지역내 직업전환 훈련
3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교통체계구축
3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도서관 건립
3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통합디자인체계 구축

■ 광역자치단체(31개)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1	서울특별시	119 샌드 애니메이션 운영
2	서울특별시	커뮤니티 맵핑 시스템 구축
3	서울특별시	DMC 입주기업 지원
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5	서울특별시	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 이행성과 평가
6	서울특별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HPV) 명칭 변경사업
7	부산광역시	여성소방공무원 교육훈련 활성화
8	부산광역시	임산부(여성우대) 먼저 서비스 사업
9	부산광역시	성인지관점 도입 청사 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10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버스 손잡이 길이 개선)
11	인천광역시	출산 장려금 지원
12	인천광역시	지역고용프로그램 개발(청년인턴십)
13	인천광역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14	인천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15	광주광역시	공직자 성별영향분석평가 정규과정 편성 운영
16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조명설비 개선공사
17	광주광역시	김치타운 김치체험장 운영
18	광주광역시	광주야구경기장 건립공사
19	광주광역시	2015하계U대회 수영장 건립
20	대전광역시	도심활성화(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골목재생사업
21	대전광역시	교통안전운영(대전교통문화센터운영)
22	대전광역시	대중교통개선(시내버스 기반시설 확충)
23	경기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24	경기도	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25	충청북도	성평등정책 5분 아카데미 운영
26	충청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27	충청남도	관광개발
28	전라남도	장애인 정보화교육
29	제주특별자치도	시민정보화교육
30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청소 및 공한지 환경정비
31	제주특별자치도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 기초자치단체(268개)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1	서울특별시 중구	직무전문교육
2	서울특별시 중구	스포츠바우처 사업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5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민양성평등교육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중독 안전 광진 만들기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아카데미 운영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취업정보은행 활성화
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연클리닉 운영
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대시증후군 관리사업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정화교육운영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구정 참여단 운영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17	서울특별시 강북구	질환별자조관리교실 운영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근로사업
19	서울특별시 도봉구	드림스타트사업
2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농업운영
21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시증후군 관리사업
22	서울특별시 도봉구	암 건강대학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치매관리사업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시설 및 편의품 지원
25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안등 신설 및 개선공사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전거 이용시설물 정비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29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근로사업
30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청사시설 개보수
31	서울특별시 양천구	금연사업
32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일자리사업
33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이버 평생학습 센터운영
34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3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전산교육장운영
36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37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 무지개 가족 벼룩시장 운영
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권 공원 정비사업
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흡연자를 위한 보건소 금연클리닉 환경개선
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녀 차이를 고려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41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검진사업
42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안등 정비사업
43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암예방 건강대학 운영
45	서울특별시 강남구	한부모가족 지원
46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
47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클리닉 사업
4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
49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정보화 교육
50	부산광역시 중구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여성 기간제 근무자 사역 확대
51	부산광역시 서구	동아대 부민캠퍼스 주변 가로 정비
52	부산광역시 서구	방문 보건 사업
53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54	부산광역시 동구	구민 정보화 교육
55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6	부산광역시 동구	경로당 활성화 사업
57	부산광역시 동구	자활근로사업
58	부산광역시 영도구	직원현장아카데미 탐방운영
59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지제도 운영
60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61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6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골목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63	부산광역시 남구	보안등설치 및 유지보수
64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정보화교육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65	부산광역시 북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66	부산광역시 북구	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
6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맞춤형 자활근로 사업 추진(네일아트 사업 추가 추진)
6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일자리 사업
6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 업
7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정보화 교육
71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문화운동
72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강화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73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숲 조성
74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인 일자리사업
75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안전지도 제작
76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77	부산광역시 수영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78	부산광역시 사상구	스포츠바우처 사업
79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운영
80	대구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81	대구광역시 동구	청사시설물 관리사업
82	대구광역시 동구	보안등 신설 및 보수
83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 활성화
84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8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86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 행복아카데미 운영
87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활근로사업지원
88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지원사업
89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시설정비
90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확대방안
91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9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민 명예 감사관제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93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94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무원 경쟁력 강화
95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및 지원
96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97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98	인천광역시 서구	감중어린이공원 조성사업
99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환경미화원 일반운영
100	인천광역시 강화군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101	인천광역시 강화군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102	인천광역시 옹진군	방역소독인부 채용
103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관리
104	광주광역시 동구	능동형U-City 안전망 구축
105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보건센터운영
106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연기 없는 서구 - 금연클리닉 운영
107	광주광역시 서구	당뇨건강교실 운영
108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보 발행
109	광주광역시 남구	시민감사관 운영
110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주차장 내 여성주차공간 조성
111	광주광역시 북구	보안등 관리
112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동아리운영
113	광주광역시 북구	용두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1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
115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로 및 취약지 청소관리
116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17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복지공간조성사업
118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119	울산광역시 동구	청사 시설물 관리
120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121	울산광역시 동구	하수도 설치 개보수
122	울산광역시 울주군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1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124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민의 건강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절주학교 “해피가족 공동체”
125	경기도 수원시	찾아가는 생활터 접근 건강 서비스
126	경기도 고양시	치매조기검진 사업
127	경기도 부천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28	경기도 부천시	원도심 활력증진을 위한 공중화장실 개선
129	경기도 용인시	학습연구동아리 운영
130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 자금지원
131	경기도 안산시	노인의치 보철 사업
132	경기도 안산시	성인문해교육사업
133	경기도 안양시	건축문화상 Festival 개최
134	경기도 안양시	소규모 전통시장 시설지원
135	경기도 남양주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136	경기도 평택시	농업인정보화교육
137	경기도 시흥시	정신보건센터운영
138	경기도 시흥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39	경기도 화성시	대중교통시설 설치사업
140	경기도 광명시	문해교육지원사업
141	경기도 군포시	장애인 복지 일자리
142	경기도 광주시	자전거교실 및 대여사업
143	경기도 구리시	암조기 검진사업
144	경기도 양주시	금연클리닉 사업
145	경기도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46	경기도 오산시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
147	경기도 하남시	취약계층 아동 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 지원 - 사업
148	경기도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149	경기도 동두천시	공무원 교육 지원
150	경기도 양평군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151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152	경기도 과천시	과천예원 운영
153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운영
154	강원도 동해시	환경보건 기반구축(환경성 질환 치유)
155	강원도 동해시	아름다운 거리조성(공원녹지 사후관리)
156	강원도 태백시	시내버스 노후증강장 철거 및 교체사업
157	강원도 태백시	가로 보안등 설치관리 사업
158	강원도 삼척시	도시 공원 관리
159	강원도 흥천군	연봉 도서관 건립사업
160	강원도 양구군	금연클리닉
161	강원도 고성군	도심주변 유희군유지 임시주차장 조성
162	강원도 고성군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163	강원도 고성군	위험지역 가로등 보수 및 해안도로 보강공사
164	충청북도 충주시	업정면사무소 신축
165	충청북도 충주시	전통시장(특정관리대상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166	충청북도 옥천군	관성회관 CCTV 설치
167	충청북도 옥천군	상계(마을) 체육시설 여성화장실 설치
168	충청북도 증평군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169	충청북도 증평군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
170	충청북도 괴산군	고용촉진(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171	충청북도 괴산군	생활폐기물수거처리(하천·하구쓰레기수거사업)
172	충청북도 음성군	환경보전 및 개선사업—환경개선부담금 부과
173	충청북도 음성군	도시계획도로사업
174	충청북도 단양군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175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기술 전문정보 제공
176	충청남도 천안시	성인 문해 교육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177	충청남도 아산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으로 시민편의 증진
178	충청남도 아산시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한 선큰가든 조성사업
179	충청남도 서산시	인재육성 지원 및 기반조성 사업
180	충청남도 서산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
181	충청남도 논산시	전문농업인육성
182	충청남도 계룡시	노인일자리확충사업(보조)
183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184	충청남도 당진시	가족친화경영 제도 추진
185	충청남도 당진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및 홍보
186	충청남도 금산군	농어촌 정보화 소외계층 정보화 사업
187	충청남도 서천군	농기계 기술지원 사업
188	충청남도 청양군	농촌인력육성지원 및 정보화추진
189	충청남도 청양군	위원회의 여성 및 성인지예산 전문가 참여 확대
190	충청남도 홍성군	예산편성 분석관리
191	충청남도 예산군	여성복지 향상
192	충청남도 예산군	일자리 지원 사업
193	충청남도 예산군	공중화장실 관리
194	충청남도 태안군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195	충청남도 태안군	농어촌 소외계층 정보화지원
196	전라북도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97	전라북도 익산시	홍보간행물 제작
198	전라북도 익산시	방법용 CCTV 관리 운영
199	전라북도 익산시	농촌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00	전라북도 정읍시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생활화 실현(시민정보화교육)
201	전라북도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202	전라북도 남원시	생활체육 육성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203	전라북도 무주군	산림소득[산림서비스]증진 사업
204	전라북도 장수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05	전라북도 순창군	자활근로사업
206	전라북도 순창군	작은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사업
207	전라북도 고창군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208	전라북도 고창군	자활지원
209	전라남도 목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10	전라남도 목포시	남도섬 명소화 사업
211	전라남도 여수시	북스타트 행사추진
212	전라남도 순천시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순천시민대학 효율적 운영
213	전라남도 순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예방교육사업
214	전라남도 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BSC 평가 공통지표 선정
215	전라남도 나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21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17	전라남도 광양시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218	전라남도 담양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219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220	전라남도 고흥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221	전라남도 고흥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222	전라남도 보성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223	전라남도 보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다문화가정통합사업
224	전라남도 장흥군	정남진 장흥 토요일시장 활성화
225	전라남도 장흥군	우드랜드 운영
226	전라남도 장흥군	대한민국 정남진 물축제와 연계한 명품 테마 녹색길 운영
227	전라남도 강진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228	전라남도 강진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229	전라남도 영암군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230	전라남도 영암군	기 웰빙 산책로 개설
231	전라남도 무안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32	전라남도 무안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233	전라남도 장성군	경로당 운영지원
234	전라남도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235	경상북도 경주시	기술·취미 교양교육
236	경상북도 경주시	중소형 농기계 지원
237	경상북도 김천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38	경상북도 안동시	전통음식문화육성
239	경상북도 구미시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240	경상북도 구미시	희망 키움 통장 사업
241	경상북도 영천시	드림스타트사업
242	경상북도 상주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43	경상북도 문경시	문화바우처 운영 지원 사업
244	경상북도 문경시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사업
245	경상북도 경산시	당뇨합병증 예방사업
246	경상북도 경산시	삼성현 아카데미운영
247	경상북도 군위군	노인일자리 사업
248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249	경상북도 의성군	다문화가족이해교육
250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 어업인 특별연수 사업
251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시설장비 유지 및 시설개선
252	경상북도 예천군	농약안전 사용 장비(방제복)지원 사업
253	경상북도 예천군	어린이소공원 조성사업
254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어린이집 신축
255	경상남도 김해시	금연클리닉사업
256	경상남도 김해시	시민교양강좌 운영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257	경상남도 김해시	세계시민학교
258	경상남도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59	경상남도 거제시	인사 및 조직관리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260	경상남도 거제시	다문화가족복지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출산용품 지원
261	경상남도 양산시	찾아가는 한글교실
262	경상남도 양산시	정보화 소외계층 교육
263	경상남도 의령군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264	경상남도 함안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265	경상남도 창녕군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266	경상남도 고성군	의회지원_의정비심의회위원회 운영
267	경상남도 고성군	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_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운영
268	경상남도 남해군	평생학습관 생애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 시·도 교육청(6개)

연번	기 관 명	사 업 명
1	대전광역시교육청	수련 및 봉사활동(학생해양수련지원 사업)
2	전라북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지원
3	전라북도교육청	배움터 지킴이 사업
4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5	경상북도교육청	스포츠강사인건비
6	경상북도교육청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

발간번호 : 11-1383000-000402-10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발행일 | 2013년 8월

발행인 | 조윤선

발행처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전화 | TEL : 02)2075-4655~60

팩스 | FAX : 02)2075-4787

홈페이지 | www.mogef.go.kr

인쇄처 | 중앙기획·인쇄 (02)736-2866~7